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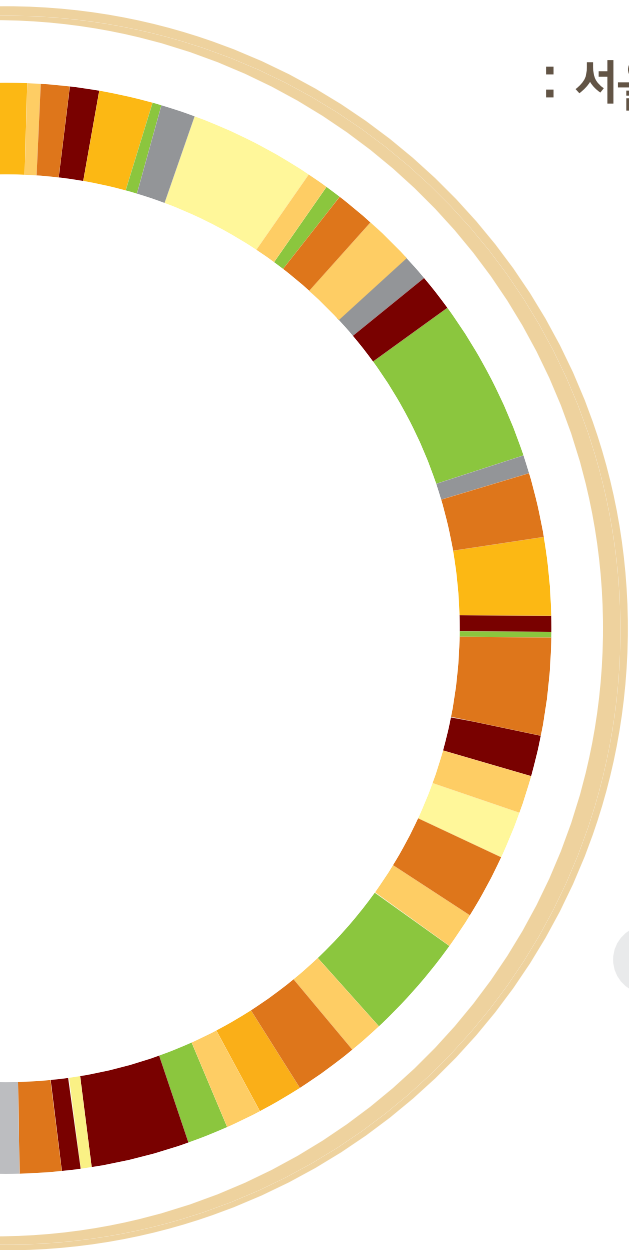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360-01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

: 서울역의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가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

2011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

서울역의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가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

2011. 12

이 보고서는 기초 실태조사 결과물로 국가인권
위원회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실태조사 개요	1
1. 실태조사 배경 및 경과	3
2. 실태조사 개요	3
제2장 홈리스와 인권	5
1. 홈리스에 대한 인권적 접근	7
2. 한국의 홈리스 정책	8
3. 빈곤의 범죄화	9
4. 홈리스상태의 범죄화	11
5. 홈리스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시작	13
제3장 양적 조사 결과	19
1. 조사목적	21
2. 조사개요	22
3. 조사결과	23
1) 조사대상자 특성	23
2) 서울역조치관련	26
3) 서울시대책 관련	36
4. 결과 및 제언	43
1) 조사결과 요약	43
제4장 심층 면접 결과	49
1. 조사개요	51
2. 사례별 개괄	52
3. 서울역 주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한 노숙생활의 양상	58
3-1. 주거권 실현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태 : 누가, 왜, 서울역 주변에	

오는가?	58
3-2. 서울역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63
3-3. 노숙생활의 애로사항과 욕구	69
3-4. 소결	71
4. 서울역 야간노숙 금지 조치 후의 풍경과 이슈들	71
4-1. 야간노숙 금지조치에 대한 노숙인의 대응	71
4-2. 노숙인 생각하는 대책 : 좋은 대책을 원함	77
4-3. 야간노숙 금지조치에 대한 심정	78
4-4. 퇴거 여파	82
4-5. 서울시 대책에 대한 노숙인의 의견	84
4-6. 소결	87
5. 시사점과 제언	87
■ 참고문헌	91
■ 부 록	93

표 목 차

<표 III-1> 양적조사 조사항목	23
<표 III-2> 성별분포	24
<표 III-3> 연령분포	25
<표 III-4> 거리노숙기간 및 서울역인근에서 머문 기간	25
<표 III-5> 조사장소	26
<표 III-6> 서울역 조치에 대한 인지여부	27
<표 III-7> 서울역 조치에 대한 인지경로	27
<표 III-8> 야간노숙행위금지조치가 노숙인들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중복응답 3)	28
<표 III-9> 서울역 조치 이후 퇴거조치 경험 여부	30
<표 III-10> 서울역 및 서울역 인근에서 머무는 시간대와 시간대별 주 이용공간과 하는 일	31
<표 III-11> 서울역 및 서울역 인근에 잠자리를 마련하게 된 사유(중복응답 2)	33
<표 III-12> 다른 역사 혹은 공공장소에서의 퇴거 경험 여부	34
<표 III-13> 퇴거조치 이후의 행동	34
<표 III-14> 거리노숙상태에서 부당행위 및 범죄피해 경험	35
<표 III-15> 피해 발생 시 대처	36
<표 III-16> 서울시 대책에 대한 인지여부	37
<표 III-17> 서울역 및 서울역 인근 거리노숙인 수	39
<표 III-18> 거리노숙인 서비스 전달체계인지여부 및 이용여부	41
<표 III-19> 탈거리노숙 시 가장 필요한 지원책(순위별 응답, 택3)	43

그림 목 차

[그림 1] 서울역사 내 및 서울역인근 거리노숙인 수 추이 40



제1장 | 실태조사 개요

- | | |
|-----------------|---|
| 1. 실태조사 배경 및 경과 | 3 |
| 2. 실태조사 개요 | 3 |

1. 실태조사 배경 및 경과

- 한국철도공사(서울역)이 8. 22.부터 실시하고 있는 야간 노숙행위 금지조치 결과, 서울역 인근 거리노숙인들의 퇴거조치 이후 심리상태(충격, 절망 등) 등을 중심으로(서울시 특별조치에 대한 인지도 포함)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1. 8. 11. 2011년 제30차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를 개시하였음.
- 양적 조사는 9. 30까지 총 95명을 대상으로 완료하였고, 질적조사는 혹서기라는 특수성과 조사대상 발굴의 어려움으로 인해 10월 중순에 총 10명을 심층면접함으로써 완료함.

2. 실태조사 개요

- 연구제목 : 서울역의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가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
- 조사기간 : 2011. 8. 8 ~ 2011. 10. 20
- 분석 및 집필 기간 : 2011. 10. 20 ~ 11. 23
- 연구책임 : 조사국 침해조사과
- 연구 및 집필진
 - 1) 김선미(노숙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 2) 김진미(여성노숙인쉼터 열린여성센터 간사, 가톨릭대 박사과정)
 - 3) 이동현(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4) 미 류(주거권운동네트워크 활동가)
- 연구대상 : 서울역 강제퇴거 경험 노숙인 및 서울역사 내·외부를 야간잠자리로 활용하는 노숙인



제2장 | 홈리스와 인권

1. 홈리스에 대한 인권적 접근	7
2. 한국의 홈리스 정책	8
3. 빈곤의 범죄화	9
4. 홈리스상태의 범죄화	11
5. 홈리스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시작	13

1. 홈리스에 대한 인권적 접근

“홈리스는 주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범위의 인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거리에서 홈리스를 없애기 위해 시행하는 거리 정화와 더불어, 홈리스상태, 부랑이나 노숙을 범죄화하는 법률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완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전한 거주 장소가 없거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홈리스는 폭력, 위협, 괴롭힘에 훨씬 더 취약하다.”¹⁾

홈리스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홈리스와 관련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홈리스의 정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 그러나 홈리스는 적절한 주거를 누릴 권리가 심각하게 박탈된 상태로, 거리노숙과 같이 극단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의 거주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홈리스지원유럽연합(FEANTSA)은 △극도의 홈리스 상태에 있는 집단(주거상실집단), △주거상실의 위기에 처한 집단(주거불안집단), △적절한 주거상태에서 배제된 집단(과밀주택, 열악한 주택 등 주거배제집단)으로 홈리스를 정의한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홈리스를 거리노숙보다 폭넓게 정의한다. 홈리스의 요건들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안전한 출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영국), 점유 이후 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경우(북아일랜드), 과밀하고 점유자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경우(스코틀랜드), 가구 딸린 방의 단기 임차인(프랑스),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집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호주) 등. 이와 같은 정의는 ‘홈리스상태’를 단순히 물리적인 주택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 이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홈리스상태(homelessness)’는 포괄적이고 중첩되는 권리 침해 상태를 의미한다. 주거권은 이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참정권, 법 앞의 평등,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건강권, 노동권 등 다양한 인권의 영역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 만큼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는 다른 인권침해에도 취약한 상태를 만들어낸다. 또한 홈리스상태에 대한 낙인은 이러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심화시키는 효

1)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UN Human Rights Fact Sheet No.21(Rev.1), OHCHR & UN HABITAT, 2009

과를 낳는다. 홈리스상태는 흔히 개인이 책임져야 할 상태로 여겨지고 홈리스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지원은 시혜적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낙인은 홈리스 개인의 존엄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는데,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노숙을 범죄화 하는 것이다. 홈리스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인권침해에 취약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홈리스를 타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표상하고 홈리스를 처벌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홈리스상태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개별적이기보다는 총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홈리스상태를 인권이 박탈된 상태로 인식하고 인권 보장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홈리스상태는 실업, 부실한 사회보장, 저렴 주택의 부족, 자연재해나 분쟁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주거를 누리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겪는다. 인체의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생리활동이 제한당하고 건강이 악화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기 쉽다는 등의 문제들이 그것이다. 이런 조건들로부터 홈리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것이 홈리스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출발선이다.

2. 한국의 홈리스 정책

한국은 홈리스 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정책이 체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적절한 주거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홈리스’라는 개념이 자리 잡지 못한 채 ‘노숙인 등’으로 남은 점이 큰 한계다. 또한 ‘노숙인 등’에게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하여 인권 주체로서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 문제는 한국에서 홈리스상태가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

한국정부는 유엔 사회권규약을 비준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홈리스에 대한 우려와 권고는, 강제퇴거와 마

찬가지로 세 차례 모두 지적되었던 주제다. 1994년 제출한 한국정부의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²⁾에서는 홈리스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없는 것을 우려하며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1999년 제출한 2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³⁾에서는 홈리스의 증가를 우려하며 홈리스를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2009년의 최종견해⁴⁾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한국정부가 홈리스 문제의 범위와 원인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전략을 채택하도록 촉구한다. 3차 심의에서 한국정부는 홈리스의 규모를 묻는 사회권위원회의 질문에 2008년 말 기준 12,328명이라는 답변을 보냈는데, 이는 한국정부가 ‘홈리스’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줄 뿐이다.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와도 다른 수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거리 노숙과 쉼터 및 시설 입소자에 한정된 수치였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는 홈리스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 수립될 수가 없다. 정부는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만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서울역의 노숙금지 조치와 연결되어 있다. ‘홈리스’를 보지 않고 ‘노숙인’만을 보기 때문에 이들이 처한 문제는 ‘거리에서 자는 것’으로 국한되고 문제 해결의 목표는 ‘거리가 아닌 곳에서 자는 것’으로만 수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는 노숙 금지 조치가 오히려 노숙인들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설령 한국철도공사의 조치로 ‘노숙인’이 줄어들더라도 ‘홈리스’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잘못된 접근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게다가 공공장소에서의 노숙금지 조치는 빈곤을 범죄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러한 조치의 반인권성을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3. 빈곤의 범죄화

홈리스는 빈곤의 한 양상이다. 홈리스뿐만 아니라 빈곤은 다양한 인권의 박탈로 구성된다. 그러나 빈곤에 대한 접근 역시 인권이 고려되지 않기 쉬우며 심지어 빈곤의 형벌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2)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ESCR : Republic of Korea. 1995-06-07. (E/C.12/1995/3.)

3)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ESCR : Republic of Korea. 2001-05-21. (E/C.12/1/Add.59.)

4) E/C.12/KOR/CO/3

은 2011년 8월 빈곤의 형벌화에 대한 보고서⁵⁾를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형벌화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공공 장소에서의 생계 유지 행위를 제한하는 법이나 규제, 관행, △공적 공간의 고급주택화와 민영화와 관련된 도시계획 규제와 조치들, △공적 서비스와 사회보장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자율성이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 △구급과 투옥이 과도하고 자의적으로 이용되는 것의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빈곤의 형벌화는 빈민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며 차별을 더욱 뿌리 깊게 만든다. 동시에 빈곤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고 끊임없이 빈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악화시킨다. 이에 대해 특별보고관은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강조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제시한다. 또한 전통적으로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민영화되는 현실과 관련해, 당사국 정부가 민영화 조치로 인권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⁶⁾. 공공 서비스가 민영화되더라도 질, 비용부담, 서비스 제공 범위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기업의 횡포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 역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림버그 원칙과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안에 있다. 규약의 가입 당사국은 국가가 아닌 행위주체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개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스스로 빈곤을 범죄화하는 조치를 취해서 안 되는 것은 더욱 당연하다. 빈곤의 범죄화는 입법이나 행정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가가 빈민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특히 빈곤의 범죄화가 분명히 드러나는 영역은 공공 장소에서 종종 드러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행위를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폐가 된다”고 간주하여 형벌화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행위들이 위협하고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와 갈등하며, 공간의 ‘정상적’ 활동들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형벌화 조치를 정당화한다⁷⁾. 이와 같은 조치에는 거리에서의 취침, 앉아있기, 누워있기, 구걸 등을 불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조치가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대표”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조치들은 모욕과 폭력에

5)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2001.8.4. (A/66/265)

6) A/66/265, para. 26-27.

7) A/66/265, para. 29-43.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이들에 대한 차별적 태도의 확산에 기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가 가난한 사람들만을 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사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이 형벌로 제재될 위험에 놓이게” 되고, 여러 연구들이 보여주듯 형벌화 조치는 “특히 노숙인을 표적삼고 있다.”

4. 홈리스상태의 범죄화

홈리스상태(homelessness)의 범죄화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991년부터 미국의 ‘홈리스상태와 빈곤에 대한 국립 법률 센터⁸⁾’는 홈리스상태와 관련된 행위를 범죄화하는 각종 법률과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노숙을 범죄화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범죄화 조치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⁹⁾. 공공장소에서의 제한, 구걸의 제한, 간접적인 제한의 세 가지가 그것이다. 그 중 공공장소에서의 제한은 홈리스를 시에서 추방하거나, 공공장소에서의 취침을 금지하거나,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취침을 금지하는 등의 종류가 있다. 이러한 제한은 공공의 교통시설에서 종종 발견된다. 그 종류가 어떠한 범죄화 조치의 목적은 “보이는” 홈리스를 “보이지 않게”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양한 이유와 근거들이 제시되지만 “도시로부터 홈리스를 없애는 것이 범죄화 조치에 공통적으로 내재한 목표¹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그 자체로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어 많은 소송이 이어지기도 했다¹¹⁾.

마이애미 시는 매년 열리는 퍼레이드를 앞두고 노숙인들을 거리에서 몰아냈다. 마이애미 시는 노숙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공 장소에서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노숙인들을 체포해왔다. Michael Pottinger,

8) www.nlchp.org

9) Maria Foscarinis, Downward Spiral: Homelessness and its Criminalization, Yale law & policy review vol.14 no.1, 1996

10) Ibid, pp.25

11) 아래의 판례들은 Downward Spiral: Homelessness and its Criminalization과 the Courts The Law and the Homeless (<http://www.libraryindex.com>)에서 소개된 내용 중 일부다.

Peter Carter, Berry Young 등은 마이애미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992년 남부 플로리다 지방법원은 마이애미 시의 조치가 “잔인하고 혼치 않은” 조치며, 신분에 따른 처벌을 금지하는 미국 연방 헌법 수정 8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Pottinger v. City of Miami).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필수적이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들이 “비자발적인 홈리스 상태”를 이유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법원은 “그들이 정말로 갈 곳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뉴욕 시에는 구걸을 목적으로 공공 장소에 돌아다니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령이 있었다. 1992년 Jennifer Loper와 그녀의 친구인 William Kaye는 뉴욕 시를 상대로 소송(Loper v. New York City Police Dept.)을 걸었다. 지방법원은 이 법령이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뉴욕 시는 구걸이 보호할 만한 표현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연방법원은 구걸 금지를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법원은 구걸 금지 조치가 그들이 메시지를 전달할 모든 수단을 박탈하고 있으며, 만약 구걸하는 사람이 말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옷차림이 험클어진 상태로 기부를 받기 위한 컵이나 손을 내밀고 있는 것 자체로도 지원과 보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유사하게, 1995년 신시내티 시에서는 길가에 앉거나 눕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1998년 Clark v. Cincinnati에서 법원은 이 법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고 무효 처분을 내렸다.

1995년 뉴욕 시의 Penn Station 에서는 범죄를 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홈리스처럼 보이거나 역사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내쫓았다. Streetwatch는 이와 같은 Amtrak(장거리철도시스템)의 정책을 놓고 National R.R. Passenger Corp.를 제소했다. 지방법원은 암트랙의 방침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2000년, 스킨 로우 지역의 쉼터 거주민과 노숙인들은 로스앤젤리스 경찰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아무 이유 없이 체포 위협을 받으며 불심검문을 당했고, 그들이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는데도 “빨리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소지품을 압수당했으며, “빈둥거린 죄”를 벌금을 부과받았다. Justin v. City of Los Angeles에서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구금하는

것, 체포를 위협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는데도 길에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 등의 조치를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렸다.

이와 같은 판결들은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홈리스의 범죄화를 위헌이라 밝히고 있다. 여전히 미국에는 홈리스를 범죄화하는 법률이나 조치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홈리스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홈리스가 공공장소에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일정 정도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홈리스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시작

“빈곤은 생활방식의 선택이 아니다. 홈리스들은 공원이나 버스정류장보다 안전하고 주거비를 지불할 만하고 적절한 환경의 주거를 선호할 것이다. 사회보장급여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는 그들은 차별을 받게 되고 자격이 박탈될까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기보다는 안전하고 지속적이며 적절한 보수가 지불되는 생산적인 일자리를 가지게 되기를 원할 것이다. 빈곤한 상태로 살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을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¹²⁾.”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homelessness(홈리스상태)는 “주거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의 아마도 가장 명백하고 심각한 증상(symptom)”이라고 말해왔다¹³⁾. 거꾸로 말하면, 주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다면, 적절한 주거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홈리스의 발생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한 방향을 가리킨다. 홈리스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한 양상이다. 따라서 홈리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홈리스를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홈리스 상태를 범죄화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행위들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차별과 낙인을 심화시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서울역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홈리스 문제의 해결을 모색한다면, 일차적으로 서울역 노숙금지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12) A/66/265 para.74

13)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UN Human Rights Fact Sheet No.21(Rev.1), OHCHR & UN HABITAT, 2009

동시에 인권적 관점에서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유럽사회권위원회¹⁴⁾는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홈리스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을 제시한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홈리스상태를 아무런 거처가 없는 상태와 임시적인 쉼터에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한 수준으로 오랜 기간 동안 머무는 상태로 보고, 홈리스 상태를 줄여나가는 것과 예방의 두 가지 전략을 권고한다. 홈리스 상태의 예방은 더욱 많은 사람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거나 대상을 특정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취약 계층에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불공정한 계약이나 퇴거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홈리스 상태를 줄여나가기 위해 긴급한 조치와 장기적 관점의 조치 모두가 요구된다. 홈리스에 쉼터를 제공하고 기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홈리스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그들이 다시 홈리스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 홈리스들에게 제공되는 쉼터 또는 주택은 인간의 존엄에 부합해야 한다. 임시적인 쉼터라 하더라도 안전, 건강, 위생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유럽 사회권위원회는 인간의 존엄뿐만 아니라 “가능한 최고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한다.

유럽 사회권위원회는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의 기본 방향을 보여준다. 빈곤의 다양한 모습들 중 적절한 주거가 없는 상태를 공통분모로 하는 집단이 홈리스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주거권 보장을 중요한 요소로 두어야 한다. 물론 홈리스는 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된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¹⁵⁾. 여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홈리스가 처하게 된 상황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위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종합적인 접근은 홈리스를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이자 빈곤의 극단적인 현실에 놓인 집단으로 바라보는 토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홈리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다.

14) Recommendation of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Housing(CommDH(2009)5), 2009.6.30.

15) Housing rights legislation, UN-HABITAT & OHCHR, 2002, pp.58

당시 쟁점이 된 것은, 홈리스가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누구이며 왜 홈리스가 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이다. 홈리스 규모는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매우 많아졌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홈리스가 누구이며 홈리스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은 홈리스에 대한 사회 정책의 근거나 방향과 맞닿아있는 것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도 볼 수 있다.

초기에는 홈리스가 개인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의 알콜 중독 등이 홈리스가 되는 이유라는 것이 주류 담론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을 지나며 홈리스는 비자발적으로 이주당한 사람들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특히 당시 저렴주택의 감소가 중요한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홈리스의 발생에 대한 담론은 정책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사회적 책임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서는 주거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요인들이 연관된 문제라는 인식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 시기는 구걸이나 노숙을 범죄화하는 퇴행적 접근도 동시에 나타난다. 지방정부는 홈리스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오히려 홈리스들을 끌어들여 지역적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우려를 하기도 했다. 여전히 홈리스 대책은 이미 홈리스가 된 사람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쉼터나 급식과 같은 구호적 성격의 것이 대부분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반빈곤 정책과의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주거권에 대한 인식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에 의한 홈리스 해소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홈리스를 범죄화하는 법령이나 규제에 대한 위헌 판결들이 홈리스를 범죄화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한계도 있으나 적어도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침해되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권리를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 이런 판결들을 통해 많은 지역에서 홈리스를 범죄화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필라델피아는 추가적인 쉼터 외에도 주택 입주 기회를 늘림으로써, 75%에 가까운 만성적 홈리스가 거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워싱턴 시에서는 세금을 이용해 주간 센터를 짓기 위한 재정을 마련했고 미니애폴리스 시는 비범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홈리스를 범죄화하는 효과를 낳는 모든 법과 정책, 제도를 검토하도록 했다.

적어도 홈리스를 범죄화하거나 거리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접근 방식이 홈

리스와 연관된 문제들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홈리스들이 공공 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나 제도는, 보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구걸이 위협적이라거나, 위생에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든다. 그러나 홈리스를 줄이기 위해 주거와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대신 홈리스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홈리스들에게 실현 가능한 대안이 존재한다면 누구보다 그들이 거리를 떠나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점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범죄화하는 접근은 주거가 있는 “우리”와 홈리스인 “그들”의 경계를 키울 뿐이며, 긴급 구호나 범죄화나 홈리스 상태의 진정한 원인을 보지 못하게 하는 대중적 접근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범죄화하는 접근은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누구나 그렇듯 홈리스도 먹고 자고 장소를 점유해야만 한다. 특정 장소의 점유를 제한할 경우, 그들은 또 다른 장소로 갈 뿐이다¹⁶⁾.

홈리스 관련 정책은 완화, 탈노숙, 예방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¹⁷⁾.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누구도 홈리스 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주거뿐만 아니라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홈리스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홈리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한다. 주거지원을 기본으로, 의료나 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때 정보에 대한 접근권 역시 중요한 문제로, 적극적인 아웃리치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홈리스 상태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홈리스 특히 거리노숙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홈리스 상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긴다. 당장 주거 지원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여섯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안전하고 적절한 쉼터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것은 안정적 주거로 이동하는 매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식량과 의복이 공급되어야 한다. 셋째, 노숙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하나의 기관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건강을 위한 조치들, 특

16) Maria Foscarinis, “Downward Spiral: Homelessness and Its Criminalization”, *Yale Law & Policy Review*, vol.14, no.1, 1996

17) Rob Rosenthal and Maria Foscarinis, “Responses to Homelessness: Past Policies, Future Direction, and a Right to Housing”, 『A Right to Housing: Foundation for a New Social Agenda』, Temple University Press, 2006

히 예방적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일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홈리스의 시민권을 존중해야 한다. 홈리스는 다른 집단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권리의 박탈 위기에 놓여 있다. 공공장소에서 자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는 모든 홈리스들이 이용할 수 있는 품위 있고 적절한 장소가 있지 않다면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숙 상황 개선 조치에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당사자의 권한 강화를 복돋는 것을 포함한다.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한국 정부 역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지닌다. ‘사회권 규약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1986)’과 ‘사회권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1997)’은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의무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함을 선언하고 그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제3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주거권과 관련해 홈리스 문제는 해당 정부의 인권 보장 수준을 가늠케 하는 지표가 된다. 주거권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인간의 존엄에 걸맞은 장소에서 살 권리”다. 주거권을 존중하고 홈리스를 차별하지 않는 사회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의 노숙 금지 조치는 특정 시간대의 출입 금지 조치지만, 서울 역 역사 안과 인근의 노숙을 막기 위해 노숙인들을 겨냥한 조치임이 분명하다. 한국철도공사의 자의적인 조치로 노숙인들의 출입을 금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도안전법의 노숙 금지 조항 역시 헌법에 위배되고 기본적 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원’을 이유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와 같은 ‘민원’으로부터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다. 무엇보다도, 한국철도공사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노숙 비범죄화 노력으로부터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 노숙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노숙인이 홈리스의 상징처럼 가시화되지만 홈리스는 노숙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와 서울시는 적절한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로서 홈리스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정책에서 우선순위에 놓여야 할 주거취약계층으로 홈리스 문제에 접근할 때 홈리스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제3장 | 양적 조사 결과

1. 조사목적	21
2. 조사개요	22
3. 조사결과	23
4. 결과 및 제언	43

1. 조사목적

2011년 7월 21일, 코레일과 서울역이 8월 1일 23시부터 서울역사 내 노숙인을 강제퇴거 하겠다는 방침이 밝혀졌고 이후 7월 31일, 이러한 계획을 ‘야간노숙행위금지’로 명명, 8월 22일부터 퇴거조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다. 그리고 이는 민원과 테러의 위협¹⁸⁾에 기인하는 조치라고 코레일과 서울역 측은 설명했다.

당초 해당 계획이 발표된 직후 노숙인지원기관 및 관련민간단체의 항의 및 대응활동과 언론의 집중조명이 이어졌는데, 서울역과 코레일측은 이에 대해 ‘서울역 8월 22일 이후 야간노숙행위금지’로 명칭을 변경하여 △23시 이후 노숙인 퇴거 안내 △01시30분~04시30분 서울역 출입문쇄정(청소) △04시~07시 역사 내 진입 노숙인 출입통제(취침도구 지참 노숙인 대상 상담센터와 쉼터이용유도)로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서울역은 서울시와 서울역인근 노숙인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본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해당 조치 이후 공문을 통해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4일과 31일에 각각 임시 구호방 10개소를 통해 50여명의 노숙인 수용, 노숙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여 특별자활근로 200개 일자리 제공, 임시주비지원을 통한 고시원, 쪽방 등 거처확보 100개, 24시간 활용 가능한 카페 설치, 9월15일까지 360명의 서울역 중심 상담원 배치 등의 긴급지원책을 발표하였다¹⁹⁾.

서울역의 야간노숙금지조치는 분명 노숙인에 대한 자유권침해와 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²⁰⁾. 그리고 서울시의 긴급대책은 거리노숙인에 대한 계획된

18) 음주, 소란,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해결이 주목적이었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 단속할 것을 분명히 하고, 적합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족하며 ‘노숙인’이라는 특정인을 규정함으로써 노숙차림에 대한 구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장하여 낙인을 심화하거나 일반시민과의 대립구도를 만드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비판 내용이다.

19)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그간 서울시가 수행해왔던 동절기 노숙인 대책에 불과하며, 360명의 상담원 배치는 한시적인 운영일뿐더러 9월초순까지의 누적인원이었고 24시간 개방카페(샤워, 세탁, 휴식 등이 가능한 거리노숙인 이용공간)는 11월말 현재 설치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20) 기존의 노숙인 퇴거 대책은 행위 중심이었다. 즉 특정 행위를 한 자(예컨대 범법행위 등)를 일정 공간에서 퇴거 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강제퇴거 조치는 노숙인 전체를 대상으로하여 특정 공간에서 노숙인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복지확장 차원이 아니라 서울역 조치에 대한 단순 반작용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역의 조치와 서울시의 대책은 서울역주변의 거리노숙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조사는 금번 서울역의 야간노숙행위 금지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노숙인의 인권과 복지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아울러 서울시의 후속대책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탈거리노숙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조사개요

조사기간은 2011년 8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서울역 야간노숙금지에 조치에 대한 대상이 되는 서울역사 내 및 서울역사 인근에 머물거나 잠자리를 마련하는 거리노숙인으로 표적하였다. 2011년 7월말 현재 서울역사 주변, 즉 광장과 서부역쪽, 인근지하도와 콩코스화 및 롯데백화점인근, 구역사부근에는 약 300명 정도의 거리노숙인이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에게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거리노숙의 경험과 금번 조치와 사후대책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²¹⁾. 설문조사는 노숙인지원의 경험을 가진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했고, 면접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서울역의 야간노숙금지조치가 거리노숙인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과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서울시의 대책의 실효성이 주된 조사내용이 될 것이다. 여기에 기본적인 인구학적특성, 거리노숙상황, 탈거리노숙을 위한 욕

주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누가 노숙인이고 누가 철도 이용객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차별행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 시설물인 철도역사를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점유할 수 있다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1) 2011년 7월 말 현재 심야시간대에 서울역사 내에 머무는 인원은 약 10여명정도이며, 서울역에 야간 잠자리를 활용해왔고 해당 역으로부터 강제추출의 경험을 가진 노숙인을 대상으로는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실태조사보고서에서 10명 정도의 거리노숙인을 조사, 분석하였다.

구, 현재 노숙인지원체계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여부 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1〉 양적조사 조사항목

구분	세부항목
인구학적 특성 관련 항목	성, 연령, 조사장소
거리노숙관련 항목	노숙기간, 거리노숙기간, 공공장소에서의 퇴거경험여부 및 내용, 구타 및 폭력 등 거리노숙 시 피해상황여부 및 내용,
서울역관련 항목	야간노숙금지조치에 대한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서울역으로부터의 퇴거조치 경험여부 및 내용, 서울역에 머무는 시간대와 이용장소, 서울역인근에 잠자리를 마련하는 이유, 서울역탈피 의지 및 탈피시 필요서비스
서울시대책관련 항목	서울시대책에 대한 인지, 서울시 대책 신청 및 사후조치, 서비스 제공기관인지 및 이용여부, 서비스 비이용 사유
기타	탈거리노숙시 필요서비스, 금융채무연체여부, 서울역, 서울시, 복지부에 대한 요구

서울역의 야간노숙행위금지조치가 발효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주간 및 야간에 서울역사 내에 머물거나 서울역 인근에 머물거나 잠자리를 마련하는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앞서 밝힌 조사기간 동안 총 95부가 조사되었고 그 중 부실기재 된 3부를 제외한 총 92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3.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 특성

2010년도 민간에 의해 파악된 거리노숙인 중 여성노숙인 비율은 서울의 경우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²²⁾ 본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성

22) 거리노숙인수는 각 지자체별로 노숙인지원기관과 지자체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2010년 말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리노숙인의 수는 1,197명, 서울의 경우 585명으로 발표되었다. 현재 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를 통해 보고되고 있는 이 수치에 대해 거리노숙인 수파악에 사각지대가 많을 것으로 예측, 2010년도 10월 말 두 차례에 걸쳐 노숙인지원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조사해 보고한 수치를 보면 경기를 제외한 전국거리노숙인 수는 1,500명 정도, 서울지역에서 파악된 거리노숙인수는 1,12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시가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별 분포는 여성이 3.3%, 남성이 96.7%로 성별분포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역사 내, 그리고 서울역 주변에 머물거나 야간에 잠자리를 마련하는 여성노숙인의 경우 정신질환이나 경계심을 가진 여성이 다수이므로 충분히 라포(rapport)를 형성하지 못한 조사원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거리노숙인의 경우 야간시간대에 주로 깨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포착되는 비율이 낮아 사실상 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점에 기인한 것이다.

〈표 Ⅲ-2〉 성별분포

	빈도	비율
여 성	3	3.3
남 성	89	96.7
합 계	92	100.0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0.0세였으며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50대 32.6%, 40대 30.4%, 60대 46.3% 30대 15.2%의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²³⁾. 55세 이상 고령자는 34.7%였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은 10%정도로 나타나 비교적 거리노숙인 중 고령자 분포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있는 수치에 비해 500명정도 편차가 발생했는데, 이를 통해 지원대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노숙인수 파악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계획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010년도 민간에 의해 파악된 거리노숙인 중 여성노숙인의 비율은 서울의 경우 10.14%인 것으로 나타났다.

- 23) 쉼터노숙인의 연령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료는 없다. 다만, 급변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역 인근에 머무는 거리노숙인 중 노인의 인터뷰내용을 참고해보면 "시설(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은 모두 우리같은 노인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젊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같은 사람들은 뒤로 밀려서... 느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나같이 70넘은(70세가 넘은) 사람들이 갈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도(서울역 광장) 마찬가지로. 한쪽이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상담원) 말도 잘 안걸어요." - 시설에서도 거리에서도 힘의 논리에 의해 외진 공간으로 밀려나거나 해당 하는 공간에서 안심하고 정주할 수 없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표 Ⅲ-3〉 연령분포

	빈도	비율
20대	1	1.1
30대	14	15.2
40대	28	30.4
50대	30	32.6
60대	15	16.3
70대 이상	4	4.3
합계	92	100.0
평균	50.0세	

한편 조사대상자의 평균 거리노숙기간은 평균 59개월로 약 5년 정도 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역 인근에서 잠자리를 마련한 기간은 35.6개월, 약 3년 정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거리노숙기간에 비해 서울역 및 인근에 잠자리를 마련한 기간은 2년정도 짧게 분포되었으며 거리노숙기간이 6개월 이하의 초기 노숙인은 조사대상자 중 총 25명, 27.5%가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4〉 거리노숙기간 및 서울역인근에서 머문 기간

(단위: 개월)

	서울역잠자리기간		거리노숙기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개월 이하	10	11.9	8	8.8
6개월 이하	24	28.6	17	18.7
1년 이하	10	11.9	6	6.6
2년 이하	8	9.5	7	7.7
3년 이하	5	6.0	11	12.1
4년 이하	4	4.8	4	4.4
5년 이하	7	8.3	5	5.5
5년 초과	16	19.0	33	36.3
합계	84	100.0	91	100.0
평균	35.6개월(응답자 84명) 최소1개월-최대240개월		59.0개월(응답자 91명) 최소1개월-최대 360개월	

본 조사는 서울역사 내에 머물거나 야간에 서울역사 인근에 잠자리를 마련하는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가 수행된 장소는 서울역사내를 비롯해 거리노숙인이 주로 머무는 곳인 롯데마트근처와 서부역, 서울역인근지하도인 우체국지하도와 중앙지하도, 서울역광장과 인근 급식소와 무료진료소에 인접한 거리노숙인이용시설²⁴⁾에서 조사되었다. 해당 장소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은 아래와 같다.

〈표 Ⅲ-5〉 조사장소

조사장소	빈도	비율
드림시티 및 인근 지역	32	34.8
롯데마트 쪽, 서부역	21	22.8
서울역 인근지하도(중앙, 우체국 등)	21	22.8
서울역 광장	13	14.2
기타	5	5.4
합계	92	100

2) 서울역조치관련

먼저 서울역에서 발표한 야간노숙행위금지 조치에 대한 인지도 여부를 살펴본 결과 약 96%에 달하는 거리노숙인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거리노숙인이 해당 조치에 대해 알고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4) 드림시티는 2011년에 개소한 거리노숙인 이용시설로서 서울역인근 노숙인서비스공식체계인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와 근접해 있는 곳이다. 이 곳에서는 매일 30~50명에게 세탁서비스와 매주 60여명에게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컴퓨터교육, 구직정보제공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역의 야간노숙금지조치 발표시점인 8월부터 24시간 개방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공간에서 야간잠자리를 마련하려는 노숙인의 욕구를 반영해 야간잠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인근지역에 공간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노숙인공식적인 지원체계인 상담보호센터에 비해 거리노숙인 및 쪽방거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Ⅲ-6〉 서울역 조치에 대한 인지여부

	빈도	비율
알고 있다	88	95.7
모르고 있다	4	4.3
합계	92	100.0

서울역측은 해당 조치에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방침도 발표하였다. 따라서 거리노숙인들의 정보 인지 경로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주변노숙인의 말을 듣고 알게 된 비율이 46.6%, 신문이나 티비 등 언론을 보고 알게 된 비율이 37.5%로 84.1%에 달하는 노숙인이 서울역으로부터의 안내나 홍보조치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역 측의 안내로 알게 된 비율은 4.5%에 그쳤다.

〈표 Ⅲ-7〉 서울역 조치에 대한 인지경로

	빈도	비율
주변 노숙인들이 말해주어서	41	46.6
신문이나 티비를 보고서	33	37.5
서울역 측에서 알려주어서	4	4.5
거리상담원 등이 말해주어서	4	4.5
기타	6	6.8
합계	88	100.0

그렇다면 서울역의 야간노숙행위 금지조치 소식을 듣고 노숙인은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했을까? 다음은 서울역의 조치에 대한 노숙인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거나 생각을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우선 ‘추위, 비 등을 피할 곳이 없어진 점에 대한 걱정’ 19.5%이었으며, 다음으로 민원유발은 소수의 노숙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있는 ‘노숙인 전체에게 그러는지에 대한 억울함’ 18.7%,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한 막막함’ 18.3%, ‘노숙인에 대한 시선이 더욱 나빠질 것 같은 두려움’ 12.8%, ‘다른 역에서도 쫓겨날 것 같은 걱정’ 8.7%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된다’고 응답한 3.3%의 조사대상자에 반해 대다수의 거리노숙인은 억울함, 막막함, 두려움, 걱정이 주된 심리적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타 답변을 살펴보면 ‘이제 갈 곳은 저승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상 일도 못하는 데 어디로 가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숙을 하더라도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자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하니 불안하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못들어가게 하나’, ‘모두 분노스러웠다’ 등의 답변이 있어 불안함과 두려움, 억울함 등이 구체적으로 답변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서울역과 코레일의 본 조치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 충격으로 거처를 상실하게 된 거리노숙인에게 또 다른 심리적 충격을²⁵⁾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8〉 야간노숙행위금지조치가 노숙인들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중복응답 3)

	빈도	비율	순위
추위, 비나 더위 등 피할 곳이 없어서 걱정함	47	19.5	1
왜 노숙인한테만 그러는지에 대한 억울함	45	18.7	2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해짐	44	18.3	3
노숙인에 대한 시선이 나빠질 것 같아 걱정함	31	12.9	4
다른 역에서도 쫓아낼 것 같아서 걱정함	20	8.3	5

25) 개인의 역동적인 생활사에서 노숙생활은 심리사회적인 손상의 특성을 유발한다고 보는 다수의 연구물이 있다. Bauman & Grigsby의 만성화 연구(1988), Weitzman 등의 노숙시나리오 비교연구(1990), Hertberg의 노숙 하강나선론, Goodman 등의 노숙외상론(1991) 등이 그것이며, 이들 연구는 첫째, 노숙인이 되는 사건은 가정과 이웃, 일상생활, 관습적인 사회적 역할 등을 상실하는 과정으로서 그 자체로 심리사회적 외상의 증상을 가져오고, 둘째, 노숙인이 되는 그 자체의 과정에서 심리사회적인 외상을 입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길거리나 임시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생활의 지속적인 조건에 의해 결국 개인의 대처능력이 손상되고 외상의 증상에 빠져들며, 셋째 노숙인이 되거나 지속적인 노숙생활로 심리사회적 외상을 겪게 되지는 않더라도 과거에 다양한 생활경험과 관련해 이들의 잠재적 손상을 증폭시켜 심리사회적 외상의 증상을 나타내게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남기철, 2007 재인용). 그리고 노숙생활로 인한 심리사회적 외상의 양상은 사회적 연계단절(social disaffiliation)과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으로 드러난다고 밝히고 있다. 코레일과 서울역의 본 조치는 이런 심리사회적 손상의 특성을 유발하는 노숙상태에 처한 사람들에게 ‘공공장소에서의 축출’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또 다시 사회관계의 단절과 무기력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빈도	비율	순위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 걱정함	15	6.2	6
단속이 강압적으로 되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움	13	5.4	
그냥 다른 곳(지하도, 역, 공원)으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함	8	3.3	
기타	18	7.4	
합계	241	100	

한편 조사대상자 중 31.5%가 서울역의 야간노숙금지조치이후 퇴거경험이 있음을 밝혔는데,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청소시간인 야간시간대는 물론, 주간시간대에도 냄새가 나거나 지저분해 보인다가거나 오래 앉아있는 경우 별도의 서비스 안내 없이 역사 밖으로 나가달라는 행위나 지시를 들었고 그 과정에서 모멸적인 대우, 즉 폭언이나 무시하는 시선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본 조사에서는 서울역의 조치 이후 퇴거조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9명의 거리노숙인들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어느시간대에 누구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았는가에 대해 주관식응답을 통해 조사했다.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시간대인 심야시간에 퇴거조치를 경험한 경우가 13명, 그 외에 주간시간대에 퇴거조치를 경험한 경우가 10명으로(6명 무응답), 야간시간에 청소의 명목으로 공안으로부터 혹은 역무원으로부터 퇴거조치를 당했다고 했으며, 공식적인 시간 외에 주간시간대에는 공안들로부터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니 나가달라’, ‘화장실을 사용하면 안된다’²⁶⁾,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 ‘돈을 내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나가달라’는 공안 혹은 역무원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답변을 통해 볼 때 코레일과 서울역의 노숙인 퇴거조치는 공식적인 심야시간대 외에도 주간시간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조치의 내용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하는 것 없이, 단순히 ‘역사 바깥으로 나가도록’하는 것 외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6) 해당 답변의 내용을 보면 낮게 텔레비전으로 볼 때 앉아있는 당사자에게 ‘1시간만 나가있다가 들어오라’는 조치를 받았다거나, 냄새가 날까봐 깨끗하게 있으려고 화장실에서 씻는 동안 ‘화장실은 이용하면 안된다’는 조치를 받고 역사 내에서 나가있게 되었다는 응답이었다.

〈표 Ⅲ-9〉 서울역 조치 이후 퇴거조치 경험 여부

	빈도	비율
서울역에서 퇴거조치 경험 있다	29	31.5
서울역에서 퇴거조치 경험 없다	63	68.5
합계	92	100.0

서울역사 내에서 야간에 노숙을 금지하거나 오전시간대 까지 ‘노숙차림을 한 사람’에 대한 출입통제에 대한 코레일과 서울역의 조치가 과연 적정한 것이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노숙인들이 서울역 혹은 서울역 인근에서 어느 시간대, 어느 곳에 주로 머무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우선 서울역사내 혹은 서울역사 인근에 주로 머무는 시간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응답자 92명 중 주간시간대에 주로 서울역이나 인근에 머문다고 응답한 거리노숙인은 19.2%, 야간시간대는 42.4%로 분포되었다. 그리고 시간과 무관하게 계속 머문다고 응답한 비율은 34.7%로 분포되었다. 요컨대 조사대상자 중 주간에 머무는 비율은 54%정도이며, 야간에 머무는 비율은 77%정도로 분포되어 야간시간대에 서울역사내 혹은 서울역사 인근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화 하여 시간대별로 주로 이용하는 공간분포 및 해당공간에서 주로 하는 일을 살펴보았다. 주간시간대에 역사 및 역사주변을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거리노숙인은 대부분 역사 내부에서 티비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거나(61.1%), 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것(21.2%)으로 답하고 있었다. 한편 야간시간대에 서울역 및 서울역 인근에 머문다고 응답한 거리노숙인의 경우 서울역사내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화장실 등을 사용하는 비율은 28.2%로 나타났고, 그 외 거리노숙인 대부분은 역사 외부나 역사 인근 지하도 등 역사내부가 아닌 곳에서 잠자리를 마련하거나 아는 사람을 만난다(62.1%)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자면, 서울역에 주로 머무는 조사대상 거리노숙인의 경우, 서울역사내부에 주간시간대 이용률이 야간시간대에 비해 높게 분포되었고, 서울역사내에 머물거나 잠자리를 마련하는 거리노숙인은 사실상 적게 분포되었다. 결국 서울역 내부 대합실에서 야간에 노숙행위를 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야간노숙금지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은, 청소시간이라는 명분과 하절기라는 계절적 특성을 활용한 코레일의 암묵적인 노숙인 퇴거정책, 환경정비정책의 외연화라고 할 수 있겠다.

〈표 Ⅲ-10〉 서울역 및 서울역 인근에서 머무는 시간대와 시간대별 주 이용공간과 하는 일

주사용 시간	빈도	비율	주이용 공간(중복2)	빈도	비율	주요하는 일(중복2)	빈도	비율
주간	18	19.6	대합실	15	45.6	무료하게 시간 보내기	6	18.3
			화장실	7	21.2	앉아서 휴식(티비)취하기	14	42.5
			외부광장	7	21.2	화장실(세면)사용하기	7	21.2
			외부지하도	1	3.0	지인만나기	3	9.0
			기타	3	9.0	잠자리로 이용하기	1	3.0
			소계	33	100.0	기타	2	6.0
			-	-	-	소계	33	100.0
야간	39	42.4	대합실	7	11.0	무료하게 시간 보내기	5	7.6
			화장실	11	17.2	앉아서 휴식(티비)취하기	12	18.2
			외부출입구	5	7.8	화장실(세면)사용하기	8	12.1
			외부광장	15	23.5	지인만나기	8	12.1
			외부지하도	14	21.9	잠자리로 이용하기	31	47.0
			기타	12	18.6	기타	2	3.0
			소계	64	100.0	소계	66	100.0
계속	32	34.8						
기타	3	3.3						
합계	92	100.0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역의 금번 야간노숙행위금지 조치는 거리노숙인들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특히 노숙인들은 추위와 우천 시 피할 곳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던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거처가 없는 상태에서의 서울역과 같은 공공시설물은 거리노숙인에게 물리적인 방과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거리노숙인들이 왜 서울역 혹은 서울역 인근에서 머물게

되었는지, 특히 잠자리로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서울역 및 서울역 인근에 잠자리를 마련하게 된 사유로 무료급식을 이용 할 수 있어서 20.4%, 다른 곳을 잘 몰라서 17.0% 더위나 추위, 비 등을 피할 수 있어서 15.3%의 순으로 대답하고 있었다. 특히 친구나 지인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리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느껴져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21.4%에 달해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은 고립된 상태에서의 노숙보다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거리노숙기간에 따라 구분해 살펴보았는데, 특히 거리노숙기간이 6개월 이하, 즉 초기노숙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경우 다른 곳을 잘 몰라서 34.1%, 사람들이 있어서 혼자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서 혹은 아는 사람과 있으려고 29.2%, 무료급식 등이 있어서 25.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공공역사가 아무런 정보없이 거처를 상실한 상태에서 막연히 안전을 목적으로 찾게 되는 공간임을 알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 서울역 노숙인사망사건 이후 수행된 거리노숙인인권실태조사²⁷⁾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05년도 수행된 인권실태조사에서는 ‘마땅히 가 있을 곳이 없어서’란 응답이 37%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고 혼자 있는 것보다 아는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전해서라는 응답이 1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우리에게 공공역사가 사회취약계층이 주거상실 이후 유입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염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런 사실은 노숙이 만성화되기 이전, 공공역사를 찾거나 그곳에 머무는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노숙인지원체계로 흡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시사한다. 따라서 공공역사를 중심으로 거리노숙 상태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공식적인 노숙지원체계로 유인할 수 있는 탈거리노숙대책을 구체화해야한다.

27) 2005년 서울역사내 거리노숙인 사망사건을 계기로 수행된 노숙인지원 인권옹호단체(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 사람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의 <거리노숙인 인권실태조사>의 결과이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리노숙인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생활공간, 고용, 음주, 공공역사의 부당행위, 응급의료시 대처, 기타 인권침해와 관련된 부당행위 및 범죄피해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Ⅲ-11〉 서울역 및 서울역 인근에 잠자리를 마련하게 된 사유(중복응답 2)

	빈도	비율	순위	6개월이하			6개월이상	
				빈도	비율	순위	빈도	비율
무료급식 등이 있어서	36	20.4	1	12	25.5	2	23	17.8
다른 곳을 잘 몰라서	30	17.0	2	16	34.1	1	16	12.4
더위나 추위, 비 등을 피하기 위해서	27	15.3	3	5	10.6	4	22	17.1
친구나 동료와 함께 있으려고	20	11.3	4	1	2.1		17	13.2
사람들이 있어서 혼자보다는 안전해서	18	10.1	5	6	12.8	3	12	9.3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18	10.1	5	3	6.4	5	15	11.6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아서	12	6.8		1	2.1		11	8.5
인력사무소가 인접해 있어서	8	4.5		2	4.3		6	4.7
기타	8	4.5		1	2.1		7	5.4
합계	177	100.0		47	100.0		129	100.0

거리노숙상태는 공공장소로부터의 퇴거라는 인권침해 외에도 다양한 폭력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이다. 즉 언어폭력을 비롯해 신체적인 폭력, 명의도용이나 사기 등의 피해경험도 적지 않다. 다음은 이러한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우선 다른 공공역사 혹은 공공장소에서의 퇴거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 중 25%, 즉 4명중 1명꼴로 퇴거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내용은 서울역사에 근접해 있는 L마트 경비원들로부터 청소나 정리를 이유로 맞거나 욕설을 듣고 쫓겨난 경험, 수원역, 청량리역, 부산역 등 거리노숙인이 비교적 다소 사용 혹은 잠자리를 마련하는 빈도가 높은 공공역사에서 공안 혹은 역무원으로부터 여행객이 아니므로, 혹은 청소를 이유로 퇴거당한 경험이었다.

퇴거경험이 있는 이들의 경우 절반 가량이 퇴거조치 이후 인근역사나 지하도, 혹은 공원으로 이동했다고 응답하고 있었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배회했다는 응답도 35%가량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금번 서울역의 조치 이후 서울역 측에서는 소위 풍선효과는 없었다고 하나 서울역 인근 역사 및 지하도 혹은 다른 지역의 공공역사의 거리노숙인 수 변동여

부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Ⅲ-12〉 다른 역사 혹은 공공장소에서의 퇴거 경험 여부

	빈도	비율
공공장소에서의 퇴거경험이 있다	23	25.0
공공장소에서의 퇴거경험이 없다	69	75.0
합계	92	100.0

〈표 Ⅲ-13〉 퇴거조치 이후의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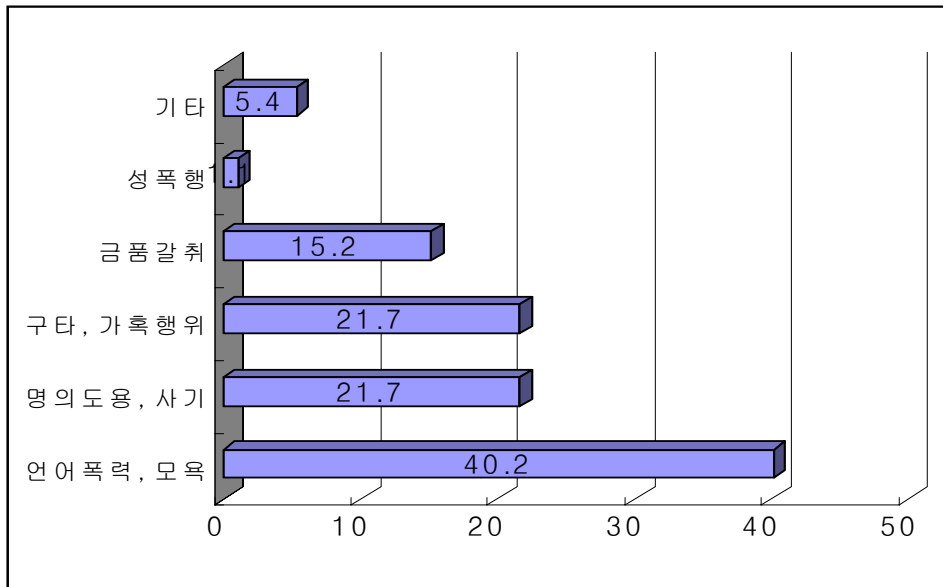
	빈도	비율
인근 역이나 지하도로 옮겼다	9	39.1
인근 공원으로 옮겼다	3	13.0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배회했다	8	34.8
기타	3	13.0
합계	23	100.0

다음은 거리노숙 생활 중 경험했던 부당행위나 범죄피해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가장 많은 폭력의 유형은 언어폭력, 즉 모욕이나 욕설 등의 정신적인 폭력이었으며(40.2%) 구타나 가혹행위(21.7%), 명의도용 등(21.7%)이 그 뒤를 이었다.

부당행위 및 범죄피해의 중별 경험여부 외에 해당 행위에 대한 가해자에 대해 주관식답변을 요구하였는데, 언어폭력 및 모욕, 구타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주된 가해자가 철도공안, 공익요원 등으로 응답되고 있으며 공공역사 인근 상업시설의 경비원도 적지 않아 거리노숙인 대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복지정보제공의 의무고지 및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한다.

〈표 Ⅲ-14〉 거리노숙상태에서 부당행위 및 범죄피해 경험

구분	피해 경험 있다(%)	주된 가해자
언어폭력, 모욕	40.2	철도공안, 경비원, 공익요원, 시민, 노숙인
명의도용, 사기	21.7	모르는 사람, 서울역 사기꾼, 브로커
구타, 가혹행위	21.7	철도공안, 경비원, 노숙인, 시민
금품갈취	15.2	자고 있을 때 모르는 사람
성폭행	1.1	-
기타	5.4	-
합계	100.0	



거리노숙상황은 더위나 추위를 피할 곳이 없어 물리적인 건강의 위협이 도사린다는 점, 일정한 주소지가 없어 수급신청 또한 난이해 기본생활권 확보가 어렵다는 점 외에도 공안이나 경비원 등 경비업무 종사자, 일반시민, 노숙인 등에 의한 폭언 등의 정서적 폭력 및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기 용이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노숙상황에 처한 자신에 대한 관계단절과 무기력은 정서적인 폭력에 의해 가중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마땅히 피해를 호소할

만한 곳이 없어서 그냥 참고 지나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언급한 2005년도 거리노숙인인권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부당행위나 범죄피해 경험비율이 조사대상자의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조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비율이 61.5%로 나타나 거리노숙인들이 위험 속에 방치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 시 개입을 요구할 곳도 마땅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5〉 피해 발생 시 대처

	빈도	비율
마땅히 도움 청할 곳이 없어서 참았다	46	82.1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3	5.4
노숙동료 등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2	3.6
거리상담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3	5.4
기타	2	3.6
합계	56	100.0

3) 서울시대책 관련

한편 서울시는 7월말 서울역의 야간노숙행위조치의 공식화 이후 긴급하게 <거리노숙인 보호·자활·감소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내용인 즉 ‘응급구호방 50호 및 임시주거비지원사업 100호 공급, 특별자활근로 200개 마련, 24시간 개방카페를 설치, 그리고 노숙인 사회복지를 위한 응급보호상담반 360명을 투입하여 9월 15일까지 집중 상담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1년 9월말 현재 24시간 개방카페는 공간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360명의 상담원 배치는 9월 초순까지의 누적수치로서 서울시내 몇몇 노숙인쉼터의 실무자와 정신보건센터의 실무자, 서울시공무원 등이 4인1조로 구성하여 한시적인 운영이 된 것으로서 실질적인 거리노숙인 전담 신규채용 상담원수는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게다가 현재 시행하는 대책은 이미 해마다 ‘동절기 노숙인대책’으로 실시해오던 것으로서 임시주거지원사업과 일자리사업 모두 4~5개월간의 한시적 사업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사업이 종료될 무렵

인 동절기에 대비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어찌되었든 서울시의 긴급대책이 서울역 조치에 대한 대책이었던 만큼, 서울역 인근에 머무는 거리노숙인들은 해당 대책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적어도 알고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야한다. 그런데 조사결과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8%에 달하고 있었다. 이는 급속히 시작한 대책이긴 하나 정작 서울역인근에 야간잠자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정보제공이 되지 못했거나 공급량의 부족으로 조기마감 된 이후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한편 서울역 대책을 알았던 사람들 중 48%만 신청할 수 있었고 이들은 특별자활근로 55%, 임시주거비지원 40%, 쉼터입소 5%를 지원받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전체응답자 92명 중 단 13명, 14.1%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대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청했지만 이미 종료되어 탈락한 경우가 반 이상에 달하고 있다.

〈표 Ⅲ-16〉 서울시 대책에 대한 인지여부

	빈도	비율	
		신청했다(47.9%)	신청하지 않았다(52.1%)
서울시 대책에 대해 알고 있다	48	52.2	-
서울시 대책에 대해 모르고 있다	44	47.8	-
합계	92	100.0	-

서울역의 조치 이후 서울시 거리노숙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주관식), 거리노숙당사자들은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지원기간이 한정적이어서’, ‘언론에서 발표한 지원책과는 달랐다’ 등의 지원사업의 한시성의 문제, ‘신청절차를 몰랐다’, ‘내가 자는 곳까지는 아무도 오지 않아서 몰랐다’, 등의 정보차단의 문제, ‘주거지원은 안되고 일자지만 지원해준다고 해서 계속 거리에 있으라는 얘길 듣고 포기했다’, ‘상담원이 아는 사람만 해준다’, ‘명의도용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등의 전달체계의 크리밍(creaming)²⁸⁾ 문제로 인해 서울시의 지원사업 신청이 좌절되거나

28) 크리밍(creaming)은 사회복지기관 등의 사회복지조직이 투입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교적 성공 가능성이 큰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찾아내거나, 자원의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결국, 서울시의 대책은 정보전달의 사각지대 발생 및 지원대상 포괄의 문제, 그리고 거리노숙인 대책의 절대공급량 부족의 문제 등으로 서울역 및 서울역 인근 거리노숙인들 다수가 본 지원대책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²⁹⁾. 이러한 경향은 8월 한달간 서울역사 내에 머물거나 서울역 인근에서 잠자리를 마련하는 거리노숙인 수를 파악해 온 기관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³⁰⁾. 서울역사내 대합실을 비롯해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 인근 지하도 및 건물 앞 등 중앙지하도, 우체국지하도, 연세빌딩앞, 서부역인근 등 거리노숙인구가 밀집한 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수치이다. 해당 하는 곳은 본 조사가 수행된 곳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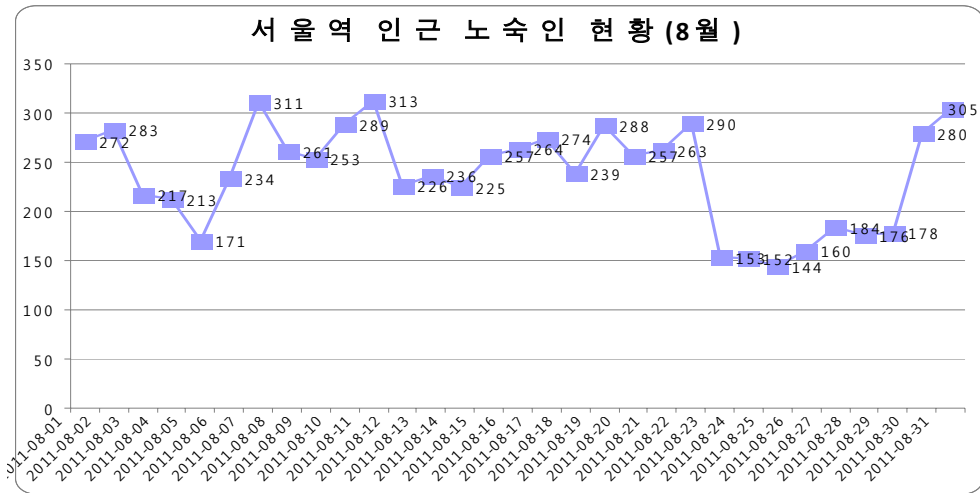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서울시는 서울역 조치 직후인 8월초부터 서울역인근 거리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9월초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균 250명 정도의 거리노숙인이 서울역인근에 위치해있었다는 점과, 위와 같은 공급량의 사업이 전개되었던 것이 8월 초순부터였다면, 적어도 현재 서울역인근에 머무는 거리노숙인수는 8월 한달간 상당수 감소해야한다. 그러나 서울역의 야간 노숙행위금지조치 이전과 이후³¹⁾에 대한 비교수치를 보면, 즉 서울역 조치가 발표되고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까지의 서울역 노숙인 수는 254.5명이었으며, 서울역 조치시행일인 8월 22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리노숙인 수가 평균 246.1명이었던 점은 사실상 많은 노숙인수가 서울시의 사업으로 인해 감소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소모가 많고 서비스의 수요가 큰 대상자를 배제하는 현상을 말한다. 결국 사회복지 조직이 희소한 자원 확보와 유지에만 몰두한다면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크리밍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 29) 조사대상자 중 신청자 대부분의 응답을 살펴보면, 임시주거비지원사업, 응급구호방, 일자리사업은 주거와 고용이 패키지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주거지원과 일자리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안내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제공된 서비스 수는 서울역인근에 머무는 노숙인 수와 유사한 셈이다. 그런데 조사결과 300여명의 서울역 및 서울역 인근에 머무는 거리노숙인 중 일부만 정보를 알고 있거나 극히 일부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 사업의 전달체계 및 그 내용, 그리고 사업의 공급량 및 수요량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0) <표 III-17> 자료는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의 거리노숙인수 파악 일일보고자료이다.
- 31) 노숙인수 파악은 시점이 특히 중요하다. 서울역의 금지조치 이후 서울역광장 쪽 노숙인수가 약 일주일간 급감한 것은 인근L마트의 바자회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공간에 야간잠자리를 마련하는 노숙인수가 파악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Ⅲ-17〉 서울역 및 서울역 인근 거리노숙인 수

일시	서울역 광장	대합실	중앙 지하도	우체국 지하도	연세빌딩	서부역 인근	계
2011-08-01	160	30	26	7	31	18	272
2011-08-02	157	48	41	11	8	18	283
2011-08-03	113	38	34	8	16	8	217
2011-08-04	101	54	22	7	19	10	213
2011-08-05	72	30	21	6	27	15	171
2011-08-06	87	53	31	7	45	11	234
2011-08-07	160	49	44	6	21	31	311
2011-08-08	97	10	45	15	25	69	261
2011-08-09	157	16	30	8	27	15	253
2011-08-10	98	17	34	8	34	98	289
2011-08-11	115	30	25	6	41	96	313
2011-08-12	112	22	46	13	1	32	226
2011-08-13	98	27	54	13	11	33	236
2011-08-14	65	57	48	9	7	39	225
2011-08-15	77	20	32	9	33	86	257
2011-08-16	39	5	43	16	1	160	264
2011-08-17	193	5	42	16	10	8	274
2011-08-18	104	23	43	10	19	40	239
2011-08-19	187	10	42	8	14	27	288
2011-08-20	139	38	41	9	10	20	257
2011-08-21	134	40	37	8	25	19	263
금지조치이전 소계	117.38	29.62	37.19	9.52	20.24	40.62	254.57
2011-08-22	145	37	45	15	28	20	290
2011-08-23	62	7	36	10	13	25	153
2011-08-24	39	5	36	11	12	49	152
2011-08-25	65	5	33	8	12	21	144
2011-08-26	69	11	32	5	24	19	160
2011-08-27	77	18	32	7	36	14	184
2011-08-28	73	17	22	8	16	40	176
2011-08-29	75	6	30	6	33	28	178
2011-08-30	175	6	30	6	34	29	280
2011-08-31	213	7	36	9	22	18	305
금지조치이후 소계	122.67	36.44	32.67	8.33	24.33	21.67	246.11



[그림 1] 서울역사 내 및 서울역인근 거리노숙인 수 추이

현재 공식적인 거리노숙인지원체계 상 서비스제공기관은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역상담소, 상담보호센터 등의 이용시설과 노숙인쉼터, 부랑인시설 등의 입소시설이 있다. 그렇다면 조사대상자들은 해당 전달체계를 알고 있는지,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탈거리노숙 대책에 있어서 서비스 접근성 제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의 정부공식 지원체계의 구도인 '거리→시설(노숙인쉼터 혹은 부랑인시설)'이라는 단선구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본 조사에서는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역상담소, 상담보호센터, 노숙인쉼터, 부랑인시설에 대한 인지도, 이용률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 제공처에 대한 인지도는 무료급식소 92.3%, 무료진료소 90.2%, 상담보호센터 83.1%, 역상담소 73.9%, 부랑인시설 67.8%, 노숙인쉼터 67.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률은 무료급식소 84.8%, 무료진료소 66.3%, 상담보호센터가 65.2%로 50%이상의 이용률을 보였고, 반면 역상담소 45.7%, 노숙인쉼터 36.3%, 부랑인시설 22.1%의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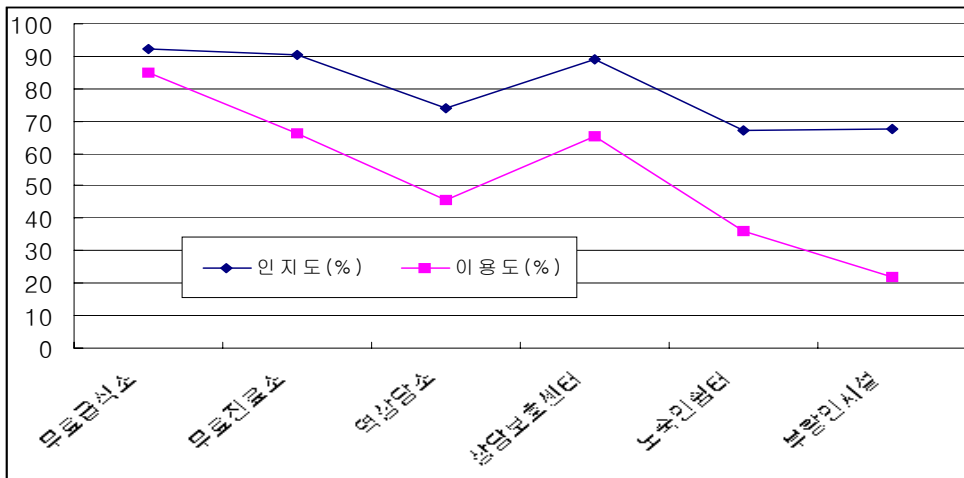
인지도와 이용률의 편차를 크게 나타낸 서비스제공처는 역상담소, 노숙인쉼터, 부랑인시설로 드러났는데, 이는 정확한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더불어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의 기능재편 및 보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지점이다.

즉 노숙인쉼터나 부랑인시설의 경우³²⁾ 입소 및 생활시설이므로 거처로서의 기능은 갖추고 있는지, 위치는 적절한지, 일자리 연계 등의 제공서비스는 확보되어 있는지 그 적정성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역 상담소의 경우 가장 역에 근접한 서비스제공처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낮다는 것은 상담소로서의 기능을 잘 하는 지, 차별과 낙인이 큰 노숙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므로 아웃리치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 지 등에 대해 재고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표 Ⅲ-18〉 거리노숙인 서비스 전달체계인지여부 및 이용여부

서비스 제공처	인지도(%)	이용도(%)
무료(실비)급식소	92.3	84.8
무료진료소	90.2	66.3
역상담소	73.9	45.7
상담보호센터(다시서기, 구세군 등)	89.1	65.2
노숙인쉼터(희망의 집 등)	67.0	36.3
부랑인시설(꽃동네, 은평마을 등)	67.8	22.1

32) 노숙인쉼터와 부랑인시설을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주관식 답변을 요청한 결과, 노숙인쉼터의 경우 너무 여럿이 생활해서, 모르는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게 힘들어서, 사람들끼리 간섭이 심해서, 한병에 너무 여럿이 자서(코골이, 이갈이 등 불편), 저녁식사시간이 정해져있어서 일하고 나면 먹을 수 없어서 등의 사유가 있었고, 부랑인시설의 경우 20여명이상 한꺼번에 자야하고 시끄러워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한방에 있어야해서, 멀리있어서,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대해서, 대규모라서 등의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처로서의 시설의 기능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방에 평균 8명~11명이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시설모두 1인당 적정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곳이 다수라 2012년 6월 법시행을 앞둔 시점에 시설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어떻게 들어가는 잘 몰라서, 사람들로부터 안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감옥같다는 말을 들어서, 맞는다는 말을 들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등 정보가 부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진 경우도 많아 보다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한편 서울역 및 서울역 인근에 머무는 거리노숙인의 대부분, 95%에 달하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서울역을 벗어나고 싶다’는 답변을 주었다. 그리고 탈거리노숙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주거지원이며(30%), 이어 거처를 확보하고 거처유지의 수단이 되는 일자리지원(24.5%), 주소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수급신청과 주민등록복원(18.7%), 의료지원(10%), 그리고 금융피해에 대한 지원(7.3%)³³⁾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순위별 응답을 요구하였는데, 1순위로 응답된 것은 주거지원 47.7%, 일자리지원 14.0%,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10.5%의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 응답은 일자리지원 27.5%, 주거지원 26.3%,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15.0%, 3순위 응답은 일자리지원 37.0%, 금융피해에 대한 지원 16.7%,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11.1%로 분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주거확보를 기본으로 한 수급신청, 주민등록복원, 일자리지원, 금융피해에 대한 지원 등이 동시에 이

33)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54.4%가 금융채무연체자로 조사되었다. 거리생활 혹은 거리생활로 가는 과정에서 금융채무연체 및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는 거처확보 이후 표면화된다. 즉 채무를 갖게 되면 확보된 주소지로 불법채권추심을 하거나 채무독촉장을 보내 안정적인 주거유지에 장벽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특히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본인명의의 재산인 자동차 혹은 사업장은 수급신청에서도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해당 사례의 경우 밀착된 사례관리(거처확보이후 사후지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주거지원, 일자리지원이 각각의 선택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원을 필수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주민등록복원, 의료지원 그리고 거처유지를 위한 일자리확보, 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 파산 및 면책절차 등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서울시 대책은 서울역인근에 머무는 거리노숙인수를 포괄하는 공급량도 아니었을 뿐더러 주거지원과 일자리지원(특별자활근로) 중 한 가지를 택하게 했다. 특히 거처확보와 일자리지원 이후 후속지원책으로서 사례관리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 및 비용을 편성하지 않은 채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센터 두 곳에 지원사업을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 서울역을 근간으로 한 아웃리치를 통해 라포형성을 하지 못한 점과 사후지원책이 연속되지 못해 사업수행에 한계를 가졌던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Ⅲ-19> 탈거리노숙 시 가장 필요한 지원책(순위별 응답, 택3)

	1순위		2순위		3순위		중복응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순위
주거지원(월세지원 등)	41	47.7	21	26.3	4	7.4	66	30.0	1
일자리지원	12	14.0	22	27.5	20	37.0	54	24.5	2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9	10.5	12	15.0	6	11.1	27	12.3	3
의료지원(병원입원 등)	7	8.1	11	13.8	4	7.4	22	10.0	4
금융피해에 대한 지원	3	3.5	4	5.0	9	16.7	16	7.3	5
복지시설입소(쉼터 등)	5	5.8	4	5.0	1	1.9	10	4.5	7
주민등록복원	6	7.0	3	3.8	5	9.3	14	6.4	6
알콜치료 받을 수 있는 곳	1	1.2	1	1.3	2	3.7	4	1.8	
기타	2	2.3	2	2.5	3	5.6	7	3.2	
합계	86	100.0	80	100.0	54	100.0	213	100.0	

4. 결과 및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본 조사는 코레일과 서울역의 <야간노숙금지조치>가 노숙인의 심리상태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아울러 서울역 조치와 함께 수행된 서울시의 긴급대책과 관련해 그 실효성을 살펴

보고, 이를 통해 노숙인대책에 있어서 탈거리노숙지원책에 대한 합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역사 내 및 서울역 인근에 머무는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조사자가 기입하는 방식의 면접조사를 수행했으며, 설문지의 주된 내용은 서울역조치에 대한 생각, 서울시 대책에 대한 생각, 거리노숙 상황 등으로 구성했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96%가 남성이었고 여성은 4%에 불과하였는데, 이처럼 여성거리노숙인의 수가 적게 포착된 것은 여성거리노숙인이 가진 병리적특성-경증정신질환 등-과 특히 야간시간대에 한 장소에 머물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조사원들의 접근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 점 등에 기인한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0.0세였으며 55세이상 고령자는 35%정도로 분포되었다. 이들의 평균거리노숙기간은 약 5년정도였으며, 서울역인근에서 잠자리를 마련한 기간은 평균 3년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대부분인 96%선은 서울역의 <야간노숙행위금지>조치에 대해 알고 있었다. 특이할만한 점은 인지경로인데, 그 주된 경로는 마스크와 주변 노숙 동료들이었고, 퇴거조치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하겠다던 서울역으로부터 안내 받은 거리노숙인은 4.5%에 불과했다.

서울역의 야간노숙행위금지조치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불안, 두려움, 위축, 분노 등에 관한 의견을 주었는데, ‘① 추위, 비 등을 피할 곳이 없어서 걱정이 된다, ② 왜 노숙인한테만 그러는지에 대해 억울하다, ③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하다, ④ 노숙인에 대한 시선이 나빠질 것이 염려된다, ⑤ 다른 곳에서도 쫓겨날 것 같아 두렵다’ 등의 의견이 주되었다. 결국 금번 조치는 거리노숙상태에 빠지는 과정에서 이미 심리사회적손상(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을 입은 거리노숙인 전체에게 ‘공공장소로부터의 축출’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중의 심리적 손상을 입힌 셈이다.

2011년 8월말 현재 서울역에서 공식적으로 퇴거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심야시간대에 서울역사 내에 머무는 노숙인은 퇴거조치에 대해 이미 알려져있고, 하절기 실내온도가 높아 조사대상자의 10%미만이 서울역사 내에 머무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특히 초기노숙인으로 간주되는 6개월 이하의 거리노숙인들의 응답인데, 이들의 경우 서울역사 및 그 주변에 머물게 된 이유에 대

해 ‘다른 곳을 잘 몰라서’ 혹은 ‘사람들이 있어서 혼자있기 보다는 안전해서’라는 응답을 약 47%로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취약계층이 주거를 상실할 경우 가장 먼저 막연히 안전을 위해 찾는 곳이 공공역사라는 점을 알게 한다.

한편 서울역사 외 다른 공공장소에서도 퇴거경험을 가진 비율이 조사대상자의 25%, 4명중 1명은 퇴거조치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의 경우 갈 곳이 없어서 배회하거나(35%), 인근역이나 지하도, 혹은 공원으로 옮겼다(52%)고 응답해 금번 조치로 인한 풍선효과, 혹은 분산효과가 사실상 예측되는 바이며, 해당 기간을 전후로 한 인근의 전철역이나 공원, 혹은 보다 큰 규모의 역사의 수변동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금번 코레일과 서울역의 <서울역 야간노숙행위 금지>조치는 청소시간이라는 명분 하에, 하절기라는 계절적 특성 및 민원을 활용하여, 서울역사 내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암묵적인 노숙인퇴거정책임과 동시에 거리노숙인 전체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초래했고, 시민과의 분리를 조장한 정책이다. 그리고 공공장소로 유입가능성이 높은 사회취약계층, 주거상실계층의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은 결코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하다.

서울역 측이 야간노숙금지조치를 발표하는 동안 서울시는 서울역노숙인 특별 긴급대책으로서 임시구호방 10개소를 통한 50명 수용, 노숙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별자활근로 일자리 200개 제공, 고시원, 쪽방 등을 활용한 임시주거비 지원 100명 지원, 24시간 개방카페설치, 그리고 이러한 대책을 알리기 위해 8월 초부터 9월15일까지 거리노숙인 응급보호를 위한 360명의 ‘서울역 거리노숙인 응급보호상담반’을 구성해 투입하며 상담요원은 시공무원, 노숙인보호시설실무자,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으로 구성하여 4인 1조로 운영, 매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거리상담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서울시 대책의 시행시점에서 3주가 경과하는 시점까지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는데, 조사대상자 중 52.2%만 해당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 대기 중이거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조사대상자 중 14%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반면 신청했거나 하려했지만 조기종료되어 신청할 수 없었거나, 아예 해당 정보를 모르는 비율은 48%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서울시의 대책은 정보전달의 사각지대를 포괄하지 못했던 것이고, 서울역 거리노숙인을 포괄하기에는 절대공급량이 부족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

담요원을 배치한다고는 했으나 거리노숙인 잠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하는 시간에 상담원배치시간을 종료해 야간잠자리를 마련하려고 오는 거리노숙인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을 뿐 더러,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흡수할 수 있는 공급량도 아니었기에 전달체계에서는 '골라받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서울역인근 거리노숙인 수는 8월 한달 간 크게 줄어 들지 않았다³⁴⁾.

현재 공식적인 노숙인지원체계상 서비스 제공기관은 급식소, 진료소, 상담보호센터, 노숙인쉼터, 부랑인시설 등이 있다. 서울역인근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역상담소, 상담보호센터가 있으며 이들은 거리노숙인 이용시설이며 노숙인쉼터와 부랑인시설은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로서 전자에 비해 주거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생활시설이다³⁵⁾. 본 조사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제고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인지도와 이용률에 큰 편차를 보인 서비스전달체계는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역상담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 즉 해당 제공처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 시설의 서비스제고를 위한 노력, 즉 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해 서비스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역 상담소의 경우 서울역에 가장 근접한 곳으로서 접근성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거리노숙인의 대부분은 본인의 건강위험을 비롯해 정서적폭력, 신체적폭력, 명의도용 등 위험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리 상태에서 누구나 벗어나고자 한다.

34) 서울역 조치가 발표되고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까지의 서울역 및 서울역인근 거리노숙인 수는 254.5명이었으며, 서울역 조치시행일인 8월 22일부터 8월 말까지의 거리노숙인 수는 평균 246.1명이었다. 이는 사실상 많은 노숙인수가 서울시의 사업으로 인해 감소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새로운 거리노숙인이 유입되었다고도 보아진다. 서울시는 9월 초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역의 인원이 8월초에 비해 100여명 줄어들어 서울시 대책이 효과적이었음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8월 하순 서울역광장인원으로 포착되는 80여명에서 100명의 수가 급감했던 것은 L마트와 C쇼펄물 사이(공식적인 거리노숙인 지원기관에 의해 서울역 광장노숙인수로 파악하고 있음)에 자정까지 바자회를 열어 해당 지역에 잠자리를 하지 못하는 인원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노숙인지원기관(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이 파악한 8월30일과 31일의 서울역노숙인수가 다시 280명에서 300명선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35) 현재 노숙인쉼터는 이용시설로 분류되어있으나 숙식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생활시설로 개편되어야 한다. 2012년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 대대적인 시설체계개편 및 시설설비보강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조사대상자도 마찬가지로 95%에 달하는 사람들이 '서울역을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거처가 가장 필요하며(30%), 이를 기반으로 주민등록을 복원하고(6.4%),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필요로 하며(24.5%), 일을 하지 못하므로 수급신청을 원하고 있고(12.3%), 의료서비스를 바라고(10.0%)있었다. 거리노숙인의 탈거리노숙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욕구에 부응한 대책을 전개해야 한다.



제4장 | 심층 면접 결과

1. 조사개요	51
2. 사례별 개괄	52
3. 서울역 주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한 노숙생활의 양상	58
4. 서울역 야간노숙 금지 조치 후의 풍경과 이슈들	71
5. 시사점과 제언	87

1. 조사개요

조사일시 :

2011년 8월 20일 ~ 2011년 9월 22일

조사대상 :

서울역 야간노숙금지 방침 전후로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생활 경험이 있는 노숙인

조사방법 :

본 조사를 위해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이해한 조사원 6명이 조사대상에 부합하는 노숙인 사례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는 서울역의 야간노숙금지 방침 전후의 노숙인의 생활경험을 중심으로, 노숙생활, 서울역을 선택한 이유, 야간노숙금지 방침후 서울역조치에 대한 경험과 생각, 서울시 대책에 대한 의견 등을 반구조화된 형태의 질문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조사원들은 서울역 주변에서 주간과 야간중에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택하였으며, 노숙지역 부근의 안정적 대화가 가능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개인당 40분~1시간 내외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취록으로 정리되어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되어 사례조사 결과로 정리되었다.

□ 조사대상자 개요 :

연번	연령	성별	노숙사유	거리노숙 기간	현재 잠자리	기타
1	75세	여성	빈곤과 주거환경 열악함, 아들의 학대	2주	서울역 주변	-
2	59세	남성	기구한 팔자라서...	2-3개월	서울역 주변	당뇨환자
3	56세	남성	집안관계, 건강문제	20년	서울역 주변	-
4	41세	남성	-	1년	서울역 주변	-
5	54세	남성	-	11년	서울역 주변	-
6	73세	남성	-	1개월	서울역 주변	-
7	49세	여성	수급비로 생활비 충당 어려움, 집이 답답함.	3년이상	서울역 주변	정신장애
8	58세	여성	가족의 간섭이 힘들.	1년	서울역 주변	지적장애

2. 사례별 개괄

사례1. 75세 여성

여성노인으로 서울역에서 노숙을 한 지 2주 정도 됨.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아들의 학대 때문에 간헐적으로 노숙한 적이 있음. 지난 겨울에도 난방이 끊겼는데 갈 곳이 없어서 한달가량 노숙한 적 있으며,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 집이 물에 젖은 데다가 따로 사는 아들이 찾아와 돈을 달라고 못살게 굴어 “맞아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집을 나오게 됨. 2년전 남편이 사망한 이후 아들의 횡포를 말려줄 사람이 없게 되었음.

인천의 2천만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생활고가 심하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은 없고, 이에 대한 정보도 없음.

처음엔 인천으로 나왔으나 밤 12만 되면 불이 다 꺼져서 서울역으로 왔는데,

경찰관과 직원들, 그리고 이용객들이 많아 무섭지가 않아 계속 있게 되었음. 주로 의자에 앉아서 쉬며, 간혹 장애인 화장실에서 자거나 쉬. 세면도 화장실을 이용함.

서울역의 야간노숙행위 금지조치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그저 밖으로 나가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고, 무서움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고 역사 앞 계단에서 쪼그리고 밤을 새움. 밤에는 좀 쌀쌀하다고 느꼈지만 입을 옷을 가지고 나오지 못함. 낮에는 공짜 기차를 타고 다니며 잠을 보충했음. 식사는 가진 돈 1000원으로 떡볶이를 사 먹었으며, 무료급식소 정보가 없어 급식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사례2. 59세 남성

서울역에서 노숙한 지 3개월 정도 되는 남성임.

“어쩔 수 없는 기구한 팔자라서” 노숙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다른 노숙인들에 대해서도 “오죽했으면 집에서 나와 여기에 있겠는가”라고 생각함.

주로 서울역 주변에서 24시간을 맴돌고 있음. 서울역 안에서 자다가 나갈 시간이 되어 쫓아내면 길거리로 옮겨 잠을 잠. 세면도 서울역사 내 화장실에서 하며, 서울역 주변의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진료소를 이용해 당뇨약을 타 먹음.

서울역의 강제퇴거 방침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몇몇 개개인들의 구걸 등을 이유로 자신을 포함해 전체 서울역 이용자의 퇴거를 종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퇴거조치 발표 후 실제 퇴거조치를 당한 적은 없지만, 퇴거방침 자체가 이미 퇴거조치를 당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음.

식사문제, 금전문제, 약 구입 등을 노숙생활의 어려움으로 꼽음. 서울역 퇴거방침 이후 서울시가 마련한 일련의 대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나 그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 여기고 있음.

사례3. 56세 남성

노숙한 지 20년이 된 베테랑 노숙인임. “집안 관계도 안 좋고, 몸이 안 좋아서” 노숙하게 되었다고 하나,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음.

오랜 노숙으로 몸이 매우 안 좋음. 냉이 들어 “온 욕신이 발끝에서부터 상반신까지 다 시리고 저린다” 함.

서울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고, 부담없이 올 수 있는 곳이며, 오래 이용해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곳임. 대합실 안팎을 왔다갔다 하며 시간 보내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음.

서울역의 퇴거방침을 잘 알고 있으며, 동료들과 “어디 가서 자야 하나”고 함께 걱정함. 서울역의 입장이 있겠지만, 역이든 다른 곳이든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잠이라도 자게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서울역의 퇴거조치로 안에서 못 자게 하고, 낮에도 웬만하면 다 나가라고 한다면, 본인은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나온다 함.

돈이 없어 힘드나, 노숙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일을 지원해 주더라도 센 일은 못한다고 생각함.

사례4. 41세 남성

거리노숙 생활을 한 지 1년 정도 되는 남성임.

수원역에서 노숙생활을 시작하여 영등포역에서도 생활한 적이 있고, 서울역으로 옮겨와 상담소의 상담원들에게 정을 느끼면서 계속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중임. 근처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밖에서 자도 편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상담원들에게 정을 느껴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함.

처음 서울역을 선택한 것은 식사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 공간도 넓어서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후련해지는 느낌이 들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잘 가는 느낌이라 좋음. 또 토박이 노숙인이 아니면 내쫓는 분위기가 있는 다른 곳에 비해 서울역은 워낙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자유롭고 편함.

서울역 야간노숙 금지조치를 알고 있으며, 이는 서울역사 내의 민원 문제를 해결하는 “나쁜 방법”이라 생각함. 노숙인들도 “품어주면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 지키는데”, 요즘 서울역에서는 내쫓는다는 방침 이후 술을 더 많이 먹고 서로 싸우는 일도 많아졌다고 느낌. 스스로는 퇴거방침 이후 아예 역사로 들어가지 않고, 쫓아내기 전에 나옴.

민원 때문에 지원이 줄어드는 게 힘들며, 그러나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역사

조치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생각함. 노숙인들은 “외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며, 특히 연세 있고 몸 안 좋고 노숙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함.

사례5. 54세 남성

거리노숙 생활을 한 지 11년 정도 된 남성임.

젊어서는 원양어선을 이십년 정도 탔음. 자신이 노숙하는 이유는 “복이 없어서”라고 여기나,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음.

주로 서울역을 중심으로 잠자리를 마련하는데, 무엇보다 퇴거방침 전의 서울역은 역사 밖으로 나가야 하는 시간이 한시간밖에 안 되어 추위를 막고, 오랜 시간 이용할 수 있어서였음. 생활의 주요 무대도 서울역임. 아침 6시에 서울역에 와서 밥 먹을 때 외에는 저녁까지 시간을 보냄. 퇴거 방침 전에는 더 오래 있었으나 지금은 역에서 자고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때문에 9시엔 일어나 나옴.

야간노숙 금지조치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후에 노숙인들을 쉼터에 집어넣으려 한다고 생각하는데, 쉼터에 대한 불신이 큼. 자신이 들어갔던 쉼터에서 3일 만에 나왔으며, “3년을 교육받아야 겨우 방 한 칸 받는” 쉼터를 탐탁지 않게 생각함.

가끔 일을 나가는 하지만, 퇴거 방침을 듣고 앞이 캄캄한 느낌이었음. 특히 찬바람이 불면 곧바로 기온이 내려가는 걸 잘 아는데, 갈 데가 없기 때문임.

퇴거 방침 이후에는 서울역사에서는 잠을 자지 않고, 쫓아내기 전에 미리 나가버리는 식으로 대처함. 서울역사를 관리하기 위해 사람들을 내보내는 시간을 두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구걸 등에서 유발된 민원 때문에 퇴거시킨다는 서울역 조치를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특히 구걸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겐 그에 맞는 조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함.

서울역의 야간노숙 금지 방침 이후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 불신이 큼. 쉼터는 만원이어서 노숙인들이 모두 들어가기엔 어렵고, 자활근로 같은 일자리도 이미 끝나서 형식적 대책에 불과하다 여김.

사례6. 73세 남성

72세의 노인으로 1개월 정도 노숙한 남성임.

집을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돌아다니다가... 서울역에 오게 되었는데, 군생활할 때 알던 사람을 만나서 서울역 주변에 있게 되었다 함.

주로 서울역 근처 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보고 밥을 먹고, 낮에는 돌아다니다가 밤 10경 되면 서울역으로 온다 함. 야간노숙 금지 방침 전에는 새벽 한시반쯤 나가서 조금 있다 다시 들어와 자곤 했는데, 금지 방침 이후엔 다른 곳에서 자고 아침에 화장실을 이용하러 오고 있음.

서울역 조치는 “우리 같이 어쩔 수 없이 노숙하는 사람”에겐 심하다고 여기나, 노숙자들이 너무 난잡하게 지내기 때문에 승객들도 더불어 힘들어진다는 생각도 함. 그러나 구걸을 하고 욕을 하는 노숙인들은 일부 너댓명인데 구걸을 이유로 퇴거를 얘기하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함. 어쨌든 본인은 야간노숙 금지 방침 이후엔 아예 서울역에 안 왔음. 요새는 날씨가 쌀렁해지면서 서울역의 조치에 더 야속한 마음이 듦. 돌아다니다 잠자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오는 곳이 서울역이기 때문에, 겨울엔 잠자리로 개방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음.

서울역 야간노숙 금지 방침 이후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아니고 임시방편이라 생각함. 자활근로는 청소나 하는 정도라 여기며, 쉽터는 냄새가 나서 잠을 못잘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함.

사례7. 49세 여성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중인 여성임.

20세쯤 결혼하였으나 곧 이혼하였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최근까지 연락을 하였으나 지금은 연락이 안 되고, 언니와도 연락이 끊긴지 한참 되었으며,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가족 연계가 거의 없음. 변장한 사람들이 나타나 이상한 기운을 내뿜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덮치며, 도어를 열고 훔쳐간다는지 하는 일로 힘들었다 하는데, 이혼이후 불안정한 생활과 오랜 노숙생활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망상적 사고가 혼합된 듯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 수급비를 받고 있으나, 돈이 떨어지거나 얻은 집(쪽방이나 고시원)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답답하면 나

와서 노숙을 하고 있음. 최근 몇 달간은 서울역사 앞에서 잠을 잤. 잠자리는 주로 사람들이 많은 역 주변이되, 구석의 안정적인 곳을 택함. 집을 떠나 불안정한 주거생활과 노숙을 병행하기 시작한 것은 3년이상 되었다 함. 처음 고속터미널에서 노숙을 시작하였으며, 이후에 대구역, 용산역,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을 하였음.

노숙생활을 오래 하여, 잠자리 마련, 세탁과 샤워, 식사 등의 노하우를 갖고 있음. 노숙중에는 여러 남자들이 숙박업소에 가자고 하고, 때론 밥을 사주거나 찜질방에 가도록 해주고 몸을 만지려고 했으며, 그래서 차라리 남자친구를 만들어 함께 지낸다 함. 실제 서울역 부근 연세빌딩 근처에 천막을 치고 남자친구와 동료 남성노숙인과 노숙생활을 하며 밥을 지어 먹기도 했음.

서울역사 내의 시설물은 주로 간단한 세면을 하는 정도로 이용함. 주변의 응급보호 서비스를 잘 알고 있는데, 부근의 인정복지관에서 샤워와 세탁을 함. 무료급식소를 이용한 적이 있지만, 독을 탄다고 생각하여 지금은 이용하지 않고 있음. 최근에는 여성을 위한 낮센터(일문화카페)에서 점심을 해결함.

서울역을 둘러싸고 “거지, 일반인노숙자, 시민들”이 있다고 구분하며, 노숙인들의 비위생적인 상태에 큰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노숙인서비스 기관이나 상담원들이 청결을 위한 서비스와 활동을 해 줘야 한다 생각함. 서울역 퇴거조치에 대해서 노숙인들의 비위생적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며, 구걸이나 헐박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퇴거 조치를 하는 서울역의 입장이 이해되기도 하나, 적어도 추운 겨울에는 역사를 개방하는 “온정”이 있기를 바라고 있음.

사례8. 58세 여성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임. 이모집에서 생활하던 중 집을 나와 노숙하고 있음. 이모님이 모든 일에서 자신을 간섭하고, 일을 시키면 제대로 못하다고 욕을 하며, 특히 나가라고 했기 때문임. 자신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실컷 마음대로 살고 싶었다 함.

잠자리는 서울역 부근(일명 구름다리)인데, 사람이 많지 않고 조용하며, 술먹은 남자들이 짹짹거리지 않아서 좋다고 함.

서울역 주변에서 지내는 이유는 서울역이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아서 재미있고, 또 교통중심지여서 지하철을 타고 여러 곳에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임. 화장실이 많아서 씻고 빨래하고 이용하기 편한 것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함.

서울역의 야간노숙 금지조치를 알고 있으며, 서울역으로부터 실제 퇴거조치를 당했던 경험은 없음. 서울역 안이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자면 된다고 수긍함. 무엇보다 서울역 대합실 안에서 술을 마신 남자 몇 명이 싸우고 술병을 던지는 것을 보고 무서웠던 경험이 있었음.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현재는 무조건 밖에 있는 것이 좋으며, 지내다 힘들면 상담원을 찾아갈 생각임.

3. 서울역 주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한 노숙생활의 양상

3-1. 주거권 실현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태 : 누가, 왜, 서울역 주변에 오는가?

- 사회복지서비스망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일차적으로 찾는 공간: 서비스와 정보가 집적된 곳으로 상징화된 공간

대형 역사는 예전부터 워낙 정보와 서비스가 집결되어 있는 곳이다. 때문에 사회로부터의 서비스나 정보취합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장이었다. 더우나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서울역이라는 곳은 잠잘 데가 없는 노숙인들이 모이는 곳이며, 또 이들을 위한 온갖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상징성을 획득한 공간이다. 이제 잠자리나 음식 같은 기초적인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은 당장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대형 역사를 찾는다. 지역사회에서 즉각적이고도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 없을 때, 대형 역사는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서비스공간인 것이다.

2천만원짜리 자기 집이 있으나 자주 물이 새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잠기기까지 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으로서, 수시로 돈을 달라며 못살게 구는 아들의 학대를 피해 잠깐씩 집을 나오곤 했다는 빈곤여성의 경우는(사례1), 사회복지서비스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어떠한 지식과 정보도 없는 사람들이 쉽게 대형 공공시설로서 ‘역’을 찾게 됨을 보여준다.

참여자 : 지난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우리 집이 물에 젖고 했는데, 어디 있을 데가 있어야지... 그리고 무서워... 아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서...

조사자 : 아드님이 왜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참여자 : 우리 할아버지가(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말려주고 그랬는데,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무서워서 방문도 잘 못열고... 할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조사자 : 아드님이 지금 그 데에 살고 계세요?

참여자 : 아니, 다른 데 사는데, 찾아와서 못살게 해요. 돈 달라고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뭐 있어야지...

조사자 : 그런데 집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도움 요청해보셨어요?

참여자 : 나도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한 열집 정도 있어요. 그런 거 안 알려주던데... 그래, 해 봐야겠네요(사례1).

위의 사례처럼, 주거생활의 위기가 왔을 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서울역을 대안공간으로 찾아오고 있다. 아래의 면접 내용들은 서울역사가 어떤 이유로 주거불안계층에게 대안으로 선택되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 집이 주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체하는 공간

집은 물리적인 면에서의 안전과 심리정서적인 면에서의 안정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터전으로서의 소속감, 또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터전 등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이다. 그런 면에서 잠자고 먹고 생활할 집이 없다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요소로부터 배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를 대체할 공간을 찾게 되는데, 대형 공공시설은 집을 대신하여 긴급한 욕구를 해결하기에 가장 근접한 시설로 떠올릴 수 있고, 특히 이동을 위한 거점으로서 역은 특별한 방문목적이나 이용목적에 대한 검증 없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면접 사례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왜 역사를 먼저 찾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서울역이 좀 편하긴 편해요. 왜 그런고 하니 용산역 같은 데는 세시간 반 정도를 못 들어가 거든요. ... 마지막 기차 들어오고 첫차 나갈 때까지 그때는 못 있게 해요. 그때 용산역에서도 여기 많이 왔어요. 추우니까(사례5).

더위와 추위가 분명해 밖에서 잠자기가 고통스러운 우리 나라 기온을 감안할 때, 대형역사는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곳이다. 특히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겨울철, 집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추위를 피하는 것이다. 면접에 참여한 노숙인들은 야간노숙금지 조치가 있기 전 서울역은 이용시간이 길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애용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똑같은 역사일지라도 잠깐이라도 더 이용시간이 긴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용산역에서 서울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진술은 노숙인들에게 ‘추위 피하기’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를 보여준다(사례5).

또한 서울역사는 밥을 굶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찾는 곳이다. 서울역 주변에서 무료급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익히 알려진 이야기이므로, 주거가 없고 따라서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급식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서울역을 찾는다. 면접에 참여한 41세의 남성(사례4) 역시 서울역에 처음 온 것이 밥을 먹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한편, 추위를 피하고, 잠자고, 먹는 데 접근하는 것 말고도 역사는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한다.

조사자 : 계속 여기 계신 거예요? 뭐하고 계셨어요?

참여자 : 그런 거 왜 물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있고,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잠깐 잠도 잘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잖아. 거기서 씻을 수도 있고요(조사자 주: 짐은 배낭과 비닐쇼핑백 2개 정도. 차림이 깨끗하심.) 그리고 저기서 조금 자고, 쉬기도 했어요.(조사자 주: 장애인 화장실 가리킴.) (사례1)

짐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 큰 숙제인 노숙인에게 캐비닛 같은 짐을 보관할 시설이 있는 역사 주변은 매우 매력적이다. 자신의 몸이 지닌 것이 전 재산인 노숙인에게 짐보따리는 생존필수품인데, 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많은 노숙인들은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진다.

제일 큰 역이고, 계단 광장... 여러 가지로 생활하기에 좋고, 음식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마트 옆 캐비닛 사용 때문에, (아~ 캐비닛에 물건 보관할 수 있으니까...) 옷가지 같은 거 둘 수 있어서 좋아요. 다른 덴 그게 없어(사례7).

- 고립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공간

역이 “사람들이 많은 곳”(사례4)이라는 점은 역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자, 노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역을 찾게 되는 의미있는 조건이다. 역설적이지만 공공역사는 누군가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안전을 담보받는 곳이다. 즉, 집이 아닌 곳에서 잠자기 때문에 늘상 누군가의 시선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공중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는 곳에 있어 고립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제공한다. 노숙인들이 공안요원이나 시민들로부터 폭행을 경험했다는 과거 보고를 감안하면(정원오 외 2005), 이러한 기대는 사실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이라는 공공시설을 노숙장소로 선택할 때 고립에 대한 공포를 줄게 하고 그만큼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곳이 역이라는 것이다.

조사자 : 그런데 할머니, 인천에 안계시고 여기 서울역까지 오셨어요? 왜요?

참여자 : 인천은 이렇게 밝지가 않아. 12시만 되면 불이 다 꺼져서... 가다가 가다가 서울역에 왔는데, 여기는 경찰처럼 생긴 사람들도 있고, 직원도 있고 사람들도 많아서 무섭지가 않아요. 지난 겨울에도 여기에 있었어(사례1).

사례1의 경우는 서울역사가 ‘밝고’, ‘경찰처럼 생긴 사람들(공안요원)과 직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있는 곳’이며 이러한 조건을 통해 “무섭지” 않은 곳이라고 판단함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많은 대형 역사로서의 서울역은 워낙 규모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오갈 수 있어서 그만큼 노숙 토박이들로부터 쫓겨나는 텃세를 덜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 틈에 있으면 이곳은 내 영역이라는 사고에서 출발한 텃세가 있을지라도 또다른 장소나 사람들 틈으로 피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영등포 가잖아요? 그러면 내 쫓겨요. 내쫓아요, ...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니까 그거는 없고 자유롭고 그러니까(사례4).

즉 대형역사라는 공공시설, 특히 서울역이라는 공공시설은 추위를 피하고, 밥 먹을 수 있으며, 넓어서 답답하지 않고, 사람이 많아서 얘기할 수 있으며, 그

래서 시간 잘 가는 곳(사례4)이다.

서울역에 처음 온 거는 밥 먹으러 왔었는데 사람도 많이 오가고 넓잖아요. 빵 툇린 거 같아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뭔가 다른데서 생활하는 거 보다 마음이 후련해지는 느낌이랄까? 답답하지 않고, 사람들이 또 많이 왕래하다보니깐 나도 뭔가 하는 거 같고, 가만있어도 시간이 잘 가고 그러니까, 얘기할 사람도 많고(사례4).

서울역에 모든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라서 이곳을 오게 되었어요(사례2).

서울역에서 있을 때는 우리가 부담없이 나오니까, 사람 많은 곳에 모여야 되니까...(사례3).

-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그 속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노숙생활의 장소를 선택할 때 중요하다. 설혹 홀홀단신으로 노숙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이는 엄혹한 상황일 때일지라도 인간의 본질적 욕구인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작동함을 보여준다.

사례6의 노숙인은 처음 서울역에 왔을 때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서 눌러 앉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돌아다니다보니깐...서울역에 오니까 내가 군생활 할 때 알던 사람이 여기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그 사람이 여기서 지낸다고 하더라고...그래서 나도 여기로 왔지(사례6).

특정의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노숙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익숙한 곳이어서 서울역을 찾게 된다. 사례3은 서울역이 “오래 산 곳이고”, 그래서 “고향”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역에서 오래 살았죠. 고향이나 마찬가지로요. 이십년 했어요(사례3).

노숙인들이 노숙생활을 할 주요 근거지를 선택할 때에는 안정적 주거생활을

대체할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게 됨과 동시에, 이를 연계하고 또 이 과정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를 고려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노숙인에게 중요한 지지의 자원이 된다. 사례4는 서울역에서 만난 상담소의 상담원과 정을 나누게 되면서 서울역에 머물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서울역 상담소 선생님들이 참 잘해주세요. 고마운 걸 느껴요. 항상. 제가 수원역에서 생활하다가 영등포역에서 생활하다 서울역에 오게 됐는데 다른 상담소나 OOOO 센터 선생님들 보면은 그냥 월급쟁이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데 그리고 아니면 인상도 약간 쓸 정도로.. 그런데 여기 서울역 상담소 선생님들은 옆에서도 그냥 놀렐만큼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정이 가더라구요. 우리 거리노숙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한 번 사랑 받으면 거기 기대고 싶거든요. 밖에서 자도 편하고 근처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서울역 상담소가 선생님들이 잘 해주니까(사례4).

이상의 결과는, 노숙 위기에 놓인 주거빈곤 계층이 제도적인 안전망 내에서 주거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역을 찾는 노숙인들은 주거를 잃었거나 잃을 위기에 있을 때 지역사회에서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역은 이미 사회복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집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상징화된 공간이다. 노숙인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 또 대형 공공시설이 갖추고 있는 편리성을 활용하여 집을 대체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되리라는 기대, 고립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동료들이나 사회복지 실천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서울역을 찾고 있었다.

3-2. 서울역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서울역은 노숙인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을까. 답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활공간, 생존공간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서울역사는 집을 대신한다.

- 생존을 위한 공간

서울역사 안이나 바깥에서 잠자고, 주변에서 급식서비스를 이용하고, 근처의

진료소에서 약을 타고, 그리고 역사내 화장실에서 불일을 보거나 세면을 하는 생활, 이는 그야말로 서울역이라는 커다란 공중의 공간이 다른 누군가의 생존 공간이 됨을 보여준다.

잠은 서울역 안에서 자다가 쫓아내면(나갈 시간이면)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잠자죠. 역사내 화장실을 이용하고 세면도 해요. 식사는 역사 주변 급식소에서 먹거나, 단체들이 올 때 얻어먹구요. 근처 진료소를 이용해서 당뇨약을 타요.(사례3).

서울역 처음 와서 OO교회라는 곳에서 새벽예배를 보고 밥을 먹어. 낮에는 다른 곳에 돌아다니고 밤에 10시경에 여기로 와. 한시 반이면 퇴거시키니까 그 때 나가면 여기 잘 안 오지 그리고 아침에 서울역 화장실 이용하러 와. 예전에는 두시 반에 열어주니까 다시 와서 가고 했는데 이제는 네 시 넘어서 화장실 가려고 와보면 여기 안 열려 있어...(사례6).

더구나 따뜻한 물까지 나오는 서울역은 세면과 간단한 세탁에 더없이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조사자 : 그럼 서울역사 안에서 TV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없나요?

참여자 : 역사 안은 레이저를 쏘대서 머리 아파요. 드라마는 집중이 안 되고, 뉴스 보거나 음악은 듣지만. 대체로 TV 안 봐요. 화장실이나 들락거리지 역사 안 들어가요.

조사자 : 그럼 씻는 건 어떻게 하나요?

참여자 : 카페(조사자 주: '일문화카페'의 약어. 여성노숙인을 위한 주간센터로 민간기관에서 운영중임.)에서 씻고, 인정복지관에서 수요일에 씻고, 9시반 이후, 매일 샤워세탁해요. (그럼 역사 안에서 씻지는 않는군요?) 역사내 화장실에서 손발은 씻지, 매일, 따뜻한 물이 나와요(사례7).

어떤 경우엔 서울역 주변 빌딩 앞에 터를 잡고 취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7의 경우엔 알고 지내는 몇몇의 남성과 아예 작은 텐트를 치고,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가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급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아예 야생의 생활을 선택한 생활모습은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혹은 최소한의 주거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빈곤한 사람들이 스스로 마련한 응급 대체 주거의 엄혹함과 절박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식사는 연세빌딩 앞에서. 도르레 묶어놨는데...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서 먹을 수 없어. 누룽지만 먹어야 해. 고통스러워요. 대체로 1끼 먹고 탄산음료나 우유를 사 먹어요. 일문화카페 이용후에는 2끼 먹는 거고. 라면, 밥, 우유 사먹고요. (그럼 한 끼는 직접 해 드신다는 건가요?) 응 연세빌딩 앞에서. (실내 급식소도 있는데 안 가보셨나요?) 실내에서 밥 주는데 독을 넣어서.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가는데 독을 넣어서...(사례7).

- 최소한의 여가생활 공간

서울역사는 또한 각종 편의시설과 소비시설을 통해 최소한의 여가생활을 제공하는 곳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면접에 참여한 노숙인들은 서울역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 답하고 있다. 시간을 보내는 문제는 노숙생활에서 주요한 이슈이다. 정규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숙인들의 경우에, 하루의 생활은 굶어죽지 않기 위해 먹을 곳을 찾아다니는 생활이며, 기타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야 하는 생활이다. 특별한 여가생활의 여유와 자원을 확보하기 힘든 노숙생활에서 그나마 TV도 보고, 신문도 읽고, 많은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은 눈을 호강시키기에 그만인 오락거리가 되고 있다.

서울역에서 24시간 주변에서 맴돌고 있어요. 무료하게 앉아있기도 서 있기도 하면서 있어요. 굳이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낼 곳도 없구요.

오새는 낮에도 많이 오죠. 밤에는 뭐 저기에 가고... 낮에는 그냥 시간 보낼려고 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갔다 시간 보내는 거예요. 대합실에도 갔다가 여기 밖에도 갔다가 그냥...(사례3)

(여섯시에 서울역 와서 몇시까지 있어요?) 밥 먹을 때만 나가죠. (밤에는 몇시까지 있나?) 나는 보통 여덟시에서 아홉시 사이에 나와요. ...(사례6)

서울역을 중심으로 구경거리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구경도 재미있고 또 볼 것도 많고 서울역에서 지하철 타고 아무 곳이나 왔다 갔다 하고 기차도 타고 다니고 남산에도 올라가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마음대로 다녀서 좋아요. 서울역에 있으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어 좋아요. 남자친구도 두서너명 있어요(사례8).

말하자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에서 중요한 노숙인들에게 서울역사

라는 곳은 “구경거리가 많은 곳”이다.

- 열악한 잠자리

그렇다고 해서 서울역의 생활이 보통 사람들의 주거생활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대안공간이 되기는 힘들다. 노숙인들에게 서울역은 겨우 틈새잠을 자는 힘든 곳이다. 면접에 참여한 한 여성노숙인은 서울역에서 잠자리를 마련할 때, 계속 체크를 하는 역사 관계자들 때문에 밤 11시나 되어야 박스를 덮고 누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역사 주변에서 자려니 당연히 숙면을 꿈꿀 수 없다. “폭 못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크다”라고 말하는 사례7 여성의 경험은 대부분의 노숙인이 경험하는 일이다.

조사자 : 서울역 어디에서 있으세요?

참여자 : 전 돌담이랑 마트 앞이요. (KTX역사 앞 왼쪽 돌담과 롯데마트 입구 오른쪽 화단을 설명함.) (아~ 거기가 좋은가요?) 낮에는 누울 수 없어요. SOS가 체크해서, 체크하더라구. 다 누우면 그것도 보기 안 좋겠네요.

서울역사 입구나 돌담에서 자요. (KTX입구 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있는 위치를 표시해 주며) 백화점 앞 알아요? (어떻게 주무시는데요?) 박스 덮고, 11시 되어야 깔고요. (잠 자기는 어떤가요?) 폭 못자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커요. 계속 누워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고 머리가 아프고, 매맞은 것처럼. 아침 6시까지 는 그냥 뒤요. 사람마다 달라. 30분전 일으키기도 해요(사례7).

- 폭력, 성폭력의 위험이 상존하는 공간

특히 여성에게 노숙이란 일상적인 폭력과 성폭력을 견뎌내야 하는 곳이다. 사례7 여성은 너무나 추웠던 노숙 잠자리를 견디고는 온몸이 떨리다가 쓰러질 지경에 처했고, 이럴 때 동료 남성노숙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남녀 노숙인간의 동료애는 여성의 경우 대신 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위험한 거래가 된다. 그러나 많은 노숙여성들이 노숙을 피하기 위해 남성과 성을 거래하며, 혹은 성폭력을 피하기 위해 특정 남성과 친구가 되고 자신의 보호자가 되도록 한다(서정화 2005). 이번 면접에 참여한 여성 사례7과 사례

8의 경우에도 끊임없이 “찹적대는” 남성노숙인들의 위협을 피해 잠자리를 옮기거나 남자친구를 만들어야 했음을 보여준다.

조사자 :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자야 하는데 신경쓰이지 않으세요?

참여자 : 밖에 생활인데... 어울리고, 생활하고, 대화도 하고, 얻어야 먹고 하는데.

조사자 : 그럼 그곳에서 만난 분들이 도와주고 그랬나요?

참여자 : 돈이 없을 때. 너무 추워서 찻집방에라도 가야겠더라고요. 춥고 배고파서 온몸이 떨리니까, 온몸이 엉망이었어요. 밤에 안 자고 버틴 적도 있고. 앞에 와서 누가 밥 사주고 도와주겠다 해서 안 갈 수가 없어서, 사랑하겠다 해도 어쩔수가 없어요. 덮쳐도. 도와주겠다 해서. 숙박업소 가자, 사랑하면 못간다, 이렇게 못을 박고 가요. 아저씨들이 못 만져.

조사자 : 도와주고 했는데 못 만지게 하면 화내지 않나요?

참여자 : 맞아,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웠어요, 때리겠다는 시늉도 하고. 그래서 내가 000만 따라가잖아. (누군데요?) 남자친구. 친구하자 했어요, 계속 밥을 사줘서.

조사자 : 그렇게 숙박업소 같이 가자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나요?

참여자 : 예, 그래도 나는 못 만지게 했어요. 대체적으로는 못 만졌었는데. ... 숟가락, 옷, 다 가져가, 돈 가져가, 너무 화가 나요. 아름다운가게에서 구입한 거라 카페(일문 화카페)에서 가져온 옷도 가져가는데, 사물함열쇠 키까지 가져가니, 훔쳐가니. 거지들이, 뱀비를 텐트 안에 뒀는데, 조리기구 산 거까지 다 몇 번이나 가져갔어요. (텐트가 있나요? 그걸 어디에 두셨어요?) 연세빌딩 앞에 둔 적도 있고, 서울역 뒤 쪽 출구에 뒀는데. (텐트를 사서 치셨다는 건가요?) 텐트는 아는 아저씨가 샀지만, 내 돈 빌려 샀으니 내 꺼나 마찬가지로. 자꾸 내 거를 플라스틱해서 먹어야 한다 해요. 내 돈을 플라스틱해서. 너무 화가 나면 불쾌지수 높고 내 몸을 내가 때릴 것 같더라고요(사례7).

요즘에는 서울역 구름다리 계단 위로 올라가서 잠을 자요. 사람 많은 곳에서는 남자들이 술을 먹고 찻집거리고 귀찮게 하고 해서 오히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조용한 곳이 구름다리에요.

서울역에는 화장실도 많고 해서 씻고 빨래하고 이용하기가 편해요.

하루는 남자가 아파트도 있고 자가용도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거짓말이었고 하교방집이었어요. 그곳에서 강제로 성행위를 하려고 해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했어요. 내 소리를 듣고 마침 다른 남자가 와서 살아났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 했어요. 다음부터는 다시는 아무도 안 따라가요(사례8).

- 여성취약계층이 적체되는 곳

이렇듯 여성에게 더욱 위험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역이 갖은 여러 편의성이 정신장애가 있거나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묶어두고 있기도 하다. 사례7은 정신질환적 증세를 보이는 여성으로 혼잣말을 하는 것에 대해 이웃주민들이 “소리가 난다”고 민원을 제기해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던 여성이다. 정신지체3급의 여성(사례8)의 경우에도 계속 야단을 치는 이모가 싫다며 집을 나와 오게 된 곳이 서울역이다. 쫓겨나서 나올 수 있는 곳도 여성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곳은 아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서울역을 피난처 혹은 탈출구로 생각하게 된다. 여성을 위한 쉼터의 부족에 계속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신장애, 지적장애 등을 가진 여성은 결국 거리라는 곳에 적체될 수밖에 없다.

참여자 : 서울역 이외에도 있었고 온지 2년 넘었어요. 온 이유? 사람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해서, 근데 그건 말하고 싶지 않는데...사람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어떤 옳지 않은 행동인가요?) 그건 그만하지. (말씀하시기 힘든가요?) 사람들이 자꾸 침입해서,

조사자 : 집에서는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겨울에 노숙하려면 되게 힘든데 그런데도 집에서 나온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서일 것 같아요.

참여자 : 옳지 않은 행동거지 때문에, 소리난다 하니까, 옳지 않아.
... 여잔데, 50살인데, 남들처럼 안전한 주거에서, 음식도 만들고, 음악도 듣고, 그런 재미에 살아야지. 어떻게 여자가 난장깡고 살겠어요. 오고가는 사람도 있는데 (사례7).

2010년 10월 28일 000 원장님이 서울역에서 만나 쉼터에 입소하자 했어요. 근데 주민등록번호 몰라서 입소 못했어요. 원장님과 서울역지구대에 가서 신원을 확인해 본 결과 이모가 6개월 전에 가출신고를 해 놓은 상태였어요. 원장님이 연락해 이모가 서울역에 와서 데려가겠다 했지만, 난 집에는 절대로 안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이OO 선생님이 밖에서 잠을 잘 수 없다고 마더하우스에서 자라 해서 하루 자고 여성쉼터에 들어가서 하룻밤 잤는데, 있기 싫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 가까이 거리에서 있어요. 이모가 아주 힘들게 했어요. 모든 일에 나를 간섭하고 일을 시키면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욕하고 특하면 나가라고 했어요. 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실컷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서울역에 오니 간섭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무나 좋아요(사례8).

이상의 결과는 현재 서울역이 물질적 자원 및 사회적지지 자원을 상실하고 생존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역사를 비롯해 서울역 주변에서 숙박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용형태는 다양하고 광범위했다. 밥먹고 자고 씻는 생활은 물론, TV를 보거나 쇼핑물의 상품들을 구경하는 일,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간혹은 술을 마시는 일, 또는 그저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일 같은 활동으로 여가를 보낸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함을 덜어낼 수 있는 소소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역은 공중의 공간이기도 하므로 서울역에서의 잠자리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여성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서울역은 폭력과 성폭력의 위험을 인내해야 하는 곳이다.

3-3. 노숙생활의 애로사항과 욕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리노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노숙생활이 주거가 없는 노숙인들의 주거권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생존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환경은 아니다. 노숙인들의 노숙생활이란 인간의 기본적 욕구조차 충족시키기 힘든 극단적 상황이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아 추위를 막는 것조차 힘들었다는 면접참여자 여성사례(사례7)는 대부분의 거리노숙인의 현실에 해당한다.

참여자 : 너무 돈이 없고 추위 때문에 힘든 게 많았어요.

조사자 :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요?

참여자 : 돈, 옷, 찜질방, 숙박업소, 그런 거죠.(사례7)

면접참여자들이 말하는 노숙생활의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이 인간으로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내용들이다.

- 추위를 막고 쉴 수 있는 곳,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수급권 신청

앉아서 쉴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 어제도 나가 있느라고 몸이 좀 아팠어요. 날이 추워 지잖아... 화장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밝으니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해줬으면 좋겠어. 아까 아가씨가 말했던 수급신청이 될라나? 나같은 사람도?(사례1)

- 식사문제, 금전문제, 약 구입...

어려운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특히 식사 문제가 좀 그렇다. 철도경찰이 쳐다보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무시한다. 개인적으론 금전적인 문제가 에러가 있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약 사먹게.(사례2)

- 일자리 대책

뭐, 없으면 힘든 거야. ... (지원 받고 싶은 거) 옛날 시절을 생각하면 그렇지만 지금도 노숙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세게 못해요. 일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세게 못해요. 처음부터 키워나가야 해요. 어린애들 키우듯이 키워 나가야 해요. 안 그러면 못해요. 일을 시켜서 자꾸 용기를 키워 줘야 해요(사례3).

- 짐 보관 어려움

내일도 일 나갈려고, 근데 이것-짐 가방-이 지금 밤 열두시 넘어서 넣어야지 그 다음날 열한 시 조금 넘어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아침?) 오후 열한 시. 열두시 전에 집어넣으면 이틀 요금을 넣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하루 요금만 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품 보관함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워낙 도둑이 많아가지고, 도둑 너무 많아요. 없는 놈이 없는 놈 것을 훔쳐가지고..

정리하면, 서울역은 주거권을 실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를 대체하여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는 대체공간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이용 공간이기도하다는 사실에서 공중에 노출된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미 온갖 어려움과 갈등, 긴장을 내포한다. 생존과 직결된 짐을 잃지 않고 보관해야 하는 스트레스,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스트레스, 아플 때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 적어도 추위는 피하고 싶은 욕구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획득하여 제도적 안전망으로 들어가고 싶은 기대 등은 노숙생활 내내 지속되는 고충의 지점들

이다. 즉, 서울역의 노숙은 다른 방식으로 주거권을 실현할 자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열악함을 대변한다.

3-4. 소결

이렇듯 서울역사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어떠한 자원도,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빈곤 취약계층이 주거생활을 대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며, 노숙인에 대한 긴급한 주거대안이 완벽히 마련되지 못한 현재까지의 사회대책 하에서는 생명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서울역사의 노숙인 존재는 우리 사회에 주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서울역 야간노숙 금지 조치 후의 풍경과 이슈들

4-1. 야간노숙 금지조치에 대한 노숙인의 대응

야간노숙 금지조치 이후 노숙인들의 퇴거 경험은 노숙인들이 생존 및 생활공간으로부터 어떻게 내몰리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번 질적 면접사례가 짧은 기간에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1년 8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수행되었던 ‘서울역 야간노숙금지가 거리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시 주관식 답변에 응답한 내용을 참조하면, 노숙인에 대한 퇴거 조치의 일말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서울역 퇴거조치 발표 이후 퇴거경험]의 내용은 서울역 공간요원이나 특수사복경찰 등이 서울역사 내에서 노숙인을 매우 적극적으로 내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서울역사가 야간노숙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밤 11시 이후 퇴거시키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낮시간 이용도 제지당하고 있다는 점이다.(사례 : 낮에 TV를 보거나 화장실에서 씻을 때(냄새가 날까봐) 나가라고 해서 1시간 이상 나가 있어야 한 적이 있다.) 이는 야간노숙 금지조치가 서울역사 청소 같은 실무적 차원의 조치가 아니고, 실제 노숙인을 공공역사

사용에서 배제하는 금지조항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서울역이 공공역사로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이는 기본적인 자유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퇴거 조치가 ‘노숙인’을 겨냥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역 야간노숙 금지조치 이후 노숙인들은 서울역을 다른 시민들과 다르없이 “가만히”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되어 퇴거되어야 했음을 보고 한다(사례 : 내가 노숙인임을 알고 있었다). 퇴거의 방식도 매우 거칠어서 “발로 툭툭 차고”, “손끝림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퇴거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역무원이나 공인들의 말투나 태도 역시 매우 고압적이어서 명령조로 고지하거나 혹은 “돈을 내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곳이니 나가달라”는 식의 모멸적 언행을 경험하였음을 드러낸다.

[서울역 퇴거조치 발표 이후 퇴거경험]

- 10일전 오후 3시 경 TV보고 있는데 철도경찰이 안된 다며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나를 포함한 노숙 동료들 다 같이 쫓겨났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있었는데도 내가 노숙인인 것을 알고 있었다.
- 11시 45분쯤 특사경이 서울역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12시에는 시간 안에 안 나가면 쫓아낸다고 이야기했다. 특사경이 노숙인 비슷하게 생긴 사람에게겐 위협적으로 말을 한다. 당시 갈 곳 없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나가라고 하니 막막했다.
- 11시반쯤 청소한다고, 낮에 화장실에서.
- 8월 27일 단속한다고 하면서 공인들이 강제로 나가라고 했고 기분이 더러웠다.
- 8월말경 밤에 특사경이 쫓아냈다. 답답하고 억울했다.
- 공인들이 낮에 그냥 앉아서 TV 보고 있는데 오래된 사람이니까 얼굴을 알고 그냥 나가라고 했다. 어떨 때는 발로 툭툭 차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서러웠다. 나도 세금내고 있고 예전엔 더 많이 냈는데... 서울역은 그렇게 지은 게 아닌가...
- 공안이 대합실에서 새벽에 쫓아냈다.
- 낮에 공안 등 3명의 사람들이 나가라고 했다. 억울했다.
- 낮에 공안으로부터 손으로 끝림을 당했다. 막막했다.
- 낮에 TV를 보거나 화장실에서 씻을 때(냄새가 날까봐) 나가라고 해서 1시간 이상 나가 있어야 한 적이 있다. 서러웠다. 깨끗하게 있으려고 화장실을 이용한 건데...

[서울역 퇴거조치 발표 이후 퇴거경험]

- 밤 10시경 공익근무요원이 빨리 나가라고 했다. 답답하다.
- 밤 12시30분경 서울역 철도 용역에게 제지당했다.
- 밤에 공안직원이 나가라고 했다.
- 새벽 1시반 청소 이유로 추방당했다.
- 새벽 1시반경 공안이 나가라고 지시했다. 차 안 타려면 나가라고 했다. 화가 난다. 왜 나한테만 그러는지.
- 새벽 2시경 역근무경찰로부터 구태(발로참)를 당했다. 억울했다.
- 새벽에 공익들이 툭툭 건드리면서 나가라고 해서 살짝 기분이 나빴다.
- 새벽에 역무원이 나가라고 해서 그저 그랬다.
- 술마시고 노숙하다 직원으로부터 퇴거되었다.
- 야간 10시경 역무원으로부터 퇴거되었다.
- 역내부에서 낮에 공안들이 5~6회 정도 다른데 밖에 나가있으라고 했다.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나가라고 했다.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으로 기분 나빴다.
- 역무원이 4시30분까지 청소한다고 나가라고 했다. 내쫓으니까 기분도 나쁘고 씁쓸했다. 노숙하기도 어려워진다는 생각과 절박한 마음이 들었다.
- 오전 9~10시경 공안으로부터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다. 자존심 상했다.
- 인권을 유린당한다는 느낌이였다.
- 저녁에 역무원, 공안직원들이 물을 끼얹으면서 나가라고 했다. 인간 취급을 안한다는 생각이 들고 매우 억울했다.
- 주간에 공안들이 “돈을 내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곳이니 나가달라”고 했다.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험하게 내쫓고 있었다.
- 주간에 공안들이 바람 쐬고 와라 하면서 앉아만 있는데도 손님이 아닌데 있느냐며 핀잔을 주었다. 항의했지만...
- 주간에 지저분하다고 공안이 나가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없으니까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직원이 나가라고 했다.

이처럼 주거권 실현이 어려운 노숙인들에게 대체 생활공간이며, 응급잠자리로 활용되어 온 서울역사에서 노숙인들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공고 이후, 서울역사는 실제 노숙인들에게 예전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역사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고 있다. 역사 내에서 노숙인들의 벤치 이용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훨씬 심해졌음이 관찰된다. 낮에 역사 안 대합실 사용과 관련해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명백한 차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가라고 하죠. 안에서 못 자게 하니까. 낮에도 웬만하면 다 나가라고 해요. (쫓겨나진 않았지만 안에서 못 자게 하니까 나간다?) 그렇죠. 스스로 나가죠, 아이 그거 뭐...(사례3).

이에 대한 노숙인들의 일차적 대응은 순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노숙인들이 서울역에서의 퇴거방침에 “나가라니까”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어도

나와야 한다.

- 순응(퇴거조치에 따름)

70세가 넘는 노인여성 면접참여자는 서울역에서 나가라고 하여 어디에 갈지 안내도 받지 못한 채 나와야 했던 경험을 말한다(사례1). 다른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참여자는 “밖에서 쫓그리고 있어야 할” 걱정과 “무섭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거리노숙생활의 경험이 짧은 노숙인, 특히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은 안전한 주거확보에 대한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로 퇴거방침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참여자 : 그래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밖으로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긴 했어요.

조사자 : 어디 가 있으라고 안내는 받으셨어요?

참여자 : 아니... 그냥 나가라고 해서... 오늘도 밖에서 쫓그리고 있어야 하나 보네... 무서운데... 근데 인자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례1)

면접참여자(사례7) 역시 서울역의 조치에 그대로 따랐다고 설명한다.

단속한다는 건 말로만 들었는데 한번 듣고 모르는 상태에서 깔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체크하더라구요. 누우면 안된다! 그래서 힘들어 나왔어요(사례7).

퇴거 방침 이후 또다른 참여자(사례4, 5)들은 아예 들어가지 않거나 쫓아내기 전에 미리 나와버리고 있다고 말한다.

안 들어가고, 쫓아내기 전에 나와요.(사례4)

요 근래는, 솔직히 말해서 이, 쫓아내기 전에 먼저 미리 나가버리는 거예요(사례5).

퇴거방침에 대한 공지를 듣지 못했다는 사례2의 경우에도, 퇴거방침 이후 서울역 측으로부터 나가라는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퇴거방침이 내려진 이상 서울역사 이용이 힘들어질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런 말(주: 나가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지만, 서울역 강제퇴거 방침 자체가 이미 퇴거조치를 당한 것 아닌가요(사례2).

금지조치 이후? 아예 못들어가요. 들어갈 생각도 안 나. ... 각자 알아서 자는 듯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하도 갔는지, 화장실 갔는지...(사례7)

- 요약

이러한 방침에 대한 노숙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물론 서울역사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노숙인의 목소리도 있다. 사례5는 청소시간이 있을 것이므로 예전처럼 1시간 정도 내보내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 정도라면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한 시간 정도 쫓아내는 건 청소부들이 청소도 해야 하고, 그건 인정을 해 줘요(사례5).

다른 측면에서 서울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노숙을 하는 양상이 모두 같지 않고, 일부 노숙인의 경우 역사 내의 의자에서 잠을 자거나 하므로 기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대합실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노숙인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숙인들 내에서 노숙경험을 통해 노숙인들을 구별짓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김진미&서정화 2006). 이번 실태조사 면접참여자들도 이러한 구분법을 적용하는데, 사례6 참여자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노숙하는 사람”과 “아예 전문적으로 노숙하는 사람”으로 노숙인을 구별하면서, 서울역사 내에서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은 일부의 행동임을 강변한다. 그러므로 노숙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내려 승객 입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서울역의 입장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모든 노숙인을 서울역사 이용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고, 때문에 많은 노숙인들에게 욕을 먹을 조치라는 것이다.

서울역도 조금 이해는 해. 그런데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천상 우리 같이 어쩔 수 없이 노숙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전문적으로 노숙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노숙자뿐 아니라 아침 차 기다리는 승객도 고역이더라고. 그리고 안 좋은 부분은 여기 노숙자들이 들으면 날 욕

하겠지만 너무 난잡하게 해. 그런 거 보면 내가 봐도...다섯 시 되면 첫차가 나가니까 비워 줘야 될 것 아니야. 여름에는 들어가서 자래도 안 들어가서 자는데 비오고 바람 불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는 두시 반에 문 열면 들어가서 자는데 잠깐 두 시간 자는 거거든 그게. 아침 네 시 반 되면 깨워 내보내니까. 당연한 거거든 승객들이 들어오니까. 너무 하다는 사람도 있고 무감각한 사람도 있는데 밤에 새벽차타는 사람까지 쫓는 건 좀 심하더라고. 승객들이 쫓겨나는 게 노숙자들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은 해봤는데 혼자 하는 생각이 지. 퇴거에 대해서 나쁘다는 사람이 더 많지...(사례6)

특히나 이번 서울역의 조치 이유가 구걸이나 협박 같은 노숙인의 행동에서 발생하는 일반시민의 민원해결 차원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무엇보다 큰 이유는 노숙인들의 구걸과 협박은 모든 노숙인에게 해당되는 경험이지 아니라는 것이다. 사례6의 경우에도 구걸과 같은 노숙인의 행동은 노숙인 전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더구나 협박하는 모습은 본적이 없다고 한다. “일부 너댓 명의” 행동을 갖고 그러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그런 면은 있어. 구걸을 하고 안주면 욕하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일부 너댓 명이 해. 전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민원 때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핑계라고 봐. 피해를 보는 승객들은 항의를 하겠지...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도 욕을 하는 거야(사례6).

조사자 : 금지조치의 이유가 서울역 이용하는 노숙인들이 구걸도 하고 돈 달라면서 위협도 하고 그래서라는데 그런 걸 본 적 있나요?

참여자 : 서울역 거기 노숙자들이 해 봤자 몇백원 달라기도 하는데 대체로 안 줘요. 나도 없을 때 달랄 수 있지만, 사회인들은 대체로 안 줘요.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서울역, 거지도, 일반인 노숙자도, 회사원도. 협박은 본적 없어요(사례7).

이상의 결과들은, 서울역의 퇴거조치 이후 많은 노숙인들이 이전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퇴거조치를 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발로 툭툭 차거나 노숙인이라는 사실로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말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은 물론, 퇴거방침의 시간과는 무관한 때에도 이용을 제지당하는 등 일반시민과 비교할 때 너무나 명백한 차별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노숙인들은 어쩔 수 없어서 따르는 순응적 형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불만은 매우 크다.

4-2. 노숙인 생각하는 대책 : 좋은 대책을 원함.

서울역이 퇴거사유의 이유로 드는 구걸 등의 노숙인행동에 대해 노숙인들은 이것이 모두의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구걸 등의 사유는 단지 서울역사의 “평계”이고 노숙인 퇴거는 “나쁜 대책”일 뿐이다.

사례4의 남성참여자는 퇴거는 나쁜 방법이고, 침낭과 바닥에 까는 것을 제공하는 다른 역사의 방법을 찾으면 스스로 규율을 만들고 지킬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5의 참여자는 역사에서 참을 청하는 노숙인들도 다음날 일 가려하는 사람과 “오늘하고 똑같이 보내려는” 사람으로 구분되고, 일 가려하는 사람은 잠 잘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최소한의 질서를 위한 자율적 기준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나쁜 방법 밖에 없을까요? 수원역에서는 24시간 개방을 해요. 그리고 역무원이랑 경찰이랑 다니면서 침낭이랑 바닥에 까는 것도 줍니다.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 노숙인들도 품어주면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서 지켜요.(사례4).

솔직히 말해서 누워서 좀 자고 싶은데 혼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누가 누워서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깨워요, 우리들이 깨운 다구요.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이 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가 가니까. ... 여기서 자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날 일 갈려구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날도 오늘하고 똑같이 보낼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종류가 있구요. 우리는 절대로 일 갈려구 하는 사람은 안 건드리거든요. 누가 여기서 그, 잠 못자게 하면은 우리가 혼내줘요(사례5).

노숙인이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다르다. 서울역사든 혹은 다른 곳이건 최소한 “없는 사람들이 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을 떠나고 노숙을 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맘을 잡고” “건강해져서” “힘이 나게끔” 해 주는 게(사례3) 바람직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역이 잘 되기 위해서 내쫓는 데 그건 다 좋아요. 그런데 역에서 해 주던가 다른데서 해 주던간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이라도 잘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나쁜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나중에 모든 걸 회복을 하게 되면은, 방이나 이런 걸 주니까 회복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새로 맘을 잡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일단은 내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해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숙하는 사람이

무조건하고 노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 까닭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안 관계도 있을 뿐더러 사회 나와서 살다가 잘 못한 게 있을 것이고, 사고, 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잘못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노숙하는 거예요. 몸이 안 좋거나,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술 먹고 그러는데 사람들 맘을 잡아 줘야죠. 일단은 건강해야지만, 힘이 나아지만 뭘 일을 하니까 뭘 먹어가면서 힘을 키우게 만들어야 해요(사례3).

또 노숙인을 쫓아낼 생각을 하기 전에 청결을 관리할 수 있는 접근법을 찾는 다든지 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대책이었다.

노숙자가 불결해서... 청결했음 좋겠습니다. 너무 불결해요, 옷을 갖다 줘서 갈아입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옷 못갈아 입는 것 아닌데 데려가서 입혀야 할 듯해요. 냄새가 진동해서, 노숙자 거지들이 청결했음 좋겠어요. ... 역사도 깨끗해야 좋아하지. 제발 갈아입었으면. ... 위생 때문에, 냄새 풍기고 의자에 앉고 하니, 아무데나 소변 누고, 냄새 풍기고, 진동을 해요(사례7).

야간노숙행위 금지 조치로 인해 서울역에서 잠을 못 자게하고 내 쫓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서울역 안이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잠을 자면 돼요. 전에 서울역 대합실 안에서도 남자들 몇이서 술을 먹다가 서로 싸우고 술병을 던지는 것도 보았어요. 그때 나도 무서웠고 자리를 피했어요(사례8).

한편, 여성 면접참여자의 경우는 거리노숙 현장에서는 음주와 다툼이 빈번하여 실제 잠을 자기 힘들고 무서웠다고 밝히고 있는데(사례8), 이는 거리노숙 현장이 여성을 비롯한 약자에게 더욱 무섭고 힘든 곳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숙인들의 경험을 통해 제기되는 대책은 오히려 퇴거를 통해 문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기보다, 역사를 대체주거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를 가진 노숙인들이 안전한 응급잠자리를 확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3. 야간노숙 금지조치에 대한 심정

서울역에서의 퇴거방침 이후 많은 노숙인들이 “나가라니까”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어도 나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주거권 실현이 어려운 노숙인들에

게 대체 생활공간이며, 응급잠자리로 활용되어 온 서울역사에서 노숙인들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공고는 노숙인들에게 불안, 두려움, 걱정의 감정과 함께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숙인들의 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억울함, 야속함

퇴거를 당하는 노숙인 입장에서 보면, 노숙인마다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양상이 다양한데 서울역에서 민원을 이유로 강제퇴거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노숙인들이 오죽했으면 집에서 나와 여기에 나와 있겠어요. ... 서울역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개개인이 그런 경우가 있지만, 나에게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역 강제퇴거를 민원을 이유로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민원은 개인이 다 다른 것인데, 서울역 전체로 확대시켜 적용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아요(사례2).

강제로 퇴거한다고 하고나서는 아예 안 와봤지. 원래 여름에는 잘 안 들어와서 자니까. 그런데 요즘은 좀 날씨가 쌀렁하니까 야속한 마음이 들지(사례6).

- 걱정

퇴거방침이 알려지고 난 후 노숙인들의 걱정은 당장 겨울철 추위를 어떻게 넘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례3의 참여자는 잠자리에 대한 대안 없이 퇴거를 조치하는 것은 노숙인들의 병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경험에 따르면 오랜 노숙으로 건강을 해쳤기 때문에 최소한 겨울철 숙박지 대책이라도 없다면 “영영 병이 안 낫는” 노숙인들이 발생할 게 뻔히 예상된다고 말한다.

국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던가, 없는 사람들. 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되게, 나처럼 안 되게 하려면은 국가에서 없는 사람들을 겨울에 만이라도 시월달부터 내년 삼월까지는 잠 잘 자리를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야지만은 병이 안 나지 사람들이 나처럼 되버리면은 영영 병이 안 나아요. 낫기 힘들어요. 그걸 앓으면은 전부 다 큰일 나죠. 나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견지 못해가지고 절룩절룩 거리는 사람. 그 사람 낫기 힘들어요. 어느 세월엔 돈 벌어서 고치겠어요. 얼마나 살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수명도 짧아져요. 그러

면 사람 빨리 죽이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겨울 되면 큰일이죠. 요새야 뭐 아직... 십일월달까진 걱정없죠. 겨울에 아주 추우면은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병들어요. 사람들이, 다 병들어요. 방이라도 조그만한 거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다 병들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몸이 어디가 안 좋아지나요?) 서울역 안에서 못 잔다고 하면은 사람 다리부터 온 육신에 풍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풍이 들어요. 냉기도 오고 풍이 와요. 영영 못 일어나요.

(경험 있나요?) 경험 있었어요. 고치기가 힘들어요. 의사한테 가도 못 고친다고 그래요. 냉이 들은지가 한... 십년 넘었어요. 십오년에서 한 이십년 됐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시리고, 저리고, 겨울되면은 되게 너무 시려요. 온 육신이 발끝에서부터 여기 상반신까지 다 시리고 여름되면 저려요. 풍이에요, 풍(사례3).

또 민원 때문에 서울역에서 퇴거를 시키는 것이라면,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 때문에 노숙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까 하는 걱정까지 첨가된다.

한마음 급식소도 민원 때문에 얼마 전부터 밥을 안 준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채움터 급식 단체도 한 개인가 줄었어요. 민원 때문에 지원이 주는 게 힘들어요.(사례4).

노숙인들 사이에서도 일용직 일이라도 할 수 있어 쪽방 같은 염가의 주거라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모를까, 건강 때문이라든지 하는 이유로 일을 못하는 사람은 더욱 걱정스러운 사람으로 분류된다(사례5).

나는 그래도 일이라도 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일을, 몸을 버려가지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 아직 몸을 추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 병아리 감별사 그런 사람도 여기서 노숙하고 있는데 참 문제는 뭐냐면 돈 관리를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사례5).

- 절망

노숙인들에게 서울역사 이용금지 조치는 그야말로 “죽으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이 캄캄하다”는 것이다.

(주변 동료들의 반응을 그대로 옮겨보면?) 그럼 우리보고 죽으라는 얘기 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하대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없다, 어디 가서 자야하냐 그런 거 걱정

많이 하고, 우리는 갈 데도 없고 서울역에서 나가면 어디 갈 데도 없고 감당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거죠(사례3).

앞이 깜깜하죠, 솔직히. 왜 그런고 하니 찬바람이 인제, 늦가을에서 겨울로 인제 조금 있으면 바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라구. 갈 데가 없잖아요(사례5).

절망의 감정은 곧 체념과 비관으로 전화하기도 한다. “복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들이므로 누구한테 요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거야 뭐 우리가... 복이 없으니까 노숙을 하는 거지 뭐 무엇을 누구한테 요구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사례5)

- 원망

걱정과 절망은 곧 노숙인들 사이에서의 원망이 되기도 한다. 사례5는 “타지에서 온 애들”이 구걸을 하면서 결국은 자신과 같은 노숙인들에 서울역사를 이용하기 힘들어졌다고 여겨 원망의 감정을 키우기도 한다.

여긴 너무 많아요. 구걸하는 게. ... 타지에서 온 애들이, 보면은 내가 봐도 여기 그래요. 돈 달라고 그래서 돈 안 주면 막 욕하고 그런 것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거 보다 더 심한 거는 뭐냐면은 술 마시고 그냥 뭐 골아 떨어져 자는 거. 차라리 수용소 같은 데다가 그런 애들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서울역에서 내가 제일 처음 있을 때는 그 멤버들이 십분의 일도 안 남았어요. 죽기도 많이 죽었고 방 얻어서 나간 애들도 많고, ... 여기 보면은 괜찮은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못 이겨가지고서 그 순간을 자기 자신을 못 이겨서 그런다니깐요(사례5).

- 우려

노숙인들은 서울역 퇴거가 오히려 더 나쁜 일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한다. “사람이 없는 데로 가면 못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노숙인들의 경험에서 보면, 퇴거는 또 다른 노숙지로의 이동 요구일 뿐이며, 결국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둑질이나 나쁜 짓”(사례4)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여긴다.

여기서 옮긴다 해도 또 사람 있는 데로 옮기게 돼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 일 자리 있는 데를 찾아가야지 먹고 살잖아요. 사람이 없는 데로 가면 못 먹고 살죠. 뭐 더 나쁜 짓도 할 수 있죠.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사고치거나 더 안 좋아질 수 있죠. 얻어먹는 게 낫죠. 사고는 안 치니까. 노숙이라든지 잠을 못자게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분명히 안 좋은 일을 해요. 도둑질을 한다던가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한다던가(사례4).

서울역 퇴거로 잠이 부족하게 될 때 노숙인들의 음주행태 또한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사례3).

그러다가 못 먹지,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니까 술을 끊으라 끊으라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화나니까 술 마시고 화 푸는 거예요. 오히려 술 더 마시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화를 못 이기고, 직장이라도 있고 잠이라도 똑바로 자고 다닐 수 있어야지만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술 끊으라고 하면 더 많이 먹는다고...(사례3).

이상의 결과들은, 서울역의 퇴거방침이 노숙인들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며, 이에 따라 억울한 감정, 걱정과 두려움, 심지어는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노숙인들은 구절과 같은 일부의 행위를 모든 노숙인의 행동인양 얘기하면서 노숙인 일반을 퇴거시키는 조치를 납득하지 못해 억울해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사실에 야속함을 느끼고 있다.

4-4. 퇴거 여파

그렇다면, 서울역사의 야간노숙 금지조치 방침이 알려지고, 실제 이용시간 이후 퇴거를 종용하면서 노숙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 추위와 수면부족

가장 일차적인 호소는 잠이 부족하고, 춥다는 것이다.

참여자 : 밖에 나가면 당장 모르는 데고... 무서워서... 요 앞에 계단에서 쪼그리고 밤을 새웠지. 그리고 낮에는 기차는 공짜로 타니까... 다니면서 조금 자고.

조사자 : 안 추우셨어요?

참여자 : 새벽에는 좀 쌀쌀하던데... 집에서 옷을 이것밖에는 못가지고 왔어요. 입을 게 좀 있어요?(사례1)

겨울에, 엄동설한에는 흠리스지만 사장이 어려운 이웃 생각하면 어진 마음 가졌으면 인정 베풀 수 있다고 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안에 있도록. 어제 11시35분쯤 있었는데 추웠어요. 3일 동안 누워있었더니 떨어져 얼마나 추운지...(사례7)

겨울에는 잠자리로 개방해줬으면 좋겠어. 돌아다니다 잠자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오는 곳이 서울역이거든(사례6).

- 정보 부족과 열악한 식사

서울역사와 같은 주요 노숙지역에서 노숙인들의 이용을 제한하게 되면, 노숙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신규노숙인의 경우 무료급식 정보와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진다. 사례1 참여자의 경우 단돈 천원밖에 가진 게 없어서 떡볶이 천원어치로 저녁과 아침 두 끼니를 해결해야 했으나, 무료급식소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었다.

참여자 : 가진 돈이... 천원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용산역부근에 떡볶이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천원어치를 샀어요. 여기 안에(비닐봉지 안에 종이컵에 담긴 떡볶이를 보여줌) 남은 게 있어. 이걸 내일 아침에 먹을 거예요. 좀 맵더라고...

조사자 : 할머니, 여기 역에서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노인분들 드시는 무료급식소, 그 옆은 노숙인분들 드시는 무료급식소가 있어요. 모르셨어요?

참여자 : 몰랐지... 내가 거기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몇 시에 하는 건데?(사례1)

- 음주와 다툼

노숙인들이 노숙지역에서 술을 마시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추위와 무료함을 이기기 위해서이다. 서울역의 퇴거조치가 실제로 밤기온이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9월경부터 시작되면서 음주로 밤을 이겨야 하는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더구나 서울역에서 내쫓긴다고 하는 불안함과 원망은 노숙인들끼리의 더 빈번한 음주, 다툼으로 이어질 소지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사례4 면접 참여자의 경우에도, 서울역에서 내쫓는다는 공지이후 음주와 다툼이 더 많아졌다는 경험을

밝히고 있다.

요즘 서울역에서 내쫓는다고 하니까 노숙인들이 더 술을 많이 먹고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아 졌어요(사례4).

예상되듯이, 서울역의 퇴거조치는 노숙인을 추위와 수면부족, 열악한 식사로 내몰고 있다. 추위와 무료함을 이기기 위해 음주나 다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또한 노숙인들의 증언이다. 즉, 퇴거의 여파는 노숙인들에게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 서울시 대책에 대한 노숙인의 의견

노숙인의 서울역사 이용금지 조치 이후, 노숙인 인권단체 등 민간의 항의 움직임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몇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그것은 쉼터입소를 유도하고, 쪽방 같은 임시주거 지원 대상을 늘리며, 기존에 진행했던 서울시의 보조적 일자리 예산을 증액하는 것 등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울시의 대책은 서울역으로부터 퇴거되어 주거권과 기본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는 노숙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 이에 대한 노숙인들의 반응은 주로 “알지 못했다”, “형식에 불과하다”, “미흡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다.

- 서울시 대책 자체를 알지 못함.

사례1과 같은 노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면접참여자는 서울시의 대책을 알만한 시간이 없었던 경우이나, 사례3과 같이 노숙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서울시의 대책이 노숙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서비스 전달체계인 야간상담 아웃리치 활동에 거리노숙인들이 모두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자 : 할머니, 여기 밤에 못 있게 하면서 서울시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하겠다고 했데요. 들어보셨어요? 여기 앉아 계실 때 색깔있는 조끼 입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거 보셨어요? 말 걸지 않던가요?

참여자 : 아니, 나는 모르는데... 몰라요.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정보를 어디서 듣는 사람도 있고 못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를 자꾸 전해주게끔 만들어야죠.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말로서 해서는 금방 안 퍼져요. 서로가 잘 모르니까(사례3).

- 서울시 대책에 대한 불신

서울시의 대책을 알고있는 경우일지라도 서울시의 대책이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해 줄 것이라는 실효성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5의 경우에는 이번 서울역 퇴거조치 후 서울시의 대책이란 쉼터로 “집어넣으려는” 것인데(사례5), 그것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는 별 희망이 안 되는 방법이였다는 것이다. 노숙인들은 쉼터에 입소하여 독립주거를 확보하기까지 너무 긴 인내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즉, 일부 노숙인들 사이에서 정부의 대책은 별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2의 경우는 서울시의 대책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그것이 형식에 불과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부 다 여기 강제, 철거시키고 그 다음에 서울역 근교에 자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퇴거시키는 걸로, 그러고서 한 명씩 한 명씩 비전트레이닝이나 그런 데로 집어 넣고, 아이... 비전트레이닝에 나도 이번에 들어가서 삼일만에 나왔는데,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삼년을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겨우 방 한 칸 받더만... 일자리, 일자리도 자기가 잡으라고 그러고(사례5).

서울시 대책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건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 봅니다.(사례2).

서울시의 대책에 대한 불신은 쉼터에 대한 불신과도 맞닿아있는데, 쉼터에 대한 불신은 부정적 소문과 왜곡된 정보 등을 통해 노숙인들 사이를 떠돌기도 한다. 사례5의 면접참여자도 노숙인을 쉼터에 입소하도록 안내하였을 때 사무실에 얼마의 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노숙인 쉼터입소를 안내하는 활동을 순수하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

한 명을 끌고 가면은 자기네들 사무실에 칠십만원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구. 그러니까 개네들이 눈에 불을 켜는 거지(사례5).

- 대책이라기엔 미흡하다는 평가

노숙인들이 생각하는 이번 서울역 퇴거 방침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그야말로 “확실한 대책이 아니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사례6, 사례4). 우선 거리노숙을 그만두고 쉼터에 입소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쉼터의 공동생활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한 거리노숙인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게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쉼터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잠을 못잘 정도”라는 거리노숙인들 사이에서의 쉼터인 대한 평가는(사례6) 쉼터 입소가 현재 거리노숙을 지속하는 노숙인들에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 다시서기나 구세군, 인정복지관 같은 서울역 주변의 상담보호센터마저도 모든 거리노숙인을 포괄할 만한 입소여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므로, 쉼터 입소에 대한 노숙인들의 평가는 냉정할 수밖에 없다.

글쎄...그건 확실한 대책이 아니라고 봐. 노숙자가 한 두 명도 아닌데...일자리 준다고 한 달에 15일 일하는 일자리 주기도 하는데...임시방편이지...자활 뭐...여기 청소나 하는 거고...서울시에서 저런 걸 하면서 대책이라고 하면...참...쉼터는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거기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잠을 못 잘 정도래(사례6).

다 임시방편이잖아요. 급하니까 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 다 망가졌을 때 챙길려면 힘들고 방법도 안 보이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근데 다 이유가 있어서, 외적으로는 멀쩡해보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속적으로 상담으로 선생님들이 와서 말을 걸게 되면은 말을 하게 되거든요? ... 누가 관심을 가져주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 임시주거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했으면은 이게 딱 끝나면은, 아휴 나는 뭐해야 되나 걱정만 생기죠, ... 너무 익숙해지신 분들, 연세있고 몸도 안 좋으신 분들은 ... 더 신경써 주셔야죠. 방법이 있어요? 되게 생명 구하는 일에 돈 쓴다고 아까운 거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인원도 확충해서(사례4).

다시서기나 인정복지관, 구세군 거기서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렵도 없어요. ... 다시서기도 요새 다 만원이라고 그러지 다 만원이예요. 다 끝났다고 그러더라구. 자활같은 거 그런 것도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데요? 다 끝났어요. ... 거기에 몇 프로나 들어가겠어요? 내가 비전에 있어보니까 거기도 다 만원이에요. 그런데도 만원이라고 해도 무조건 여기서 데리고 들어갈려구...(사례5)

이상과 같이, 서울역 퇴거방침 이후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응, 알았더라도 너무나 미흡하다는 평가, 혹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불신 등을 보여주고 있다. 노숙인들은 서울시의 대책이 거리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임시방편적이고,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노숙인들은 경험적으로 노숙을 하게 되는 경제사회적 문제와 건강과 심리적 문제 등의 복잡성을 느끼고 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공 일자리나 임시적 주거에 진입할 수 있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정부 대책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불신을 보이는 모습들은 이와 연관된다.

4-6. 소결

서울역의 이용금지 조치에 대해 노숙인들은 납득하지 못하거나 바람직한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대체로는 서울역사를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또다른 주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역사 이용을 제한당하고 있기에 노숙생활의 고통과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면접에 참여한 노숙인들은 퇴거조치 이후 원망과 걱정, 절망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꼈으며, 퇴거조치 이후 추위와 싸우고 잠자리를 찾기 위해 이동하면서 수면이 부족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노숙인을 위한 서비스 정보에서 떨어져 기본적인 생존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요는 서울시의 급변 대책이 거리노숙을 하는 당사자들에게 크게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면접에 참여한 노숙인들은 서울시의 대책을 잘 모르고 있었거나, 들어봤더라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5. 시사점과 제언

- 서울역의 노숙인 존재는 서울역사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이라는 점, 또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중심지에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생활할 수 없는 극단적 빈곤상태의 사람들에게 대체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울역사의 대체 주거로서의 쓰임은 우리 사회의 극단적 빈곤계층

의 주거권과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 권리, 및 자유권을 보장하는 맥락에서 보완되어야 할 문제이다. 쾌적하고 적절하며 충분한 쉼터, 보다 열린 독립주거 진입의 기회 등이 확보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거리에서의 퇴거는 극빈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일 뿐이다. 그러므로 거리노숙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주거대책이 보다 근본적인 주거 대책이 되어야 한다. 또한 거리노숙인의 탈노숙을 지향하는 사회복지 대책은 무엇보다 현재 서울역사가 갖고 있는 접근성, 편의성 등을 갖추어야 유의미할 것이다.

- 노숙인들의 퇴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면, 노숙인들 스스로가 규율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자율성이 높아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공역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노숙인들에게 편의시설을 개방하고 노숙인들의 자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일방적 배제보다 훨씬 서울역사의 운영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서울역사에서 주장하는 각종 민원, 즉 구걸이나 협박 등은 서울역을 중심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노숙인이 있는 한 상존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번 면접참여자들은 노숙인들의 구걸행위가 대대수 노숙인의 모습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구걸 등 서울역사 이용승객이나 일반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가 모든 노숙인의 행위가 아닌 한, 구걸 등을 이유로 모든 노숙인 집단을 서울역사 이용에서 배제하는 차별행위는 노숙인들에게 억울함과 불안감만을 줄 뿐이다. 이는 이번 조치로 설혹 서울역사 안에서 구걸행위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이라 할 수도 없다.
- 면접 참여자 중 여성참여자의 경험은 거리노숙 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숙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은 노숙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희롱의 위험을 피하는 방법으로 특정 남성노숙인과 성적 거래를 하기도 한다. 이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취약성이 중복된 여성노숙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리노숙 현장에서 여성, 장애인 등 더욱 취약한 계층의 안

전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긴급하다.

- 면접참여자들은 서울역 퇴거방침 이후 서울역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다른 주거 대안을 확보하지 못한 노숙인들에게 서울역사 이용의 제한은 추위로부터의 위협과 수면부족 등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의미한다. 실제 면접에 참여한 노숙인들은 추위가 두렵고 힘들며 수면부족이 더 심해졌음을 호소하고 있으며, 겨울철을 어떻게 넘길까에 대한 걱정과 체념의 감정이 상승하고 있다. 노숙을 하며 잠자리와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참여자의 의견은, 이용금지와 같은 대안없는 조치가 우리 사회의 극빈층에게 절망만을 줄 뿐이며, 잠재적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 이번 면접참여자들은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거나 혹은 들어봤더라도 그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서울시 혹은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주거권 및 인권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측면에서도, 아웃리치상담 활동가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에 대한 불신만큼이나 사회복지기관이나 실천가에 대한 불신도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장 실천가들의 활동이 만성적으로 거리노숙 생활을 하는 홈리스들에게 충분히 흡수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거리노숙인들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아웃리치 팀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미. 2011. 한국철도공사의 사회공공성 실현 및 사회위기계층에 대한 공공역사 중심의 노숙인 지원대책 모색 - 서울역을 중심으로-. 철도공공성 실현과 사회위기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김진미 · 서정화. 2006. “거리노숙인의 유대형성에 대한 문화기술지”. 사회복지학회지, 58(3), 51-79.
- 김홍수영. 2005. “두 도시 이야기: 노숙인을 통해 바라본 도시공간”. 아세아연구, 48(2): 117-149.
- 남기철. 2007. 노숙인과 사회복지시설. 한국학술정보(주)
- 서정화. 2005. “여성노숙인의 존재와 삶”. 아세아연구, 48(2): 59-85.
- 정원오 외. 2005.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홈리스연구회 외. 2010. 주거상실계층의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 2010년 전국홈리스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집.
- Rob Rosenthal and Maria Foscarinis, 2006, “Responses to Homelessness: Past Policies, Future Direction, and a Right to Housing”, 『A Right to Housing; Foundation for a New Social Agenda』, Temple University Press
- Maria Foscarinis, 1996, “Downward Spiral: Homelessness and Its Criminalization”, Yale Law&Policy Review, vol.14, no.1
- OHCHR & UN HABITAT, 2009,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UN Human Rights Fact Sheet No.21(Rev.1)
- ESCR, 2009, Recommendation of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Housing(CommDH(2009)5)
- UN-HABITAT & OHCHR, 2002, Housing rights legislation
- CESCR, 2009,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E/C.12/GC/20)
- UN, 2011,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2001.8.4. (A/66/265)



부 록

<부록 1>

공공역사·공권력 개입 노숙인 인권 침해 사건 일지

1. 2004년 7월, 철도공안의 과잉 진압에 의한 노숙인 질식사

1) 사건 개요

(1) 요약

- 2004년 7월 10일~11일 사이(경찰발표 7월 11일 오전 9시),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문*훈씨(27세)가 철도공안(현, 철도경찰)의 단속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시신이 '유실물 보관소'에서 발견됨.
- 8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결과를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발표함으로써 철도공안에 의한 타살이 공식적으로 확인 됨.

2) 사회적 파장

- 8월 10일부터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은 목격자를 찾고 관련 제보를 받기 위해 서울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탐문과 정보수집을 위해 노력함. 동시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역 노숙인들과 함께 1인 시위를 시작 함.
- 8월 24일 '공권력에 의한 노숙인 폭행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모임'이 구성됨. 대책모임은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협의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서울지역 Drop in center]으로 구성됨.
- 8월 25일 '철도공안에 의한 노숙생활자 폭행 근절을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 함. 이후 이 농성은 50일 간 서울역 광장 앞에서 진행됨.
- 9월 1일 14시 대책모임은 철도청(현, 철도공사) 서울본부 601호실에서 철도청과의 면담을 갖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제출함(수신:철도청장 / 참조: 철도청 공안담당관 / 서울지역본부장).

1. 철도공안과 관할부처인 철도청은 문0훈씨(27세)가 사망한 7월 11일 당일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철도청 차원의 대책을 밝혀라.
2. 위기상황에 처해 일시적이든 그렇지 않은 서울역과 같은 공공역사를 이용하고 노숙생활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에 대한 철도공안의 비인간적인 단속방식 중단을 약속하고, 인권침해의 소지와 논란이 있는 폐쇄적인 철도청 공간분실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3. 철도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철도공안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다면 공공역사를 중심으로 노숙인을 범죄에 악용하는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라.
4. 이상의 입장과 요구에 대해 향후 대책모임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철도청 차원의 대책반 구성을 약속하라.

2. 2005년 1월,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 - 무고한 노숙인에 대한 혐의와 감금

1) 사건 개요

(1) 요약

- 1월 3일 오전 7시 경 서울 지하철 7호선 철산역 발 전동차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 객차 일부가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함. 화재 열차에 탑승한 목격자들의 일부는 범인에 대한 목격 증언으로 “노숙자 차림”이라고 함.
- 1월 4일 경찰은 노숙인 윤모씨(48세)를 긴급체포함. 경찰은 체포 이유로 목격자들이 진술하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윤모씨의 산발에 인화성 물질의 냄새가 난 점을 듦. 또한 윤모씨의 신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함. 경찰의 용의자 검거 소식은 통신사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 "노숙자 윤모씨 용의자로 긴급 체포"형태로 보도됨. 반면, 용의자인 윤모씨는 "광명에 간적도 없다. 어제는 서울역에 있었다"며 범행 사실을 강력히 부인함.
- 1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윤모씨의 옷가지에서 휘발성 물질을 찾지 못했다는 통보를 하자 경찰은 윤모씨를 석방함. 그러나 경찰은 석방된 윤모씨를 서울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고 24시간 통제, 2명의 형사를 배치하여 진범이 잡히기까지 40일 넘게 감시하며 관리함.
- 1월 6일 광명경찰서는 방화범 목격자인 육군 모부대 소속 이모병장(22세)을 서울의 한 역으로 데려가 용의자로 체포된 바 있는 윤모씨를 포함한 노숙인 20명을 살펴보게 함. 그러나 이모병장은 윤모씨에 대해 방화범과 비슷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함.
- 2월 19일 광명경찰서는 진범인 강모(50세)씨를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 받

고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함.

2) 사회적 파장

- 1월 10일, 14개 인권사회단체 - 광진주민연대,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다시 서기지원센터,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민중복지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햇살보금자리, 인권실천시민연대(대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작은손길,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 들은 ‘노숙인 모두를 범죄자 취급하는 지하철 방화사건의 여론몰이를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성명서를 통해 위 단체들은 1)사건 발생시마다 노숙인들을 예비 범죄화하는 경찰과 언론의 태도를 전향할 것 2)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된 용의자 윤모씨에 대한 구금과 다름 없는 시설 수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함.

3. 2005년 1월 22일 서울역 노숙인 사망사건

1) 사건 개요

(1) 요약

- 1월 22일 서울역에서 노숙인 이00씨(67년 생), 김00씨(65년 생) 2명 사망함.
- 이00씨(67년 생)의 경우 2층 대합실 서쪽 출입구 쪽에서 사망하기까지 공익 요원들에 의해 폐지나 짐짝을 싣는 손수레(가로80cm X 세로130cm)에 실려 옮겨 짐.
- 노숙인들 사이에서 이00씨의 사망이 공권력에 의해 타살 된 것으로 소문이 퍼졌고, 이후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병력과 대치하게 됨.
- 20시 경 대치 현장에 도착한 노숙인 인권단체들과 지원기관 소속 상담원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시도하고, 서울역에서 노숙인 진료를 담당하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와 사체 검안 절차에 대해 경찰 지휘부와 협의를 진행함.
- 경찰측은 사체가 기습적으로 옮겨질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체를 옮기고 동시에 경찰 병력을 철수 시켜 약 10여

분간의 공백 상태가 발생 함.

- 이후 경찰 병력이 다시 출동하기까지 노숙인들이 2층 대합실 안에 있는 공안실로 몰려가는 과정에서 집기가 파손되는 등 상황이 발생함.
- 1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망 노숙인 2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됨. 노숙 관련 단체들이 참관함. 부검 결과 김00씨(65년 생) 간경화, 이00씨(67년 생)는 폐결핵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짐.
- 1월 25일 노숙인 관련 10개 단체가 1차 대책회의를 하고 남대문 경찰서장 면담을 진행해 구속수사방침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으나, 사진 체증된 가담자 및 혐의자에 대한 경찰의 검문 및 연행조치가 시작됨.
- 1월 26일 노숙인 관련 10개 단체가 공동 성명서 발표함. 민주노동당 심재욱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강제수용방침과 관련해 서울시 사회과장을 면담함.
- 2월 1일, 12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노숙인 사망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을 구성함.
- 2월 2일 연대모임은 서울역 대합실 앞에서 ‘노숙인 사망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함.
- 2월 2일 연대모임은 ‘서울역 충돌사태를 통해 되돌아 본 노숙인 인권과 거리노숙실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개최됨.
- 연대모임은 1차(05.2.14~16일), 2차(05.2.26~3.3일) 서울역 등 주 노숙지역과 2개 상담보호센터에서 265명의 거리 노숙생활자에 대한 ‘거리생활자 인권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 254부에 대해 분석을 진행함.
- 3월 7일, 연대모임은 ‘1월 22일 서울역 노숙인 사망사건 진상 보고 기자회견’을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개최하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의혹 제기, 연대모임의 요구를 발표함.
- 3월 12일, 연대모임은 ‘1.22 사망 노숙인 49재’를 14~20시까지 ‘거리좌담회, 49재’ 등의 내용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
- 3월 23일, 연대모임은 ‘한국철도공사의 사회공헌과 공공역사 중심 위기계층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제안’을 진행.
- 4월 18일~27일, 연대모임은 ‘현장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한 노숙인 지원시설 실태조사’를 상담보호센터, 노숙인쉼터, 쪽방상담소 등 12개 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 4월~5월, 연대모임은 ‘노숙 당사자 문화욕구 조사’를 진행.
- 5월 25일 ‘2차 실태조사, 노숙인 시설 방문 결과 보고’를 주제로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연대모임 집담회를 진행.
- 5월 31일 연대모임은 ‘노숙인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쟁점 토론회’를 감리교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 1, 2차 실태조사 결과와 노숙인지원정책 개선안을 발표, 개선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

(2) 사건의 사실 관계

- 위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노숙인 폭행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모임’이 목격자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경찰 조서를 통해 확인된 내용 상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비교 정리함.

목격자 A, B 진술	경찰 조서
① 17:00경 서쪽 출입구 쪽의 3층 대합실 난간 모서리 바로 밑 부근(2층 대합실) 지점에서 공익요원 3명이 이00씨를 부축해 가는 모습을 봄.	① 서울역 역무팀장이 동부 화장실 통로(동쪽 출입구 부근)에 이00씨가 쓰러져 있다는 발견 신고가 들어와 공익들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지시
② 동쪽 출입문 바깥 입구 쪽에 있는 첫 번째 화분 앞에 이00씨를 기대어 앉히고 공익요원 3명이 공안실 안으로 들어 감.	② 119가 서쪽 출입구로 오기 때문에 이00씨를 손수레에 싣고 서부역 서쪽 출입문 쪽으로 감.
③ 잠시 후 공익3명과 철도공안 1인이 공안실에서 나와 공안실 앞에서 대화를 나눈 후, 공익 1인이 손수레를 가져 왔고, 공익 2인이 화분 앞에 기대어 앉힌 이00씨를 실은 후 동쪽 출입문을 통과해 다시 서부역 서쪽 출입문 쪽에 도착해 내려놓고 손수레를 끌고 사라짐. (추정 시간 18:00경까지의 상황)	③ 18:10분 경 변사자가 발생했다는 서울역 공익요원의 112신고가 들어 와 감식반을 출동시킴.
④ 1차로 2~3명의 철도공안이 이00씨의 사체를 확인하고 돌아가고, 2차로 6~7명의 철도공안이 와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음.	④ 6시 10분 경 119가 도착했고, 도착 시 이미 이00씨는 사망한 상태였음.
⑤ 과학수사대(감식반)가 먼저 도착을 했고, 사체에 흔적을 덮은 즈음, 이후 119가 도착함.	⑤ 18:15경 남대문경찰서에 사망 접수 됨.

2) 사회적 파장

- 1월 24일 서울시 정례간부회의에서 원세훈 부시장은 ‘노숙자 강제수용방침’을 지시함.

- 1월 27일 노숙인 관련 10개 단체 2차 대책회의 진행함.
- 1월 28일 복지부, 건교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등, 개별 대책 회의 개최됨.
- 1월 28일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사장 강경호)는 ‘서울지하철 노숙자 대책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냄. 이를 통해 지하철공사는 “7호선 방화 사건 및 국철 서울역 노숙자 시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역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며 아래와 같은 대책을 실시하기로 함.

□ 대책

- 역사 감시 활동 및 순회점검 강화
 - 역간부 및 공익근무요원 역사 순회 점검 1일 20회 이상 실시
 - 당직자 순회점검 강화
 - 노숙자 발견시 유관기관(구청, 경찰 등)에 즉시 조치요청
- 상습 노숙지역 물청소 실시
 - 방뇨로 인한 악취해소 및 물청소로 인한 노숙 사전 차단 효과
- 관계기관(서울시, 구청 등)의 지속적인 단속 요청
- 서울시의 단속강화 및 강제추방 등 행정조치 필요
 - 역사밖으로 강제추방 조치 가능토록 법적처벌 근거 필요(인권문제 해소)
 -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보호시설강제수용 방안 필요
 - 노숙자 문제는 공사차원의 단속보다 정부차원의 노숙자 자립 프로그램 추진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근본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 1월 30일 서울지하철공사는 ‘지하철 역사 내 노숙자 추방 및 물청소 실시 대책’을 발표함.

4. 2005년 10월, 아펙(APEC) 정상회담으로 인한 물품보관함 운영중단 조치

- 노숙인들의 대규모 물품 분실사태

1) 사건 개요

(1) 요약

- 2005년 10월 25일 0시를 기해 전국의 지하철과 철도역사에서 운영되어 온 물품보관함의 전원이 단전되고 열쇠가 수거됨. 위 물품보관함 운영 중단

조치는 아펙(APEC) 정상회의에 대비,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조치임.

- 당시, 지하철과 철도를 통해 파악된 물품보관함 운영 중단 조치의 배경은 아래와 같음.

1. 지하철

- 서울시 지하철공사 사업개발실 : (담당) 전*우 대리, 520-5154
 - ⇒ 아펙과 세계불꽃축제 기간 동안 테러를 대비해서 물품보관함을 한 달 간 운영 중단 한다고 함. 물품보관함은 '취약지구'라고 함. 요청 주체는 보안사항이라 밝힐 수 없으며, 서울의 지하철 전 노선 내 보관함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하철 내 물품 보관함은 모두 해당 된다고 함.
 - ⇒ 보관된 물품을 찾는 문제에 대해 물은 결과, 보관함 업체 전화 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므로 그쪽에 연락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함.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이 2건 있었으나, 보관함 업체에서 민원인과 가까운 거리의 장소에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함.

2. 철도

- 한국철도유통 영업본부 : (담당) 엄*용 차장, 2630-8852
 - ⇒ 경찰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아펙 안전 문제로 인해, 자동보관함을 가동 중지 해 달라 요청했고, 이를 한국철도유통에 하달했다고 함. 철도 공사 담당은 여객 영업부 권*규 차장이라고 함.
- 한국철도공사 여객영업부 : (담당) 권*규 차장, 042-609-3274
 - ⇒ 지방 경찰청에서 철도공사 지역본부로 자동보관함이 위험할 수 있으니 아펙 기간 전후하여 정지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였다고 함. 공사 본부로 요청한 사항은 아님. 따라서 정확한 기간은 각 지역본부마다 파악해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함.
 - ⇒ 주로 아펙 행사장 인근 관리역, 즉 부산 인근역은 모두 포함되며 대전 역, 천안아산역도 해당된다 함. 현재까지는 서울역에는 요청되지 않았다고 함(10월 28일 현재).
 - ⇒ 자동보관함에 관한 사항은 5개 지역본부에 전권이 있으며, 지역본부는 '한국철도유통'에 관리를 맡긴다고 함.

- 부산시의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관리 대책 실시 : 부산시는 “부산역 주위의 거리노숙인을 최소화하여 세계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함 ▷ 2005년 APEC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관리대책’을 냄. 이 대책은 1)1단계 : 계도기간 - 자발적인 쉼터입소 유도 2)2단계 : 집중상담기간 - 입소가능자 분류, 구분 입소 3)3단계 : 시설수용기간 - 잔류노숙인 시설입소 조치로 진행할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부산시는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 배포함.

노숙을 금지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오는 11월에 세계 21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 시민이 힘을 합쳐 도시환경정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숙인 여러분들께서도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도시 부산의 이미지 제고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노숙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및 보도로써 노숙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 24호에 의거 위법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노숙인쉼터 및 쪽방상담소 안내】

쉼터명	소재지	연락처
삼복의집	사상구 주례동 90-34	464-4603
소망관	동구 초량동 1145-10	312-0675
보현의집	동래구 온천동 1421-6	506-0146
희망의집	동래구 금사동 50-1	526-1033
화평관	양영도구 대교동1가 24-2	412-0191
다대중앙교회	사하구 다대동 621-1	261-1496
부산노숙인상담보호센터	동구 초량동 171-4	463-7707
동구쪽방상담소	동구 수정1동 350-2	462-2017
부산진구쪽방상담소	부산진구 전포2동 667-3	807-5663

2005.9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지방경찰청장

2) 사회적 파장

-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물품보관함에 생활필수품들을 보관하고 있던 거리노숙인들은 대규모 물품 도난 및 압수를 겪게 됨. 10월 말 거리노숙인 상담 활동 중 위 문제를 파악한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숙당사자모임’은 대책회의를 갖고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수집 함.

- 또한 위 단체들의 물품 보관함 중단조치에 따른 거리노숙인의 불편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서울역 보관함에 짐을 맡기면서 지내셨으나 보관함 운영중단 조치로 인해 물품 보관할 곳을 찾지 못하고 모든 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녀야”하고, “비록 거리생활을 하나 노트북을 이용해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 검색, 구직 검색을 하는 등 탈 노숙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가방과 함께 분실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등의 불편이 제기됨. 또한 군인과 경찰들의 잦은 출현과 불심검문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에 대한 문제도 거리 노숙인들의 불편으로 제기됨.

성명	분실장소 (노숙장소)	분실일 (보관일)	분실물품	구술
			물품 종류와 형태	(물품 분실, 보관함 폐쇄로 인한 불편 등)
안*철	지하철 서울역 사물함	10월 22일	이불	- 10월24일 이불을 보관하고 공지를 보지 못해 잃어버렸음.
박*송	지하철 을지로 입구역 사물함	10월 22일	후원받은 가방, 군청색 점퍼, 여러벌의 옷가지	- 현재 가방을 잃어버려 입고 있던 옷 만으로 생활하고 있음.
양*옥	시청역 B 사물함	10월 22일	청색배낭, 점퍼, 검정바지, 하얀목티, 돗자리, 이불, 다이아리(여러 전화번호 기재)	- 10월 22일 물품을 보관하고 건설 일용일을 다녀오니 사물함이 폐쇄되어 있었음. 구직에 필요한 연락처가 기록된 수첩, 이불, 옷가지 등 분실. - 급하게 저녁에 대한벤딩 측으로 연락을 하니 자동응답만 작동할 뿐 직접 사람과 통화하지 못함.
한*희	시청역 B 사물함	기억 못함 :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	분홍색계열의 이불과 담요 1채, 베이지색의 가방, 옷 (가방안에 여러 벌이 있어서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함)	- 허리통증으로 갑작스레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보관함에 있던 물품들을 회수하지 못해 분실.
신*범	종각역 사물함	10월 21일	도장(인감도장, 목도장), 이불(흰색 민 무늬), 첫솔(파란색), 치약(럭키치약), 가방(빨간색 메는 가방), 통장(우리, 국민, 농협)	- 지역 출타하여 노동일하다 노숙지역으로 돌아오니 사물함들을 잠가 버린 상태였음. 침구, 소지품들, 작업 도구 등을 분실.
최*우	철도 서울역 대합실 사물함	10월 25일	가방, 팬티 3장, 남방 1장, 바지 1벌, 구두 1켤레	- 생필품 분실

- 11월 14일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등 3단체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제행사시 반복되는 빈민에 대한 통제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함.

5. 2006년 2월, 경찰의 호송과정 노숙인 사망 사건

1) 사건 개요

(1) 요약

- 2006년 2월 3일 오전 8시경 성북구 월곡동 **프라자 건물에서 찢질방 입구 근처에 주저앉아있는 김씨를 발견한 직원이 우선 119에 신고함. 신고를 받은 119는 응급상황여부를 물었고, 신고자는 “힘이 없어 보이나 응급해 보이지 않”는다 하자 경찰에 신고하라고 함. 신고를 받은 경찰 출동. 당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 영하 14.1도.
- 종암경찰서 장위지구대 경찰관이 신원조회 후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임을 확인하고 북부지검 호송출장소로 이송.
- 저녁 6시경 성동구치소로 이송 시작하여 6시 50분경 도착. 도착 당시 숨을 쉬지 않아 경찰병원으로 옮김. 7시 26분에 경찰병원 도착.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이 사체검안 의사와 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검안의사는 “병원에 실려왔을 때 사지가 뻣뻣하게 굳어있었고, 오른쪽 볼이 많이 부어있었으며 코와 입에 피가 그대로 말라 있어 이미 숨진 지 5~6시간 지난 것으로 보였다”고 말함. 또한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는 얼굴과 눈 속 까지 심한 황달이 관찰되었음. 송과경찰서가 수사를 맡음.
- 2월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부검 의뢰.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감정서는 “본시의 사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생각됨”이라고 발표됨.

2) 사회적 파장

- 2월 17일, 73개 인권·사회단체는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발표함.
- 3월 2일~10일까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외 2단체는 '노숙인 인권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II'를 거리, 상담보호센터, 쉼터 등

노숙생활자 및 경험자 1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함.

- 3월 23일 경찰청 정문 앞에서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외 25개 단체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진행. 위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 행정 개선과 노숙인 인권보장을 위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제출함.

6. 2006년 9월, 영등포역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한 노숙인 사망사건

1) 사건 개요

(1) 요약

- 2006년 9월 30일 새벽 3시 10분 경 영등포역 3층 통로에서 잠을 자던 노숙인 김모(38세)씨와 윤모(42세)씨가 오작동한 방화셔터에 눌려 압사하고 사고 발생.
- 망자들은 300~500kg에 달하는 방화셔터의 하중에 고통을 느끼며 “살려 달라” 발버둥 쳤지만 병원후송 후 끝내 숨을 거둠. 당시 영등포역에는 부산에서 도착하는(새벽2시56분 도착/사건발생 14분 전) 열차가 있어 역관계자 등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역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건에 대비한 장비와 시스템의 결여로 119가 올 때 까지 방치됨.

2) 사회적 파장

- 10월 2일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과 영등포지역 노숙인들은 사고지점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공공역사 중심 노숙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을 10일 간 진행함.
- 10월 11일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외 25개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영등포역 광장에서 추모제를 진행함.
- 위 단체들이 포함된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등포공대위)]는 2006년 12월 19일 14시~18시까지 열린 ‘철도노사공동위원회 역사공공성소위’에 참관함. 위 회의를 통해 철도노사는 아래와 같은 합의문을 도출함.

철도노사공동위원회 역사공공성소위 합의문

- 일시 : 2006. 12.19(화) 14:00 ~ 18:00
- 장소 : 서울사옥 810호
- 참석
 - 공사 : 유리경영팀 신규용, 노사협력팀, 박형태
 - 운영지원팀 기덕재, 서부지사 경영관리팀장 배임규
 - 노조 : 대외협력국장(신동호), 기획국장(송덕원) 역사공공성팀장(김낙현) 시민단체 3명
- 논의내용

노조제시	논의내용
철도 노사와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등포 공대위)는 역사와 광장이 공공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중요하다는 지난 2006년 4월 1일 노사합의와 8월 16일 노사공동위원회 설치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영등포역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문은 추후 정리기로 함
1. 철도공사는 역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영등포역 및 모든 역의 공용통로에서의 영업행위를 일체 허가하지 않는다.	1. 철도공사는 역사 공공성강화를 위해 영등포역의 공용통로에서의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공익적 필요시 협의 후 시행한다.
2. 철도공사는 영등포역 공용통로 사용료 징수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공용통로 수입을 징수하고 징수한 수입은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그리고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은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영등포역 공대위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노조 : 문안은 삭제하되 롯데로부터 수입을 징수하는 경우 지역사회에 환원해야한다. 공사 : 미 실현 징수금을 가지고 논하기 곤란하다. (노사공동위에 입장차이 보고기로함)
3. 철도공사는 영등포역 정문 엘리베이터 설치 목적으로 노사와 영등포 공대위가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동조사의 결과에 따라 2007년도 예산중에서 최우선으로 집행한다.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성 여부와 예산을 확인하고 문구 정리기로 함
4. 철도공사는 영등포역 3층과 지하의 영업시설 정비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시행한다. 재배치 시 이용자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철도공사는 영등포역 3층과 지하의 영업시설 정비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행한다.
5. 철도공사는 거리노숙인의 응급한 의료적 상황에 개입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영등포역 SOS 위기개입센터'를 2007년 상반기내에 설치해 시범운영토록 하고, 전국 광역단위 공공역사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공사 : 철도노사는 노숙인의 응급한 상황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노숙인 상담보호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및 관련전문단체와의 협의 등 공동노력 한다. 노조 : 문구를 검토 조정하겠다. <이후 조정된 문구> 철도노사는 의료적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의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SOS 위기개입센터'를 전국 광역단위

노조제시	논의내용
	공공역사로 확대하는 단계적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그리고 2007년 상반기 내에 시범운영을 위한 '영등포역 SOS 위기개입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노사와 영등포역공대위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장소제공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6. 철도노사와 영등포역 공대위는 07년 상반기 내로 영등포역 지하직선 통로 개설 여부를 공동실태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 논의한다.	문안 삭제
7. 철도노사와 영등포 공대위는 영등포역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지속적인 공동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시행한다.	

<노조>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위기개입센터를 서울역과 영등포역에 시범운영한 후 확대시행
<공사> 시설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고 내부 검토하겠음

7. 2008년 5월, 경찰의 책임방기에 의한 노숙인 사망 사건

1) 사건 개요

(1) 요약

- 2008년 5월 29일 오후 7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모 슈퍼마켓에서 냉장고에 넣기 위해 빼어놓은 소주를 30대 노숙인이 마시려하자 이를 본 가게주인이 소주를 뺏는 과정에서 술이 엇질러짐. 화가 난 가게 주인은 노숙인을 밀쳤고 이 과정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진 소주병 위로 노숙인이 넘어져 깨진 소주병 파편에 노숙인의 다리 부근 동맥이 파열됨.
- 오후 7시 2분경, 노숙인의 무릎에서 피가 솟자 주위에 있던 이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을 통해 119에 사건이 접수됨.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얼마 지나지 않아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왔으나 순찰차의 시트에 깔비닐을 찾고, 현장 사진을 찍고, 구급대에 전화를 거는 행동을 하면서 10여 분간 출혈이 계속되는 상황을 방치.
- 구급대가 늦어지자 결국 경찰은 신문지와 비닐에 노숙인을 싸 순찰차에 태워 병원에 옮겼으며, 환자가 이미 떠난 후에야 구급대는 도착. 순찰차는 오

후 7시 25분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그로부터 15분여 뒤인 7시 40분 경에 과다출혈로 인해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음.

2) 사회적 파장

- 7월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경찰에 의한 노숙인 차별철폐 연대모임(공익변호사그룹-공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 사람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최로 ‘경찰 책임방기에 의한 『사망 노숙인 49재』’가 진행됨.

8. 2010년 서울역 / 영등포 S 백화점 앞 노숙인 사망사건

1) 사건 개요

(1) 요약

○ 서울역 직원의 노숙인 퇴거 행위에 따른 동사 사건

- 2010년 1월 15일 오전 7시30분쯤 코레일 서울본부 간부 박모(44)씨는 서울역을 순찰하던 중 2층 대합실 사물함 앞에 쓰러진 노숙인 장모(48)씨를 발견함. 박씨는 공익근무요원 최모씨한테 “노숙인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고, 최씨는 장씨를 질질 끌다시피 해 2층 대합실 밖 대리석 바닥에 옮겨 놓음. 당시 실외 온도는 영하 6.5도였으며, 장씨는 1시간 20분 동안 방치됨. 8시50분쯤 제설작업을 하던 공익근무요원 김모(27)씨가 장씨를 발견, 장씨를 휠체어에 태워 200m쯤 떨어진 철도 위 육교에 방치시킴.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수사를 통해 박씨와 김씨를 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둘에 대해 “철도안전법은 역사 내 노숙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노숙인을 구조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함. 다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달리 행동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노숙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함.

- 영등포 S 백화점 경비업체 직원에 의한 거리노숙인 폭행치사
 - 7월 3일, 10시 20분 신세계백화점 경비용역인 김00(29세) 주차타워 입구에 있던 황00(59세)를 발로 차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림. 그 후 경비원 3명을 더 불러 들것에 실어 약 50미터 거리에 있는 영등포우체국 측면 인도에 방치시킴.
 - 14시 43분, 행인 박00(24세)이 발견해 119에 신고하고 48분에 119가 도착하였으나, 당시 맥박과 호흡만 있을 뿐 의식은 없는 상태였음. 구급대는 심폐소생술 실시하며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응급실 의사 유00 검진 결과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을 확인함. 30분 간 심폐소생술을 추가 실시했으나 15시 39분 사망 선언.
 - 14시 45분, 영등포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두부에 직경 3센티미터 정도 두피가 벗겨져 출혈이 있음을 발견. 우체국 주변을 탐문 수사하며 한 식당 종업원에게 물어본 결과, 양복 입은 젊은 남자 세 명이서 노숙자를 들것에 실어 우체국 옆에 놓아두고 갔다는 진술 청취.
 - 18시 30분, 신세계 백화점 경비업체직원 1명을 임의 동행하여 참고인 조사. 7월 9일, 10시, 폭행 혐의 인정되어 피의자 입건 조사.
 - 7월 13일, 경찰은 피의자 신변 확보 차원에서 구속 지휘 건의하였으나, 7월 15일, 17시 5분에 망인 측 가족이 피의자 측과 합의 및 처벌 불원한다는 진정서 제출로 불구속.
 - 7월 17일, 경찰에 회보된 국과수 부검결과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50%로 치사 농도 미만의 음주상태였고 머리후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인으로 결론남.

2) 사회적 파장

- 7월 19일 홈리스행동은 ‘거리노숙인 안전보호대책 즉각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성명서를 통해 “1) 본 사망사건을 초래한 백화점 측은 그간 경비 업무처리관행을 공개하고, 본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 2)한국철도공사 역시 그동안 제기되었던 공공역사 중심 사회위גיע층 지원대책이 구비되었다면 이와 같은 사망사건이 예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대 책임을 인정할 것. 3)경찰과 서울시 역시 노숙인 안전보호대

책 미비, 거리 노숙인 방치의 책임”이 있음을 밝힘.

- 홈리스행동 외 7 단체는 연대모임을 구성하고, 간담회 및 7월 20일 영등포경찰서 면담을 진행함.
- 7월 29일 홈리스행동은 한국철도공사에 ‘철도공사의 사회위기계층에 대한 공공기능 확보 여부’를 질의, 8월 5일 철도공사가 문서 답변함. 질의와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질의1. 귀사의 직원들이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과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무 매뉴얼이 존재합니까(예, 노숙인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등의 형태)? 존재한다면 그 구체 내용은 무엇입니까?

▶ **정형화된 매뉴얼은 없으나, 이례상황발생시 통상적인 조치방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 질의2.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기업의 사회적공헌 차원에서 진행하는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 지원활동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동절기에 한하여 ‘노숙인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과는 별개 사안입니다.**

· 질의3. 과거 협의를 진행하다 중단되었던 노숙인 등 사회 위기계층 지원을 위한 한국철도공사와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의를 복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협의를 복원할 계획은 없으며, 질의2에 대한 답변에서도 언급했듯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추진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 1.19 지하철 서울역 거리 홈리스 사망사건

1) 사건 개요

(1) 요약

- 2011년 1월 19일 새벽, 지하철 서울역 역무원은 막차 운행이 끝나자 내부 셔터를 내리기 위해 지하철 역 안에 있던 거리노숙인을 셔터 밖으로 이동시키려 함. 이때 노숙인은 역무원에게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역무원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함.
-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호흡과 맥박 등을 체크한 후 망인에게 병원동행 여부를 물음. 그러나 망인이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자, 구급대는

망인을 셔터 밖 모래함 옆으로 이동시킨 후 복귀. 그 후 지하철 순찰대와 역무원이 생존해 있는 망인을 발견했으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새벽 5시경 망인은 변사체로 발견됨.

2) 사회적 파장

- 1월 27일 홈리스행동 등 12단체는 '1.19 지하철 서울역 거리 홈리스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복지부 앞에서 진행. 이를 통해 1)본 사망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인명 구조의 책임을 최일선에서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방기한 구급대와 소방 당국에 있음. 2)노숙인 결핵 관리 정책의 실패에 따른 사망임. 3)공공역사의 위기관리기능 부재에 의한 것. 4)실속 없는 서울시 '동절기 노숙인 대책'의 한계가 빚어낸 것임을 지적함.

<참고자료>**거리노숙인 대책 : 해외사례36)****□ 프랑스 국철연대위원회 Mission Solidarité : 거리노숙 및 사회적 긴급성에 대응 활동**

홈리스의 사회적 긴급성에 대응한 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전문조직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국철, 각 지역의 공공교통공사, 그리고 프랑스가스전력공사 등의 공공서비스 기업도 업무의 일환으로서 홈리스 원조에 관여하게 되었음. 그 중 하나가 1993년에 조직된 국철의 연대위원회 SNCF-Mission Solidarité³⁷⁾의 활동임³⁸⁾.

- 국철이 연대위원회를 조직했던 것은 ‘파리 SAMU-social’ 창설과 동일한 1993년임. 이 해에는 실업자가 300만명을 넘고, 빈곤·배제문제가 최대의 사회문제로서 프랑스인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었던 시기임.
- 당시 상황은 국철 직원들에게 기존의 사회시설로서 역과 그 주변, 열차 역 시 실업과 빈곤의 영향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절감하게 했음. 특히 일이 없어 배회하는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의 출현과 그 현저한 증가는 역의 환경정비(승객의 안전, 청결의 보장)에 있어서도 방치할 수만 없는 상태가 되어 기업 전체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었던 것임.
- 이에 “공공서비스로서 사회문제의 방과제가 될 것”을 모토로 하고 “홈리스가 역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생활스타일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

36) 본 사례는 小玉撤・中山撤・岡本羊浩・都留民子・平川茂 編著、2004, 『歐米のホームレス: 支援の實例』、京都: 法律文化社.의 각 부분에서 참고가 될만한 부분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37) 국철·연대위원회의 연락처는 18. rue de Budapest 75436 Paris Cedex 09. 전화: 01 53 25 79 33.

38) 초기 연대위원회의 멤버는 국철역은 외국인이 프랑스로 들어오는 제1차 장소였고 옛날부터 국철은 전쟁 또는 식민지로부터 유입되는 사람들, 시골에서 도시로 직업을 찾아서 유입한 사람들, 어려움에 직면한 외국인들이 이용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홈리스 등 빈곤에 처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조는 공공기업으로서 당연한 활동이어서 연대위원회를 구축할 당시 어떠한 위화감도 없다고 대답했다.

는 것”을 목표로 삼고³⁹⁾ 국철의 자기재원과 민간복지를 위한 프랑스 재단 Fondation de France의 재원에 의해 국철연대기금을 조성하게 됨.

연대위원회의 홈리스 지원활동은 지역마다의 특성을 갖지만 기본적으로 보건복지국(DDASS)과 민간기관인 협회를 파트너로서 하여 실행되었음.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은 아래와 같음.

- ▶각도시의 SAMU-social로 직원 파견, ▶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주야간으로 활동하는 「거리아웃리치팀」 운영. 독자적인 팀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여러 인도적 협회와 자선단체와 연대해 아웃리치팀 운영. 역 구내와 주변에서의 마약·약물 판매의 단속, 약물 의존자에게에 대한 접근과 지원, 매춘과 비행 예방 등을 위한 특별팀 구성 ▶역 주변 또는 국철의 숙소를 활용해 「긴급숙박시설」 및 「주간 상담소」 설치. 숙박시설의 재원은 연대기금과 공적인 보조로 구성되며, 관리 및 운영은 민간협회에 위탁. ▶탈거리노숙에 대한 지원(지역사회진입지원)으로 특히 고용지원에 집중하여 직업계획수립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동반활동 수행(직업능력평가, 이력서 작성, 직업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직업교육 아틀리에, 이후 구직에 대한 관찰활동 등)

1) 파리 리옹역 연대위원회의 사례

- 1995년 2개의 협회와 함께 역 구내에 홈리스 「상담소」를, 역 인근에 2개의 로컬센터를 설치함. 한 개의 센터에는 상시적으로 9명의 거리아웃리치팀이 계속해서 상담 및 관여를 통해 숙박시설로 유도하도록 했고, 이를 위해 연대기금으로 해당 지역에 3개소의 긴급숙박시설을 설치(총 정원수 60명. 시설당 20명정도)하고, 기독교사회복지협회(ACP)에 운영을 위탁하였음. 다른 센터에서도 협회 H에 운영 위탁하여, 샤워에 의한 위생 유지, 의류나 식사 제공, 주2일 의사에 의해 건강검진을 시행하였음. 협회의 지원은 신분증명

39) 빈곤·배제에 몰두하는 연대위원회의 활동은 홈리스 지원만은 아니다. 위원회에는 ①홈리스로의 지원, ②실업자의 직업적 진입·「고용확보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직업자격을 확보하도록 하는 직업교육 강습회, 새로운 직종의 개척과 국고보조고용 채택의 확대 등, ③도시문제로의 대처, 특히 도시교외의 빈곤지역 quartiers sensibles에서의 이용자·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역이나 철도의 황폐·치안악화를 방지한다고 하는 3개의 활동영역이 있다[SNCF, 2002, pp.7-9].

서 발급 및 RMI 신청, 우편물 수취를 위한 주소등록, 생활설계를 돕기 위한 활동(그림제작 아틀리에, 스포츠 활동, 문자교육 아틀리에 등), 고용계획을 위한 (재)확보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직업오리엔테이션, 직업능력평가, 고용 지원협회와의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 고용확보한 노숙인이 재노숙하지 않도록 하는 사례관리(관찰활동suivi)도 수행함.

- 한편 리옹역은 남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철도망의 중심역으로 외국인 이용객이 특히 많은 곳임.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파리북역, 동역과 함께 1912년 이후 역에서의 원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협회 ARFOG⁴⁰⁾와 협정을 맺어서 각 역에 <여행자 SOS센터>를 설치함. 이곳에는 ARFOG 소속 6명의 자원봉사팀이 창구가 되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부터 저녁 19시까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보살핌, 상담, 지원에 관여하고 있음. 리옹역의 직원들과 이곳에 정보제공서비스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보조로 고용된 청년들은⁴¹⁾ 일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린 여행자-증명서나 짐의 분실 또는 도난, 길을 잃거나 몸이 아픈 여행자-, 기타 역 이용자-홈리스, 배회자, 빈곤자, 매매춘남녀 등-을 이 <여행자 SOS 센터>로 유도하고 있음. 이곳에서는 정보제공(경찰, 도시교통서비스 등의 정보 등), 단순원조(주소·전화찾기·역의 동반활동, 상담 등)에서 특별원조(현재상황을 검토한 후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및 해당 서비스제공처에 대한 연락과 조정)까지 시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이 센터에서는 역 당국,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서비스, 대사관 및 영사관, 사회복지시설 및 숙박시설과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음.

2) 마르세유 상샤를역 연대위원회의 사례

- 1995년 3월, 상샤를역 관할의 연대위원회는 「거리아웃리치팀」을 결성함과 아울러 역내에 “상담소”를 개설하고 그 내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했음.
- 아웃리치팀은 우선 역과 그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과 면접하고, 수

40) 원래는 역에서 매매춘녀에게 원조를 하고 있었지만,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과 알제리 전쟁 후 귀순자 원조에서 활약한 단체임.

41) 청년고용프로그램으로 고용된 보조인력들로서 우리나라의 청년고용프로젝트인 사회적일자리와 유사한 것임.

용시설, 숙박시설, 지역사회정착지원시설(사회진입지원시설)을 소개하고, 역에서의 정주를 탈피하도록 지원하였음. 아웃리치팀은 역을 중심으로 주2일(수요일, 금요일)에 정규활동을, 다른 요일에는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심가에서 원조활동에 종사하고 있음. 팀의 역할은 ▶국철 및 인근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과의 만남, ▶관찰 등을 통해 상사를 역에서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은 확인하고 생활실태조사 등을 통해 그들의 생활방식과 욕구를 파악하는 것,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나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결, 이를 위해 마르세유의 보건사회복지센터의 지원자(공공 또는 민간 시설, 혹은 자선협회)와의 파트너 관계의 형성으로 정함.

- 연대위원회와 거리아웃리치팀은 매일 활동의 결과를 검토하고 활동을 조정해갔고, 시설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했음. 아웃리치팀은 역과 역 주변의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고 동시에 스쿼트에 대응하는 활동도 병행되었다. 1996년에는 상사루역 내 주간일시수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인근주민의 강한 반대로 실행되지는 못했음.

3) 파리 SAMU-social : 긴급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응하는 조직의 사례

- 사회복지긴급원조서비스(이하, SAMU-social이라 함)는 1993년 11월에 파리에서 발족했으며 2002년 말 현재 전국 39개 도시에서 66개 조직이 활동하고 있음⁴²⁾. SAMU-social의 명칭과 원조는 각 현의 중앙병원이 시행하고 있는 구급차와 무선망에 의한 긴급의료지원서비스 Service d'aide médicale urgence(SAMU)에 기인함. SAMU에 “사회복지의 s -ocial”을 더해 거처가 전혀 없는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긴급원조가 조성되었음. 그 책임자와 운영조직은 각 지역의 민간조직이 참여해 다채로움. 가장 많은 조직은 프랑스로 적십자사의 지역지부인 홈리스지원팀(41개 팀이 있다)으로 지원자 수는 3만명에 달함. 그 외에 의료공제조합연합회, 병원, 그리고 행정이나 복지사무소가 운영주체인 팀도 있음. 채용은 보건·복지국(DDASS)에 의한 국고

42) 전국사회복지긴급원조서비스연합회 Fédération Nationale des SAMU-socialaux의 2002년 보고서전국사회복지긴급원조서비스연합회의 주소는 35, avenue Courteline, 75012 Paris. 전화: 01 53 66 12 62

보조⁴³⁾, 조직의 자기기금(『적십자』나 공제연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함.

- 공통적인 지원 내용은 야간 아웃리치(대도시에서는 주간에도 활동함), 숙박 시설유도서비스, 무료전화(115번)에 의한 숙박시설안내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의 신청절차 안내 등임. SAMU-social의 지원이념은 “극도로 배제된 사람들”, 가장 어려움에 처한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원임.
- 1993년에 창설된 『파리 SAMU-social』 조직⁴⁴⁾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이익단체(CIP)로서 직접 고용된 직원과 함께 국철 등의 공기업이나 공립병원으로부터 파견된 직원, 그리고 실업대책프로그램으로 보조고용된 직원과 의사 26명을 포함하여 총 326명이 활동하는 대규모 조직임. 자원봉사자의 참가도 적지 않지만, 중심적인 지원활동수행자는 아님. 이 조직은 아래의 7개 부서(사람 수는 담당직원 수)로 구성되어 있음⁴⁵⁾.

1. 지역활동서비스부

- 아웃리치팀(EMA) : 56명(간호사 포함)
- 연대참가를 위한 서비스 상담소 : 10명
- 긴급숙박시설 2개소 : 74명(36명, 38명 - 의료직원 포함)
- 사회복지와 의료의 교차연계 서비스

2. 긴급 무료 115번 전화서비스 : 38명

3. 의료서비스부

- 아웃리치팀(EMA)의 간호사팀
- 연대참가의 장 상담소의 의료상담팀

43) 1998년의 반배제법에 의해 SAMU-social도 국고사회부조의 『사회진입숙박시설(CHRS)』 서비스로서 인정받았다. 이것은 국고보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44) 『파리 SAMU-social』 조직의 본부주소는 (주1)과 동일. 전화: 01 53 66 16 63. 파리시에서는 『파리 SAMU-social』 조직 외에 『전국 SAMU-social 연합』에 가맹하여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4개이다. 4개의 조직 중 하나는 국제조직 본부이지만, 다른 3개 조직(『적십자』, 『l'Ordre de Malte 의료활동팀』(협회), 『파리교통공사(RATP)』(본서 상권의 제2장을 참조)가 시내의 일상적인 거리생활을 실행하고 있다. 국제조직은 『국제 SAMU-social』이고, 『파리 SAMU-social』의 창립자 Emmanuelli에 의해 1999년에 창설된 협회이다. 2002년 현재, 브뤼셀, 알제리 등의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3도시, (블가리아), 모스크아에서도 원조가 준비되고 있다.

45) 해당내용은 2001년도의 자료이다.

- 긴급숙박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 긴급의료간호숙박시설(CHUSI) 3개소 : 92명(24명, 13명, 55명)
- 결핵 및 극한적 배제 대책위원회
- 4. 사회심리원조 아웃리치팀(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정신과의사, 정신과간호사, 일반 행정담당자, 의료행정직원, 차량운전자)
- 5. 지역조사 및 서비스필요자에 대한 연구부
- 6. 외부기관 및 외부서비스와의 연락 조정부
- 7. 사무국

4) 파리의 아웃리치

- 아웃리치 활동은 사회복지사·간호사·운전수로 구성. 365일 연중무휴임. 야간은 보통 7개 팀이 활동하고 있다. 밤 9시에서 10시 반까지는 115번 전화인 SOS(본인 또는 제3자·카페·레스토랑 등으로부터의 요청)을 대기하고 스스로 숙박시설에서 나온 사람에게 주소를 알려주는 정도이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교통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니버스가 출동해 거처로 유도함. 밤 10시 반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는 시내를 4개로 나눠서 담당지역을 각각 1개 팀이 순회하면서 숙박시설에 가도록 설득함.
- 1개팀은 전지역을 망라해서 순회하고, 지역을 담당하는 4개 팀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족, 건강문제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람들이 통보된 경우에 해당 지역으로 달려감. 나머지 2개 팀은 115번 콜에 대기하는 팀임(주간에는 2개 팀이 대기)
- 동절기에는 아웃리치 활동이 강화되어 최대 14개 팀이 동원되며, 115번인 무료전화서비스(통칭 「초록 전화번호」)를 통해 365일 24시간 숙박시설을 안내함. 항상 30명에 가까운 담당자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그날 밤에 비어있는 숙박시설을 확인해서 요청자에게 시설을 알려줌. 길을 모르거나 교통비가 없는 사람, 질환이나 기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니차를 파견함. 전화서비스는 간판, 대중매체, 입소문을 통해서도 노숙인을 비롯해 초행인 외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있음.
- 아웃리치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사회적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많아 인간관계의 거부 등의 탈사회적 경향, 정신질환, 약물이나 알콜 등의 의존

경향도 보임. 팀이 거리나 공공시설에서 심야에 접촉한 사람들은 1998~2001년 3년 동안 7,300명(남성 82%, 여성 18%, 평균 연령 37세)에 달함. 공공부조 신청 737명, 정신보건서비스 191명, 피부병, 외상 등에 대한 서비스 2,038명에게 제공됨. 그 외 설득해도 숙박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은 575명정도임. 관측부(사무소설의 연구부)에서는 2003년 현재 ‘상시적’으로 거리에서의 안부확인 및 정기적인 방문이 필요한 거리노숙인은 파리지 전지역에 650명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러한 거리생활자에 대해서 아웃리치팀은 담배나 커피, 식사, 겨울철에는 침낭과 단열시트 등을 제공함.

5) 로스엔젤레스의 아웃리치

- 로스엔젤레스의 ‘지속적인 보호’ 방침 구성 중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활동은 아웃리치(out reach) 및 어세스먼트(assessment)임. 홈리스지원 서비스제공조직에 의한 거리아웃리치와 어세스먼트, 무료전화상담서비스 등은 로스엔젤레스의 홈리스생활자가 지원서비스에 접하는 최초의 단계로 자리매김 됨.
- 지원서비스 제공조직 가운데에는 차를 이용해 지역을 돌면서 홈리스생활자에게 모포나 음식물 등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설득해 그들 자신이 노상으로 부터 탈출해 자립할 것을 권하는 것이 활동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 아웃리치프로그램은 약 25개로 정신장애자와 가출청소년, 약물의존자, 가정내폭력피해자, HIV감염자 및 감염가능성이 큰 사람, 그리고 퇴역군인 등으로 대상별로 실시하고 있음. 그 외에 이동의료상담프로그램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아웃리치활동은 민간비영리조직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 않는다. LAHSA(엘에이의 건강서비스국)의 ‘응급지원팀 Emergency Response Team(ERT)’이 민간비영리조직과 함께 정기적으로 로스엔젤레스 전체를 순회함.
- “Info-line”이라고 불리는 사회서비스용 무료전화회선으로서 요청자의 전화를 받아 전화상담자가 적절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소개함.
- 홈리스생활자들이 시 내의 ‘지속적인 보호’ 방침에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곳은 역세스센터 외에 드롭인센터(Drop in Center)가 있음. 이곳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서 총 4개소가 분포하고 있음. 위치한 지역에 따

라 정신장애인, 여성 등 특화된 곳도 있음. 드롭인센터 이용자는 굳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누구나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⁴⁶⁾.

46)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24시간 개방카페나 민간재원으로 서울역인근에서 운영되고 있는 드림시티의 경우 로스엔젤레스의 드롭인센터 혹은 프랑스의 주간이용시설과 같은 기능을 하는, 즉 시설입소 혹은 노숙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첫관문으로서 부담 없이 이용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인권위 조사에서도 다수의 노숙인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을 요구하고 있었다.

설문지

서울역의 야간노숙행위금지조치에 대한 거리노숙인 인권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본 조사는 금번 서울역사 내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가 따른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조사국 침해조사과)가 수행하는 것으로, 서울역사와 서울역사 주변 거리 노숙인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 대한 귀하의 답변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위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 경청하겠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 이성택(침해조사과 02-2125-9665),
김선미(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070-4250-0530/ 010-4136-2593)
이동현(홈리스행동 02-2634-4331 / 010-8495-0283)



설문
번호

--	--	--

조사일시	2011년 8월 ____ 일 ____ 시	조사장소	
조 사 자	성 명 : _____ (연락처 : _____)		

1. 귀하는 서울역에서 얼마 전 발표한 서울역 야간노숙금지 조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1-2번으로) ② 모르고 있다(☑ 2번으로)

1-2.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①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고
 ② 서울역 측에서 알려주어서(철도특별사법경찰 등)
 ③ 주변 노숙인들이 말해주어서
 ④ 거리상담원(상담보호센터직원 등)이 말해주어서
 ⑤ 기타(기록 _____)

2. 서울역에서는 8월 22일부터 '서울역내 야간노숙행위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귀하는 발표 이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중복응답. 택3) _____

- ① 비나 더위나 추위 등을 피할 곳이 없어졌다는 걱정함
 ② 어디로 가야하나 막막해졌음
 ③ 노숙인에 대한 시선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걱정함
 ④ 다른 역에서도 쫓겨나갈 것 같아 걱정함
 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함
 ⑥ 단속이 강압적으로 될 것 같아서 걱정함
 ⑦ 그냥 다른 곳(역, 공원)으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함
 ⑧ 왜 노숙인한테만 그러는지에 대한 억울함
 ⑨ 기타(기록(기록 _____))

3. 귀하는 서울역에서 발표한 야간노숙행위 금지조치 이후 야간에 역사 바깥으로 퇴거조치 당한 경험
이 있습니까?

- ① 있다(☞ 3-1번으로)
- ② 없다(☞ 4번으로)

3-1. 퇴거조치당한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시오(시간대, 누구로부터, 어떻게, 당시 심경까지)
(기록)_____

4. 귀하가 서울역 혹은 서울역 주변에 주로 머무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 ① 주간
- ② 야간
- ③ 계속
- ④ 기타(기록_____)

5. 귀하가 서울역내외에 머물 때 주로 이용하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 중복응답. 택2) _____, _____

- ① 역내부 대합실
- ② 역내부 화장실
- ③ 역내부 출입구쪽
- ④ 역외부 출입구쪽
- ⑤ 역외부 광장
- ⑥ 역외부 지하도
- ⑦ 기타(기록_____)

6. 귀하는 서울역 내·외부에 머물면서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 중복응답. 택2) _____, _____

- 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낸다.
- ② 잠자는 곳으로 이용한다.(☞ 6-1번으로)
- ③ 그냥 앉아서 휴식 취한다.
- ④ 술을 마신다.
- ⑤ 세면 등을 위해 화장실을 이용한다.
- ⑥ 아는 사람들(노숙동료, 쪽방주민)을 만난다.
- ⑦ 기타(기록_____)

6-1. 귀하가 서울역주변을 잠자리로 선택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개월 정도

7. 귀하가 서울역주변을 잠자리로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택2) _____, _____

- ① 더위와 추위, 비 등을 피하기 위해서
- ② 편의시설을(화장실, 짐보관 등) 이용하려고
- ③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아서
- ④ 친구나 동료와 같이 있으려고
- ⑤ 인력사무소가 인접해 있어서
- ⑥ 무료급식 등이 많아서
- ⑦ 다른 곳을 잘 몰라서
- ⑧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안전해서
- ⑨ 기타(기록_____)

8. 귀하는 다른 역사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머물렀을 때 퇴거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8-1번으로)
- ② 없다(☞ 9번으로)

8-1. 기록(어디에서, 누구에게, 왜_____)

8-2. 공공장소에서 퇴거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 ① 인근역이나 지하도로 다시 옮겼다.
- ② 인근 공원 등으로 다시 옮겼다.
- ③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배회했다.
- ④ 기타(기록_____)

9. 귀하는 노숙생활 중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누구에게	없다
1) 구타, 가혹행위	①		②
2) 언어폭력, 모욕	①		②
3) 성폭행	①		②
4) 금품갈취	①		②
5) 명의도용, 사기	①		②
6) 기타(기록_____)	①		②

10. 위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 ① 마땅히 도움청할 곳이 없어서 참았다.
- ②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③ 노숙동료 등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④ 거리상담원이나 복지활동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⑤ 기타(기록_____)

11. 귀하는 서울역을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 ① 그렇다(☞ 11-1번으로)
- ② 아니다(☞ 12번으로)

11-1. 귀하가 서울역을 벗어나고자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순위별 중복응답 3개) _____, _____, _____

- ① 의료지원(병원입원, 무료검진 등)
- ② 복지시설입소(쉼터, 부랑인시설 등)
- ③ 주거지원(월세방 등)
- ④ 일자리지원
- ⑤ 수급신청 등 소득보조
- ⑥ 주민등록복원
- ⑦ 금융피해(채무, 명의도용)에 대한 지원
- ⑧ 알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
- ⑨ 기타(기록 _____)

12. 금번 서울역의 강제퇴거 조치 이후 서울시에서는 일자리지원 추가지원 200개, 임시주거비지원(주거지원) 100호, 임시구호방 50호, 쉼터입소, 24시간 개방카페설치 등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12-1번으로)
- ② 모르고 있다(☑ 13번으로)

12-1. 귀하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을 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이유기록 _____)

12-2. 귀하는 다음 중 어떤 것을 신청했습니까?

- ① 특별자활근로
- ② 임시주거비지원(주거지원)
- ③ 쉼터입소
- ④ 기타기록(_____)

12-3. 귀하는 신청 이후 어떠한 조치를 받으셨습니까?

- ① 선정됨
- ② 신청 이후 대기 중
- ③ 신청했으나 탈락됨
- ④ 기타(기록 _____)

설문지

서울역의 야간노숙행위금지조치에 대한 거리노숙인 인권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본 조사는 금번 서울역사 내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가 따른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조사국 침해조사과)가 수행하는 것으로, 서울역사와 서울역사 주변 거리 노숙인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 대한 귀하의 답변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위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 경청하겠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 이성택(침해조사과 02-2125-9665),
김선미(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070-4250-0530/ 010-4136-2593)
이동현(홈리스행동 02-2634-4331 / 010-8495-0283)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
서울역의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가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

인쇄일 : 2011년 12월

발행일 : 2011년 12월

발행인 : **현병철**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침해조사과**

주소 :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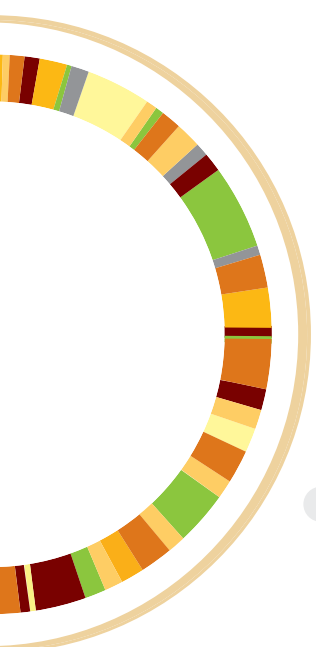
전화 : 침해조사과 02) 2125-9665

팩스 : 02) 2125-9658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360-01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

: 서울역의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가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우.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침해조사과
Tel. (02)2125-9665 www.humanrights.go.kr